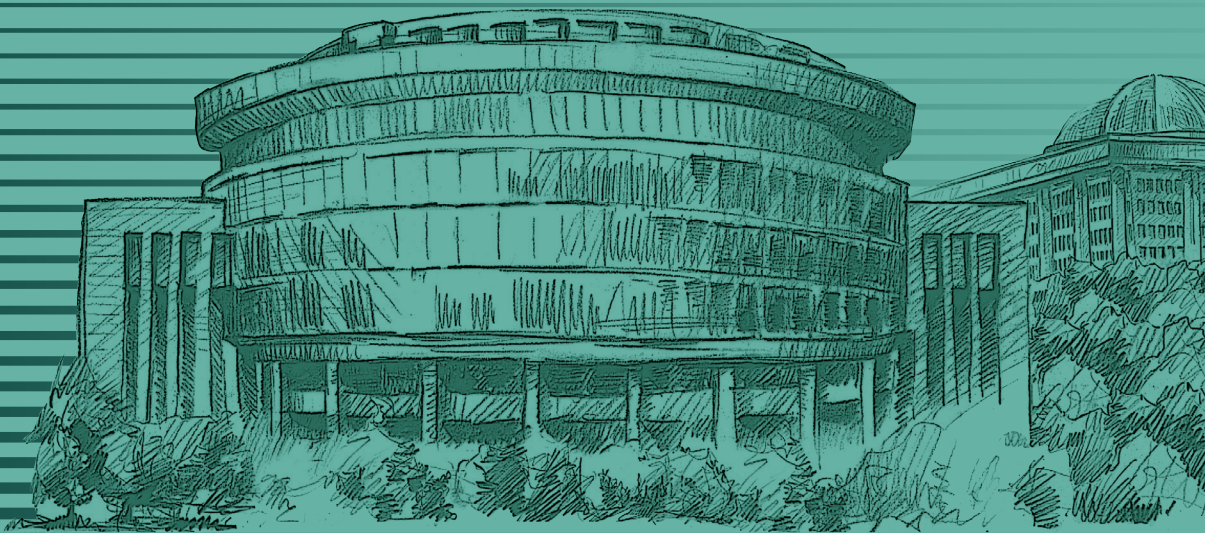




2021. 8.

국회예산정책처 | 결산분석

2019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19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결산분석시리즈 IV

2019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총괄 | 송병철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서세욱 사업평가심의관
이현중 예산분석총괄과장
신은호 산업예산분석과장
박세용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전용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정석배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홍선기 김윤성 이강구 김승현
이선화 윤성식 김유진 이광근
안병후 이미선 고준혁 최해인
최선웅 이은미 진달래 김정선
김성은 최경덕 정성영 최성민
정현하 박인재 박은형 심성택
황아람 예산분석관

지원 | 김보나 행정실무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의 :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 02) 6788-3770 | iba@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결산분석시리즈 IV

2019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2021. 8.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 (2021. 8. 9.)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가 지난 5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총수입은 478.8조원, 총지출은 549.9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57.5조원이 악화되어 112.0조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정부는 총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및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방역대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재정운용의 결과를 검토·분석하여 그 실적과 성과를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다음 연도 예산과정에 환류할 필요가 있는 바,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효율적인 결산 심의 과정을 지원하고자 「2020회계연도 결산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결산 분석」, 「2019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등 총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총괄 분석」에서는 재정건전성,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증액사업 등 재정 전반에 걸친 주제에 대해 거시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혁신성장산업 지원 사업,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사업, 재난지원금 등 주요 재정정책을 선별하여 심층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②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각 부처의 개별사업 단위로 집행 상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③ 「공공기관 결산 분석」에서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집행 결과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국회 결산 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④ 「2019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을 작성하였으며, ⑤ 「성인지 결산서 분석」을 통하여 성인지 예·결산 제도 운영 과정 전반과 각 부처 성인지 대상사업을 점검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국회의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 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 8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임 의 상

I. 개 요 / 1

1. 2019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	1
가. 현 황	1
나.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	4
2. 2019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6
가.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6
(1) 현 황	6
(2) 조치완료로 보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분석	7
(3) 조치중으로 보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분석	9
나. 부대의견에 대한 정부 조치 결과	21
다. 감사요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25

II. 정부 조치결과에 대한 위원회별 분석 / 28

1. 위원회 공통	28
가. 현 황	28
2. 국회운영위원회	31
가. 현 황	31
3. 법제사법위원회	32
가. 현 황	32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33

CONTENTS

(1)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직접지원 사업비 비중 확대 필요(법무부)	33
(2) 교정시설 공공요금 부족에 따른 연례적 이·전용 등의 집행 관행 개선 필요 (법무부)	36
(3)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대법원)	38
(4) 등기특별회계 일반회계로의 전출 사업 개선 필요(대법원)	41
4. 정무위원회	44
가. 현 황	44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44
(1) 조세심판 청구사건 처리 신속성 필요(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44
(2) 보훈병원재활센터 확충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 철저(국가보훈처)	46
(3)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공정거래위원회)	48
(4)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금융위원회)	53
5. 기획재정위원회	55
가. 현 황	55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56
(1) 정부출자기업 배당금 축소 최소화 필요 등(기획재정부)	56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의무상환 비율 제고 방안 마련 필요(국세청)	58
6. 교육위원회	61
가. 현 황	61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61
(1)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사업의 융자수요 부족에 따른 집행 부진(교육부)	61

CONTENTS

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64
가. 현 황	64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65
(1) 우편물류 인프라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축소 및 예산 전용 사유 소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5
(2)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사업의 취업률 성과저조 문제(과학기술정보통신부)	67
8. 외교통일위원회	70
가. 현 황	70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70
(1)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기금 인건비 집행 주의(외교부)	70
(2) 북한이탈주민 미래행복통장 중도해지자에 대한 지원책 확대 필요(통일부)	72
(3) 통일정책 관련 사회적 합의 형성 사업 체계적 추진 필요(통일부)	74
9. 국방위원회	78
가. 현 황	78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78
(1)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 시정요구 후속조치 내용 미흡(국방부)	78
(2) 관서운영경비 부적정 집행 반복 문제(국방부)	81
(3) 사회복무요원 인력활용 개선 및 복무지도관 충원 필요(병무청)	83
(4)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실효적 정책 추진 필요(병무청)	86
10. 행정안전위원회	90
가. 현 황	90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91

CONTENTS

(1)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의 미집행 이월과다(행정안전부)	91
(2) 사이버안전수사활동사업 시정요구 후속조치 내용 미흡(경찰청)	92
(3) 한국선거방송사업 시정요구 후속조치 내용 부적절(중앙선거관리위원회)	94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97
가. 현 황	97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97
(1) 추경으로 지자체 보조사업 추진 시 과도한 아·불용액 최소화 필요 (문화체육관광부)	97
(2)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사업의 지속적인 사업 개선노력 추진 필요 (문화체육관광부)	99
(3) 세입 징수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 필요(문화재청)	101
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04
가. 현 황	104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04
(1)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관리 강화 필요(해양수산부)	104
(2) 친환경어구 보급사업 관리 강화 필요(해양수산부)	106
(3) 손실보상금 사업의 적정예산 편성 미흡(농촌진흥청)	109
(4) 국립휴양림관리소의 사업비 이월방지 및 경영개선책 제고노력 필요(산림청) ..	111
(5)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 사업 사업관리 철저 필요(해양경찰청)	113
1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16
가. 현 황	116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17

CONTENTS

(1) 무역보험기금출연 사업의 공급실적 개선 및 적정 운용배수 설정 필요 등 (산업통상자원부)	117
(2) 수소생산기지구축 사업의 실집행 실적 개선 필요(산업통상자원부)	119
(3)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 필요(중소벤처기업부)	121
(4)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집행관리 강화 필요 (중소벤처기업부)	123
14. 보건복지위원회	127
가. 현 황	127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27
(1) 어린이집확충사업의 유형별 목표치 대비 실제 실적 저조 문제(보건복지부)	127
(2)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사업의 실적 저조 문제(보건복지부)	130
15. 환경노동위원회	132
가. 현 황	132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33
(1)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추진절차 개선 및 적극적인 시설 설치 유도 방안 마련 필요(환경부)	133
(2)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의 적극적인 집행관리 및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 마련 필요(환경부)	136
(3)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집행실적 개선 필요(고용노동부)	139
(4)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계획액 추계의 정확성 제고 통한 연례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 지양 필요(고용노동부)	141
16. 국토교통위원회	143

CONTENTS

가. 현 황	143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43
(1) 융자형 집주인임대주택사업의 관리상 개선조치 미흡(국토교통부)	143
(2)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자동차 교육훈련 실적 제고 필요(국토교통부)	145
(3) 도로건설 사업 추진 시 노선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 필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47
(4) 해외투자유치실적 향상 방안 마련 필요(새만금개발청)	149
17. 여성가족위원회	151
가. 현 황	151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51
(1)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신청자의 실질적인 수검률 제고 방안 필요 (여성가족부)	151
(2) 신규 아이돌보미 양성, 활동을 중단하고 있는 아이돌보미의 재활동 유도 등 아이돌보미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인 대처 필요(여성가족부)	153
부록. 2019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중 최근 3년 간 2번 이상 지적된 사항 ..	157

I.개 요

1. 2019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

가. 현 황

국회는 2020년 11월 16일 「2019회계연도 결산」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국회법」 제84조제2항¹⁾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 1,667건, 부대의견 19건을 채택하고, 같은 법 제127조의2²⁾에 따라 4건³⁾을 감사원에 감사 요구하였다.

시정요구제도는 2003년 국회 결산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⁴⁾ 국회가 결산 심의를 통하여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예산집행에 있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한 방안이다.

「국회법」 제84조제2항에는 시정요구의 유형으로 변상과 징계만이 예시되어 있으나, 국회는 변상·징계·시정·주의·제도개선의 5가지로 구분하여 운용 중이며, 하

고준혁 예산분석관(junckoh@assembly.go.kr, 6788-4651)

최해인 예산분석관(chi0121@assembly.go.kr, 6788-4630)

1)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②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국회법」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

① 국회는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① 방위사업청의 중어뢰-II와 장보고-II 함정 간의 장비 미연동 문제 및 이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감사, ② 해양수산부의 펀드출자사업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 ③ 중소벤처기업부의 펀드출자사업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 ④ 지방자치단체의 생태하천복원사업 중 실집행이 부진한 일부 사업에 대한 감사가 요구되었다.

4) 「국회법」 개정(법률 제6855호, 2003.2.4., 일부개정)에 따라 제84조제2항 후단 신설

나의 시정요구 건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로 적용되기도 한다. 2019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의 유형을 살펴보면 제도개선이 1,021건으로 가장 많고 주의 523건, 시정 234건, 징계 1건의 순이다. 이 중 112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결산 시정요구 유형별 적용기준 및 조치대상기관]

유형	적용기준	조치대상기관
변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재산상 금전적 손실을 가한 경우	소속장관, 감독기관장 또는 소속기관장
징계	국가공무원법 또는 기타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장관 또는 임용권자
시정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속장관, 감독기관장 또는 소속기관장
주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기관이나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속장관, 감독기관장 또는 소속기관장
제도개선	법령상 또는 제도상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소속장관, 감독기관장 또는 소속기관장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가이드」, 2020.6.

[2019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합계
결산	0	1	233	503	1,006	(110)	1,633
예비비	0	0	1	20	15	(2)	34
합계	0	1	234	523	1,021	(112)	1,667

주: 1) 시정요구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의 5개의 유형이 있음

2) ‘중복’은 하나의 시정요구 건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시정요구 유형이 복수 적용된 경우 (예: 시정 및 제도개선)이며, 합계에서 중복은 제외함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0.11.

국회 결산심사 결과의 최근 5년간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시정요구 건수는 2015회계연도 결산 시 2,061건에서 2016회계연도에 1,805건으로 감소하였고, 2018

회계연도에는 1,356건으로 큰 폭의 감소를 보였으나, 2019회계연도 결산 시 1,667건으로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국회 결산심사 결과 현황]

(단위: 건)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시정요구	2,061	1,805	1,833	1,356	1,667
	부대의견	27	25	19	23	19
	감사요구	3	1 ¹⁾	4	4	4
결산	시정요구	2,036	1,786	1,813	1,302	1,633
	부대의견	27	25	19	23	19
	감사요구	3	1	4	4	4
예비비	시정요구	25	19	20	54	34

주: 1.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함

1)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시 감사요구안은 예결위에서 의결되었으나 본회의 단계에서 감사대상 기관 수가 많다는 등의 사유로 반대 의견이 제기되어 최종 의결되지 않았음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 심사보고서」, 2020.11.

시정요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변상은 1건, 징계는 5건으로 그 건수가 미미하고, 제도개선이 4,877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국회 결산 시정요구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합계
2015	1	1	382	601	1,126	50	2,061
2016	0	0	326	581	947	49	1,805
2017	0	2	320	568	983	40	1,833
2018	0	1	198	414	800	57	1,356
2019	0	1	234	523	1,021	112	1,667
합계	1	5	1,460	2,687	4,877	308	8,722

주: 1) 시정요구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의 5개의 유형이 있음

2) ‘중복’은 하나의 시정요구 건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시정요구 유형이 복수 적용된 경우 (예: 시정 및 제도개선)이며, 합계에서 중복은 제외함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 심사보고서」, 2020.11.

나.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

2019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중 직전 2회계연도(2017회계연도 또는 2018회계연도) 결산 시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한번 이상 시정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 반복시정요구 사항은 186건으로 확인되었고, 이 중 75건은 최근 3년간 연속으로 시정요구되었다.

[최근 5년간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 현황]

(단위: 건, %)

구분	2015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2019 회계연도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	221	183	200	137	186
전체 시정요구	2,061	1,805	1,833	1,356	1,667
반복 시정요구 비율	10.7	10.1	10.9	10.1	11.2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반복적인 시정요구는 주로 정부의 시정요구 조치가 적기에 이행되지 않았거나 조치내용이 미흡하여 시정요구 요인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정부는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조속히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반복 시정요구를 줄이고, 반복된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조치내용이 미흡한 경우 예산심의에 반영하는 등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3개년(2017~2019회계연도) 동안 모든 해에 시정요구가 있었음에도 2020회계연도에도 유사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사례가 있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의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과 관련하여 수용인원에 대한 정확한 예측뿐만 아니라 공공요금 단가 및 사용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예산을 추계·편성할 것을 시정요구 받은 바, 2021년 동 비목 예산액으로 2020년 대비 9.4%(8,881백만원) 증액한 1,029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다고 조치 완료로 보고하였으나, 이는 2019년 집행액인 1,058억 4,6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2021년에도 부족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⁵⁾

국무총리 소속기관인 조세심판원은 만성적인 사건이월이 우려되므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며, 조세심판청구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할 것을 시정요

5) 2020년도에는 196억원의 부족액을 이·전용으로 충당함

구 받았으나, 2020년 조세심판 청구사건의 평균 처리일수가 178일로 전년대비 18일 증가(최근 5년간 최장)하였고, 법정기간(90일) 내 처리건수는 8.3%(2019년 31.3%)에 불과하다.

농촌진흥청에 대하여 국회는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의 내역사업인 손실보상금 사업의 이·전용 과다 등을 지적하며 병해충 발생 예측 고도화방안을 마련하고 적정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여 손실보상금 농가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으나, 2020년의 경우에도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마련을 위하여 이·전용 및 예비비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조치내용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

여성가족부에 대하여 아이돌봄 서비스의 아이돌보미가 지역별로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아이돌보미양성계획을 수립하는 등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시정요구 하였으나, 2020년의 아이돌보미 신규 양성 목표 4,500명의 60.2%인 2,709명 양성에 그쳐, 활동 아이돌보미의 수는 오히려 감소하였고, 지역에 따른 돌봄서비스 매칭 불균형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치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017~2019회계연도 반복 시정요구사항 중 2020회계연도 조치가 미흡한 주요 사례]

부처	시정요구 사항	시정요구 여부			2020회계연도 결산 분석
		2017	2018	2019	
법무부	예산추계 정확성 제고	○	○	○	2018년 집행액이 1,015억원이나, 2020년에 예산 924억원을 편성하여 196억원 부족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 비서실	조세심판원 처리기간 단축 필요	○	○	○	9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한 경우는 8.3%에 불과
농촌진흥청	이·전용 과다 지양	○	○	○	2020년 16개 사업에서 이·전용을 통해 83억원 총당, 예비비를 통해 621억원 총당함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이돌보미 양성 등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강화 방안 마련	○	○	○	아이돌보미 신규 양성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하고 지역에 따른 돌봄서비스 매칭 불균형 상황이 지속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 및 「2020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을 바탕으로 재작성

2. 2019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가.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1) 현 황

정부는 「국회법」에 따라 2019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2021년 1월 ‘조치결과’를 제출하였고, 2021년 4월 말을 기준으로 조치결과를 재점검하여 5월 ‘후속 조치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는 후속 조치결과 기준으로 전체 시정요구 1,647건에 대하여 1,377건(83.6%)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270건(16.4%)은 조치중이라고 보고하였다. 2015~2018 회계연도 결산 후속 조치결과에 있어 결산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미완료 비율은 10~13% 내외 수준이다가, 2019회계연도 후속조치에서는 16.4%로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 국회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현황]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 (A)	조치완료	조치미완료 (B)	조치미완료 비율 (B/A)
2015회계연도 결산	2,045	1,827	218	10.7
2016회계연도 결산	1,781	1,549	232	13.0
2017회계연도 결산	1,810	1,577	233	12.9
2018회계연도 결산	1,356	1,171	185	13.6
2019회계연도 결산	1,647	1,377	270	16.4

주: 정보위원회 소관 시정요구 조치결과를 제외한 수치임⁶⁾

자료: 각 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를 바탕으로 제작성

6)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④ 정보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과 결산,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한다. 이 경우 정보위원회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본다.

(2) 조치완료로 보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분석

2019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치완료라고 보고한 사항을 분석한 결과 일부 사업의 경우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해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지적된 시정요구에 대하여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보고하였으나, 조치의 실효성 미흡 등으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으며 향후 소관 부처의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례가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편물류 인프라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예산을 감액 전용하여 전자우편수수료 부족분 등에 충당한 것에 대하여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재정상황을 이유로 R&D사업을 축소변경하여 시행하는 것은 변경사유의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도 이와 같은 집행방식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해양수산부는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의 추가적인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지연 요인을 파악하여 해소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을 시정요구 받은 바 있으나, 2020년에도 사업추진 사전절차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국고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되지 않았고, 사업기간은 당초 신규 예산 편성 당시 2018년 완공 예정에서 2020년으로 연장된 데 이어, 재차 2022년까지로 연장·변경되었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사업의 최근 3년간 건강검진비 예산 집행률이 평균 62% 수준에 그치는 등 연례적인 집행부진을 해소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사업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출장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이벤트를 추진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그러나 2020년도 동 사업을 통해 건강검진을 신청한 학교 밖 청소년은 5,606명인데, 이 중 3,023명이 수검을 받아 신청인원 대비 수검률은 2019년보다 7.5%p 하락하였고(61.4%→53.9%), 2020년도 기본 건강검진 결과 재검사 등을 위한 확진검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확진검사 대상자 507명 중 수검자는 11명으로, 수검률은 2019년 대비 4.1%p 하락(6.3%→2.2%)한 것으로 확인되어 시정요구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지적된 예산과다 및 과소 편성 또는 실집행을 저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감액 또는 증액하였으나, 추가적인 예산조정이 필요하거나 면밀한 집행 관리가 요구되는 사례가 있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의 공공요금 및 제세 관련 예산이 부족하여 연례적으로 이·전용 등이 발생함에 따라 공공요금 단가 및 사용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과도한 이·전용 및 예비비 집행 문제를 완화할 것을 시정 요구 받은 바 있는데, 2021년 교정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액으로 2020년 대비 9.4% 증액한 1,029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2019년 집행액(1,058억 4,6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2020년 부족액 196억원 발생한 데 이어 2021년에도 예산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처는 보훈병원재활센터 확충 사업을 통하여 2019년에 광주와 부산 재활센터 확충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실집행률은 광주 44.3%, 부산 59.5%로 매우 저조하여 국회의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2020년에도 보훈병원재활센터 확충 사업의 실집행률을 31.1%, 부산 63.8%로서 여전히 저조하고 2020년 시작된 대전 보훈병원재활센터 확충 사업의 실집행률이 1.9%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중소기업 등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사업주에게 최대 3년간 인건비(월 75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매년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사업비를 증액함에 따라 국회는 사업 추진 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연례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그러나 2020년 2월 말 기준 본예산 9,909억원 중 47.8%(4,735억원)가 집행되는 등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어 추경을 통해 예상부족액 4,351억원을 증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조기 소진 우려로 인하여 동년 9월 초에 신규신청 접수를 중단하고 이후 신규신청자에 대한 지원금 및 기존 지원자에게 주기별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2021년부터 지급하게 되는 등 국회의 시정요구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조치원우회도로 건설사업을 도로예정구간 내 문화재와 인접한 노선으로 계획하여, 용역 중단, 총사업비 증가 및 사업기간 지연을 초래하였으며, 연도 중 사업재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예산 배정을 보류하지 않고 강행하였는 바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은 바 있다. 그런데 2020년 예산은 전년대비 87.8% 감액한 금액인 2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표본기준가격조사경비 3,300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불용하여 시정요구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조치중으로 보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분석

정부는 2021년 4월 기준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 중 270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조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조치 미완료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차차년도 결산보고서 제출시점에 도 이행여부를 보고하도록 하여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이행완료 시 까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국회법」 제84조제2항⁷⁾에 따르면 정부는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상 국회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서’를 결산 심의 완료 후 2~4개월 내에 국회에 제출하고, 다음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제출 시 ‘후속 조치결과 보고서’를 재차 제출하고 있다.

2019회계연도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서는 2021년 1월에 제출하였고, 후속 조치결과 보고서는 2021년 5월에 제출되며, 그 이후 정부의 이행여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즉, 2021년 1월 조치결과는 조치미완료건수가 427건이었는데, 5월 제출된 조치미완료건수는 그 중 157건을 해결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나머지 270건의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정부의 추후 이행여부에 대해 국회가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직전년도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결과보고를 당해연도 초와 결산시점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조치미완료 건의 사후 조치내용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후속 보고하도록 하는 등 국회 결산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⁸⁾

7)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②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8) 이와 관련하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결과 보고 이후에도 1년 간 6개월마다 처리 상황 및 최종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중이다.(윤영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9327호)

둘째, 조치 미완료 사항 중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정안의 입안 및 발의 여부, 그리고 심사의 진행 정도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시정요구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2020년 4월 기준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시정요구 중 경찰청 진술녹음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등 34건에 대해서 정부는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법령 개정이 필요한 시정요구의 경우, 법률안 발의(제출) 여부 및 논의 경과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2019회계연도 시정요구 조치미완료 사항 중 법령 개정이 필요한 주요 사례]

부처	시정요구 사항	부처 조치계획
국회	○ 국회도서관 및 국회사무처는 생산 연도 30년 경과 비공개회의록의 공개 범위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것	○ 「국회법」 개정안이 심사 중이며, 처리 결과에 따라 비공개회의록의 공표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기록물 관리규칙」에 반영하겠음
법무부	○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규정을 법령에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추진하여 '21. 하반기 완료 예정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부터 「국유재산법」에 따라 검찰청 청사의 사용료를 조속히 수납하거나,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을 국유재산특례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률 개정을 검토할 것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범죄피해자보호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범죄센터의 검찰청 청사 내 무상사용의 법적 근거 마련 논의 중
대법원	○ 사법역사문화교육관이 등가기족관계등록업무 관련 전문교육시설로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대법원 연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제4조 2호에 “등가기족관계등록 관련 교육시설(교육관)”을 추가
	○ 인건비 예산의 불용을 방지하고, 판사 정원 증원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판사 인력의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	○ 다양한 직군 및 경력의 법조인들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정비하고 있음 ○ 매년 신규 지원 대상자 Pool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 작업도 추진해 나아가겠음

부처	시정요구 사항	부처 조치계획
국가보훈처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도모와 취업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전직지원금을 구직급여 상한액의 50% 수준으로 증액하고 지급기간도 9개월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의원발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안(20.9.29)
국세청	근로·장려세제의 결정통지서는 관련 법령상 서면으로만 통지가 가능하므로 법령 정비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장려금 결정통지서의 모바일 발송을 위하여 조특법 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21.3.),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법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 진행 중임
교육부	학생정신건강 약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학생의 정신건강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학생정신건강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대할 것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의원 입법 추진(20.11.)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영세IT기업 및 非ICT 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계획 수립 및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율 제고방안 마련	- 중소기업을 위한 ISMS 간편 인증 신설 추진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정보통신망법 개정완료(21. 6.8.)
	SW 보안 취약점 신고포상금제도 법적근거 마련 필요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SW신고포상제도 근거 마련(20.12) -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 중임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관리비용은 부담금과 같이 운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비용 징수기준 그 사용, 잔여재원에 대한 처리 기준 등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것	- 원자력안전관리 비용의 징수 및 사용기준 등 법령 정비를 위해 재정당국(기재부)과 협의(20.10.) - 방사능방재법 및 부담금관리법 개정 추진(6월 국회 통과, '21.12.9. 시행예정)

부처	시정요구 사항	부처 조치계획
방위사업청	○ F-35A 국내부품 생산을 확대하고, 절충 대상 범위를 확대할 것	○ 「절충교역지침」을 개정하였으며, 「방위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임
	○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 정비를 포함하여 무기 체계에 국산부품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21.2.)에 맞춰 시행령 제정(21.2.) ○ 관련 규정(방위사업관리규정, 무기체계 국산화개발 관리규정) 개정(21.5월)
	○ 성실실패 기준 명확화 및 적극행정 면책규정 반영을 통해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소송 관련 법무행정 전문성을 제고할 것	○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 및 「표준 협약서」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개정(20.11)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법무 파트에 인력 추가 배치
경찰청	○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성폭력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도록 하고있는 현행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	○ 법무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행령 개정으로 송부방식을 개선할 예정
	○ 진술녹음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진술녹음의 실시율과 만족도 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20. 10)로 제도가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논의과정에서 의견을 적극개진하겠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천시 사전투표소 설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읍·면·동의 통합으로 선거인의 투표 참여가 불편하고 투표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법 개정 필요성을 개진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지원을 하겠음
문화체육관광부	○ 영세한 스포츠산업 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스포츠산업 융자 제도를 개선할 것	○ 영세 스포츠기업 및 초기 창업기업 대상 ‘신용·기술특례보증’ 신규도입 추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20.8월~)
산림청	○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녹색자금의 부당사용에 대한 환수 및 제재등을 위한 법적 근거 명확히 할 예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비 계획에 따라 개정 절차 이행 중

부처	시정요구 사항	부처 조치계획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진흥원의 신사옥 건립예산을 사업 보조금이나 출연금 등의 간접비를 통해 확보하지 않도록 하고 적정한 방안을 강구할 것	○ 창업진흥원 기관 운영경비의 안정적인 확보 및 예산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관 운영경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발의(정태호 의원, 20.8월)
보건복지부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근거 법률 미비	○ 의정 합의 및 근거 법률이 마련된 이후 집행할 예정임
	○ 사회서비스원 설립 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21년 상반기 내 제정법안 통과 추진
국토교통부	○ 지식산업센터 건설 추진을 위한 보조금 교부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적 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할 것	○ 산업법 시행령 제26조 개정을 통해 보다 명확한 보조금 교부 근거를 마련하겠음(21.6월 중 완료 예정)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 관리, 연계 등과 관련하여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그에 기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선할 것	○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근거규정 개정 완료 ○ 다른 지침과 통·폐합 추진중
	○ 「주거기본법령」에서 주거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국토연구원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주거실태조사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국토연구원으로 규정하는 방안 검토
	○ 전자계약의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며, 전면적인 부동산 전자계약 의무화를 검토할 것	○ 부동산거래 시 전자계약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1.4. 조응천의원 대표발의)
	○ 공간정보기술자 보유증명서의 발급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	○ 공간정보산업협회 “회비부과 및 징수 규정” 제1조제1항 별표2-1 개정(20.11.4) ○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제2조의3 개정 추진
	○ 공항계정의 주된 세입원인 정부출자 수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 추가 예정
	○ 도로 및 철도 사업 등을 위한 공항계정 전출금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계정간 전입·전출이 필요한 경우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것	○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도로, 철도사업 등을 위한 공항계정 전출금 규모의 적정성 및 계정간 전입·출입에 대하여 법적근거 마련 등을 검토 중

부처	시정요구 사항	부처 조치계획
국토교통부	○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무상수리 권고 또는 리콜 불필요 조치로 바꾼 사안에 대한 점검 및 당시평가위원들의 이해충돌 여부 조사	○ 무상수리 권고 및 제척기준 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마련 중
	○ 물류센터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및 대책 마련	○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중
	○ 물류창고 화재 방지를 위해 지하층에 환기설비, 특별피난계단 설치, 마감재 및 단열재를 불연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할 것	○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중
	○ 노후 저상버스가 일반버스가 아닌 신형 저상버스로 대체차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 대체차 시 저상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교통약자법 개정 추진 중
여성가족부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연령 조정 문제에 대해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검토할 것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자녀연령 상향(만 18세 미만 → 19세 미만)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며, 향후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아동양육비 지원연령 상향 조정을 위해 노력하겠음

자료 1. 전부처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2.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를 바탕으로 재작성

셋째, 2019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 중 2022년도 예산 조정이 필요하여 조치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 반영 여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21년 4월 기준 조치 미완료된 시정요구 중 법무부의 소년원 급식단가 인상 등 37건은 예산의 증액이나 예산사업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차년도 예산안 심의 시 시정요구 이행을 위한 필요예산 반영 여부를 점검하여, 결산심사의 시정요구가 예산심사에 환류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019회계연도 시정요구 조치미완료 사항 중 예산조정 필요한 주요 사례]

부처	시정요구 사항	부처 조치계획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는 예비비 필요 시 소요 예산을 정확히 추계하여 예비비를 요구할 것	○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행정안전부와 운영기간 연장에 대한 협의를 토대로 예비비 요구여부와 규모를 정할 수 있는 바 이후 정확히 추계하여 신청하도록 개선조치 예정
법무부	○ 교도작업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교도소 수입 수납실적을 제고하고, 최근 수납 실적 등을 합리적으로 감안하여 세입예산을 적정히 편성할 것	○ 교도작업 신제품 개발 및 수주 활동 강화를 통한 교도소 수입 실적 제고 노력 지속 ○ 재정당국에 최근 수납실적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세입예산 편성이 필요함을 설명하였고, 향후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음
	○ 신상정보등록관리 제도운영의 내실화 필요(신상정보 전담인력 확충 등)	○ 필요인력 확보를 위해 예산당국과 협의중임 ○ 일원화 등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관련 연구 진행 및 경찰, 여성가족부와 협의 지속 추진
	○ 소년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소년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 조직 및 인원을 확충하고 일반 범죄와 차별화된 관리감독 방안을 강구할 것	○ 행안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비행 초기 및 보호관찰 단계는 물론 비행예방교육까지 전담할 수 있는 법무부 내 정책부서를 신설하는 한편, 소년 보호관찰 전담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 소년원의 과밀수용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4인실을 초과한 생활실의 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할 것	○ '20년 기준 과밀상태인 수도권 소재 3개 기관의 과밀해소를 위해 경기북부소년분류심사원 신설 추진 및 서울·안양소년원의 리모델링 예정
	○ 소년원 급식단가를 현실화할 것	○ 같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6호 처분 시설 수준인 1식 2,496원으로 급식비 인상 추진

부처	시정요구 사항	부처 조치계획
법무부	○진술조력인 제도의 지원대상과 상근 진술조력인 운영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진술조력인 제도의 지원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상근 진술조력인의 운영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임
대법원	○대법원은 충분히 확보된 대법원 비상임 전문심리위원 인력풀 (2019년 3,995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전문심리위원 제도 활용 독려 및 홍보, 전문심리위원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진행 ○전문심리위원의 사기 진작 및 수당 현실화를 위해 노력함
	○취약계층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각급법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송구조 요건의 구체화, 변호사 보수 현실화 등 소송구조 인 용 결정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제도운영 현황을 면밀하게 살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예규에 신속하게 반영함으로써 소송구조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음 ○2022년 소송구조예산 중 변호사 보수를 30% 증액 편성하여 준비 중임
	○양형체험 프로그램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21년도 체험형 사법체험 프로그램 예산 집행으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 및 조치할 예정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세정연구 사업을 세법연구사업과 통합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초빙연구위원의 직접 연구 참여를 확대하는 등 초빙연구위원 채용 사업을 내실화할 것	○기본연구사업인 세법연구사업과 통합하여 실시하기 위해 ’22년도 예산안 편성시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22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할 계획 ○향후 초빙연구위원의 참여연구 수를 더욱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국가보훈처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간의 의료 지원 격차를 해소할 것	○의료지원 범위 확대 추진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22년 소요예산 (6,597백만원)반영 추진
	○보상금 및 수당 산정체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정확한 예측모형을 개발하여 이·전용 등을 최소화하고, 각종 보훈수당의 편성과 집행이 일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보훈급여금 체계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	○보상금 및 수당의 추계 정확성 제고 및 보훈급여금 체계의 합리적 기준 마련 ○보훈급여의 정합성 및 형평성 제고, 보훈보상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중기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예산 요구제출

부처	시정요구 사항	부처 조치계획
국세청	○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이 평등하게 국세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산서비스를 개선할 것	○ 홈택스 및 국세통계(조치완료) ○ 국세법령정보시스템(조치미완료)은 개편 예산 확보 후 전체 화면의 웹접근성 개선 예정
	○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성인지 예산 사업을 선정하고,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	○ '22년도 예산 편성시 성평등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사업을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하고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음
방송통신위원회	○ 소관기관과 예산지원기관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중재위원회의 재원에 관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관련 예산에 관해 협의할 것	○ 국회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법 개정 등 소관기관과 예산지원기관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문체부 등)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중임
	○ 지역중소방송에 대한 기금 지원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것	○ 관련 사업 예산 증액을 위해 재정당국, 국회 등과 지속적인 협의 추진
	○ 기술지원과 재난방송 음영지역 해소가 연계될 수 있도록 성과를 관리하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터널 등에서의 재난방송 수신률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설비 설치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할 것 ○ 재난방송과 관련한 설비 및 방송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지상파방송의 재난방송 역량 강화를 도모할 것	○ 국가철도공단, 도로공사 등 터널시설 관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전략적인 기술지원을 실시하겠음 ○ 방통위가 일부 수신설비설치를 직접 지원하는 등 사업추진방식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예산당국과 협의하고자, '22년도 부처안에 'FM/DMB 통합중계기 지원' 관련 예산 반영 추진
외교부	○ 여권발급 수수료 등 적정수준 검토 필요	○ 여권 수수료 수납액이 여권 사업비 집행액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22년 예산부터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에서 영사세입을 분리하여 편성 예정
	○ 치안관계자 초청사업 위탁관리 예산절감 노력 필요	○ 향후 예산 편성 시 국외여비 성격에 해당하는 항목은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 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임
	○ 국립외교원 외국어 전임강사 상용임금 통합 필요	○ 22년 예산 편성 시 상용임금 이관 재추진 예정

부처	시정요구 사항	부처 조치계획
통일부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 하에서 기관 운영과 관련된 고정 비용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자구노력 등을 통해 비용 절감을 노력할 것	○ 재정당국과 협조, 예산 및 수익 구조 개편, 지원재단 자구노력 등 재정 건전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음
소방청	○ 소방공무원 시험관련 경비는 소방청 예산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	○ '22년도 예산안에 채용 등 통합 출제 시·도 분담액이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면밀히 협의 하겠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위탁선거경비 예산 외 운용 관련 지적이 반복되는 것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더불어 위탁선거경비를 국가재정으로 운용하는 방안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위탁선거경비 관리·운용 개선 방안 마련 중임 ○ 위탁선거경비 결산내역과 감사 결과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위탁선거경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음
	○ 예측 가능한 재보궐선거 예산을 본 예산에 편성·반영하는 등 재보궐선거에 대한 예비비 배정·지출이 최소화되도록 절차를 개선할 것	○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
	○ 장기재외선거관 필요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재외선거관리 사업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선거에서 투표권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것	○ 향후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장기 재외선거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재외선거관 파견경비가 본예산에 안정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음
보건복지부	○ 근로능력평가 인력 확보 필요	○ 인력증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기재부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 협의를 추진 중이며, 지속적 노력 예정임
	○ 권역외상센터 인건비 지원수준 현실화 필요	○ 간호사 인건비 증액 등 적정 지원 방안 마련 및 22년 예산 편성 시 반영

부처	시정요구 사항	부처 조치계획
국토교통부	○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편성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건축서비스산업 구축을 위한 예산이 2022년도 예산에 편성되도록 기재부와 협의 추진 예정
	○ 법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실집행률을 제고하도록 개선할 것	○ 지방하천 재해복구비 실집행률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월 단위 실집행률 제고를 관리중임
	○ 법정처리기간 내에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사무국의 인력을 증원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처리 절차상 불필요하게 시간을 소요하는 부분이 없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처리기간 연장비율을 줄이고 법정처리기간 내 처리율을 제고하도록 개선할 것	○ (인력증원) 사무국 인력확충을 위해 기재부와 국토안전관리원 인력증원(20명) 및 인력증원에 소요되는 인건비(10억원)를 요청하였으나, 미반영됨 ○ (운영개선) 반복적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20.8월부터 업무편람을 제작하여 활용 중이며, '21년 절차상 비효율적인 부분을 보완할 예정
	○ 「국가재정법」 제12조와 제46조를 위반하여 출연의 법적 근거 없이 출연금으로 전용하거나, 국회가 의결한 취지에 반하여 사업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형태로 전용하지 않도록 할 것	○ 사업목적 달성 및 신속한 집행을 위해 기재부의 승인하에 출연으로 전용하였으나, '22년 예산편성 시 출연금의 법적 근거 및 필요시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 등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할 계획
	○ 정부의 친환경 버스(전기차·수소차) 확대정책과 연계하여 저상버스 보급률을 확대하고, 지역별 편차도 해소할 것	○ 보급률 저조 지자체에 지원 예산 증액 및 지자체의 관심과 도입을 촉구하는 등 지역별 편차 해소에 노력하고 있음
	○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공공건축상 사업 추진 등을 위해 타 비목에서 일반수용비로 과다하게 전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공공건축상 등 건축문화행사의 원활한 추진 및 집행을 위해 별도 내역사업으로 추진경비를 편성·확보할 예정임

부처	시정요구 사항	부처 조치계획
여성가족부	○ 일반회계와 청소년육성기금에서 각각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해소지원 관련 사업의 예산을 일원화 할 것	○ '22년 예산 요구시 안정적인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현실화 및 아이돌봄사업 안내 지침 현실화 등을 통하여 초과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 운영비 부족 개선을 위해 기관 운영에 필요한 적정수준 예산을 확보하고 동시에 예산 편성기준 한도에 맞춰 운영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하겠음
	○ 북한이탈여성 인구수와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의 인력·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지원 사업 내실화를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및 사업의 효율화를 포함한 사업 내실화 방안을 마련 추진할 예정임

자료: 전부처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나. 부대의견에 대한 정부 조치 결과

정부는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시 국회가 의결한 부대의견⁹⁾ 19건에 대하여 2021년 5월 기준 조치완료 10건, 조치 중 9건으로 보고하였다. 부대의견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결산에 대한 부대의견은 심사보고서에 시정 요구와 함께 첨부되어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미완료 비중은 2016회계연도 28.0%에서 2017회계연도 42.1%로 증가하였으나, 2018회계연도에는 39.1%로 감소하였다가 2019회계연도에는 47.4%로 증가하였다.

[최근 4년간 부대의견 조치결과 현황]

(단위: 건, %)

구분	부대의견 (A)	조치완료	조치미완료 (B)	조치미완료 비율 (B/A)
2016회계연도 결산	25	18	7	28.0
2017회계연도 결산	19	11	8	42.1
2018회계연도 결산	23	14	9	39.1
2019회계연도 결산	19	10	9	47.4

자료: 대한민국정부,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각 연도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 및 조치결과]

부처	부대의견 내용	조치결과	조치상황 (21.4.30)
기획재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연내 실집행 완료가 어려운 사업이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	○추경예산 편성 시 집행가능성 면밀 검토	조치완료
	○출연금 집행기준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집행 기준을 마련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개정 既 완료(20.12.31.)	조치완료

9) 부대의견은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해 의결에 부수하여 국회의 입장을 보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부처	부대의견 내용	조치결과	조치상황 (21.4.30)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연구개발(R&D)의 과제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연구논문·특허에 대한 정량적 실적을 넘어 실제 연구개발을 통한 실용화·사업화 정도를 평가기준으로 포함되도록 검토	○과제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를 위해 창의도전유형과 성과창출 유형을 구분하고, 성과창출 유형의 과제는 최종평가 시 성과의 실용화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19.11.개정) ○또한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에 「R&D 특성 고려 맞춤형 평가추진」 포함	조치완료
방송통신 위원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합하는 방안과 함께, 인터넷 포털 및 OIT 사업자에 대한 기금 징수 추진을 검토하고 국내 방송통신 콘텐츠 육성을 위한 기금 지원 방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에 보고	○(기금통합) 방발기금과 정통기금을 통합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발의, 원활한 입법위해 지속 지원 ○(기금징수) 조세 외 금전지급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폭넓은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 구체적인 요건이 면밀히 검토될 필요 ○(콘텐츠 육성) 방송통신 콘텐츠 육성을 위한 기금 지원확대 추진, 콘텐츠 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 검토	조치완료
행정안전부	○소멸위기지역이 증가추세에 있고 도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소멸위기지역 활성화 대책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국가의 대책 마련 의무를 규정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완료('20.11.19)	조치완료
	○2019년 프리즘에 등록된 정책연구 중 33.7%(27건)를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하고 있는데, 전 부처 기준 17.6%인 것에 비해 높으므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국가안보 및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책연구 보고서 공개	○국민의 알 권리 제공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공개율 제고를 위해, 관리계획 수립·시달, 자체점검 및 담당자 대상 교육 등 추진	조치완료

부처	부대의견 내용	조치결과	조치상황 (21.4.30)
산업통상 자원부	○경제 성장을 위해 기업 투자를 유도해야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규제를 개혁하고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기업·지방소재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통해 외투기업 현금지원 제도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 유턴기업 유치를 위해 유턴보조금 신설 등 제도 개선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신설 및 지원요건 완화, 동시에 지역특성화업종 지원 확대, 균형발전지표를 적용하여 지역균형발전 기능 강화	조치완료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등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관련 자료를 국회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에 보고	○'20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시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 및 예결위에 제출(21.4)	조치완료
환경부	○노후 수도관 정비와 노후 정수장 교체·신설을 위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수도물에서 불순물이 검출되는 상황과 예산 집행이 부진한 실정을 고려하여, 정부 차원에서 깨끗한 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	○매월 사업추진 및 예산 집행상황 점검 부진사업에 대한 예산 조정(증·감액) 등 관리강화를 통해 실행률을 제고 ○“수도물 위생관리 종합대책 수립(20.9)”을 통해 시설 운영관리 강화 및 운영인력 전문성 제고 등 정수장 위생관리 강화	조치완료
고용노동부	○일자리 정책에 있어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 아래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고용유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한편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 등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기업 주도 일자리 창출 방안 추진	조치완료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강구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준비하는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 ○타부처 간접지원 사업의 일반회계 이관을 포함한 다양한 안을 검토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지속 강구	조치중

부처	부대의견 내용	조치결과	조치상황 (21.4.30)
감사원	○해군본부 기타운영비(210-16목)와 업무추진비의 적정성을 정기감사 시 또는 국가결산감사 시에 포함하여 점검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감사 시 해군본부의 기타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감사결과 처리 중	조치중
	○섬진강 댐 수위 조절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댐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의 조사가 완료되면 섬진강권역 수해대책위원회가 제출한 국민감사청구 충실히 수용, 신속 처리	○정부(환경부, 국토부, 행안부)는 섬진강댐 하류 수해피해 대응과 관련 '20.10.23. '주민참여형 댐하류 수해원인조사 협의화'를 구성한 후 '20.12.28.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 용약을 발주, 현재 조사 진행 중임	조치중
	○향후 대통령비서실 및 재외공관 문화원 감사 시 행사용역 계약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점검	○향후 대통령비서실 및 재외공관 문화원에 대한 감사 시 관련 내용에 대해 점검 예정	조치중
	○2021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 시 산림청의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정밀점검 결과 및 조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지뿐만 아니라 댐저수지 등에 시공·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점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관정기감사 시 산지, 댐, 저수지 등에 시공·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해 점검할 계획	조치중
기획재정부	○국가재정법의 허용범위를 넘어 비목을 신설하는 등 국회에서 당초 승인하지 않은 사업을 기존 사업에서 변경하여 추진하지 않음	○집행과정에서 상시 점검 추진	조치중
고용노동부	○부처별 일자리사업의 목표 대비 취업률을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전까지 국회에 제출	○일자리사업 중 취업률을 산정할 수 있는 사업의 '20년 실적과 관련하여 '21년 상반기 중 평가를 진행하여 결과를 국회로 제출할 계획	조치중
공동사항	○각 추경사업 소관부처는 2020년 편성한 4차례 추경 예산의 회차별사업별 실행 현황을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 자료로 제출	○각 소관부처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자료로 제출 예정	조치중
	○R&D사업 소관부처는 전문기관에서 연구기관에 교부한 금액 외에 실시간 통합연구비 관리시스템(RCMS) 등을 활용하여 연구기관에서 연구비를 사용한 금액도 파악하여 국회에 제출	○각 소관부처에서 제출 예정	조치중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1.

다. 감사요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국회법」 제127조의2¹⁰⁾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원은 3개월 이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국회의장은 2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감사원은 국회가 2019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감사 요구(2020.11.16.) 4건에 대해 2021년 4월 감사결과(2021.04.19.)를 제출하였다.

[감사요구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 현황]

감사요구 내용	결과보고
[방위사업청의 중어뢰-II와 장보고-II 함정 간의 장비 미연동 문제 및 이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감사] 방위사업청은 장보고-II 1차 사업 함정에 탑재될 중어뢰-II의 연동방안에 대한 방위사업청과 소요군의 의견 차이로 인해 양산계획 수립이 지연되어 간접비를 제외한 사업비 전액을 불용하였으므로, 장비 미연동 문제 및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함	- 방사청은 중어뢰II 체계개발 단계에서 장보고 1차사업의 전투체계와 연동하여 중어뢰II 양산과 함께 1차사업에 탑재·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했는데도 2011년 9월 해군 등과 협의 없이 1차사업과의 연동을 양산단계에서 추진하기로 자체 결정한 후 체계개발 범위에서 제외하여 - 중어뢰II가 0년 0월부터 양산되고 있으나 미연동으로 1차사업에 탑재·운용되지 못하는 등 장보고 1차사업 함정의 작전운용에 지장 초래 - 앞으로 무기체계의 체계개발단계에서 탑재 대상 무기체계와 연동되도록 한 「방위사업관리 규정」 등과 다르게 양산단계에서 연동을 추진하여 전력화 지연 등이 발생하는 일이 없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

10) 「국회법」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

① 국회는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요구 내용	결과보고
[해양수산업부의 펀드출자사업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 ○ 해양수산업부의 펀드출자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액 대비 자펀드 출자 비율이 10%에 불과하고, 투자액 대비 회수율이 저조하다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자펀드 출자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자펀드 운용사 및 투자대상의 선정이 적절한지, 투자금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자 자펀드 중 정부 출자 규모가 큰 K-Innovation 수산업전문 투자조합 등을 표본으로 해양수산업부의 펀드출자사업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함	○ 자펀드 운용사 선정 및 출자의 적정성 측면, 투자대상 선정의 적정성 측면, 투자금 집행 및 관리의 적정성 측면에서 검토함 - 투자금 관리와 관련하여, 농업정책보험 금융원은 공동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금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 지도·감독하지 않음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은 앞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업체의 투자금 목적외사용 등 계약위반에 대해서 일관된 기준 없이 제재 처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등 투자금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하도록 주의 요구
[중소벤처기업부의 펀드출자사업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모태펀드를 결성하여 벤처캐피탈이 조성하는 투자조합에 출자하고 있으나, 최근 펀드 출자예산이 급증함에 따라 펀드 목적에 맞지 않는 기업이 투자대상으로 선정되거나 기술력 없는 벤처기업에 부실 투자가 이루어질 우려 등이 있으므로 자펀드 출자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자펀드 운용사 및 투자대상의 선정이 적절한지, 투자금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자 '20년 기준 자펀드 중 정부 출자 규모가 가장 큰 존속펀드와 청산펀드* 등을 표본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펀드출자사업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함 * 스틱 4차산업혁명 펀드(존속펀드), 케이투 유동화전문 투자조합(청산펀드)	○ ○○○펀드 및 ●●투자조합을 점검한 결과, 통보사항 3건 및 주의요구 1건 등, 총 4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 ○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에게 이해관계인이 참여할 수 없도록 출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요건을 관련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해상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한편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출자금을 배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 ○ 유한책임조합원 지분 유동화 목적을 위해 결성된 자조합이 유동화 목적과 관련 없는 조합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주목적 투자의무 비율에 포함되지 않도록 출자사업 공고 등에 투자의무대상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 모태펀드 자금이 투자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률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실사를 수행하는 등의 방안 마련

감사요구 내용	결과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 ○ 지방자치단체별로 '19년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예산 실집행률이 0~100%로 상이하고, 사업 전체 예산의 실집행률이 46.7%로 저조하다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19년 기준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집행률이 낮은 원인을 파악하고 생태하천복원사업 예산 재원별(수계관리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추진절차 등의 실태를 비교·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함	○ 집행 부진사업에 대한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업무 처리 미흡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와 경각심 고취를 위해 주의 촉구 ○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기관에 주의 촉구 ○ 추진 지연사업의 지연 사유분석과 현장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집행을 저조원인을 파악한 결과 신규사업 대상선정, 계속사업 예산편성 및 교부, 예산집행·관리와 관련한 주요 문제점이 파악되어 개선방안 마련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및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작성

Ⅱ. 정부 조치결과에 대한 위원회별 분석

1. 위원회 공통

가. 현 황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전 부처 공통사항은 제도개선 4건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1년 4월 말 기준 조치완료가 2건이며, 조치중 2건으로 보고하였다.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전 부처 공통사항은 총 2건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21년 4월말까지 조치중 2건으로 보고하였다.

[전 부처 공통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구분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1.4.30.)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공 통	0	0	0	0	4	0	4	2	2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1.

[전 부처 공통 부대의견 조치 현황]

(단위: 건)

구분	부대의견	조치현황	
		조치완료	조치중
공 통	2	0	2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1.

[전 부처 공통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유형)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조치상황 (21.4.30)
재정건전성 확보노력 필요 (제도개선)	○ [지적사항]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연평균 증가율(2001~2018년)은 11.1%로 OECD 35개국 중 6번째로 빠른 증가율을 나타냄 ○ [시정요구사항] 정부는 국가채무의 증가폭과 속도에 대한 구속력 있는 관리목표를 설정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준칙을 도입할 것	○ 재정준칙 도입방안 발표 (10.5일)하고, 재정준칙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회제출 완료 (12.30일)	조치완료
신속한 총사업비 조정 필요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총사업비 조정 검토를 신속히 진행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조기에 마무리하여 배정된 예산의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고, 총사업비 조정 절차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자율조정항목 확대, 수시심의제도 활용 등을 통해 총사업비 협의기간 단축 지속 추진 중 ○ 자율조정항목 추가 등 신속한 총사업비 조정이 가능토록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추진	조치중
성인지 예산 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 [지적사항] 성인지 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이 성인지 예산에 반영되어 있음 ○ [시정요구사항] 정부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성인지 대상사업을 정비하고, 성인지 예결산 상설협의체 운영의 근거 규정 마련을 검토할 것	○ '20.10.22일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장'(기획재정부 훈령 제518호)을 제정하여 협의회 운영의 근거규정 마련 ○ '21년부터 협의회 내 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야별 전문가가 대상사업 선정, 성과평가 등을 사전 심의하는 등 성인지 예산 사업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	조치완료
기금 재정수지 악화 방지대책 마련 필요 (제도개선)	○ [지적사항] 최근 5년간 기금의 연평균 총수입 증가율은 4.57%인 반면, 총지출 증가율은 6.52%로 나타남에 따라 기금의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정부는 기금의 재정수지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2년도 기금운용계획 편성 시, 기금수지 개선 방안 검토 - 기금수입 확충 방안모색, 유사·중복사업 구조조정 및 부정수급 적발 등 지출효율화 지속 추진	조치중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회계연도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1.

[전 부처 공통 부대의견 및 조치결과]

부대의견 내용	조치결과	조치상황 (21.4.30)
○각 추경사업 소관부처는 2020년 편성한 4차례 추경 예산의 회차별사업별 실행현황을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 자료로 제출	○각 소관부처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자료로 제출 예정	조치중
○R&D사업 소관부처는 전문기관에서 연구기관에 교부한 금액 외에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등을 활용하여 연구기관에서 연구비를 사용한 금액도 파악하여 국회에 제출	○각 소관부처에서 제출 예정	조치중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1.

2. 국회운영위원회

가. 현 황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총 61건으로 시정 5건, 주의 15건, 제도개선 42건이며, 이 중 1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1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가 52건이며, 조치중 9건으로 보고하였다.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없다.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1.4.30.)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0	0	0	4	4	0	8	8	0
대통령경호처	0	0	0	1	5	0	6	6	0
국회	0	0	3	10	30	(1)	42	33	9
국가인권위원회	0	0	2	0	3	0	5	5	0
합계	0	0	5	15	42	(1)	61	52	9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1.

3. 법제사법위원회

가. 현 황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은 총 140건으로 시정 18건, 주의 41건, 제도개선 92건이며, 이 중 11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1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 106건이며, 조치중 34건으로 보고하였다.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은 총 5건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21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 0건, 조치중 5건으로 보고하였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직접지원 사업비 비중 확대 필요’ 등 4건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1.4.30.)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법무부	0	0	14	7	45	(5)	61	33	28
법제처	0	0	0	4	9	0	13	13	0
감사원	0	0	0	9	1	(1)	9	9	0
헌법재판소	0	0	2	7	8	(2)	15	14	1
대법원	0	0	2	14	29	(3)	42	37	5
합계	0	0	18	41	92	(11)	140	106	34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1.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부대의견	조치현황	
		조치완료	조치중
법무부	1	0	1
감사원	4	0	4
합계	5	0	5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1.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직접지원 사업비 비중 확대 필요(법무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따라 2011년에 신설된 기금으로, 다양한 범죄피해자에 대해 내실 있고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의 인권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강력범죄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다.

2019년도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직접지원 사업비는 223억 4,400만원, 간접지원 사업비는 739억 3,900만원을 각각 집행하여 전체 사업비 중 직접지원 사업비 비중이 23.2%에 불과하므로, 국회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인건비·경상비에 대한 지출 확대를 지양하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치료비·생계비 등의 직접지원 사업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범죄피해구조금, 신변보호사업 등 직접지원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타부처 간접지원 사업의 일반회계 이관을 포함하여 기금 내 직접지원 사업 비중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직접지원 사업비 비중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법무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직접지원 사업비 비중은 2018년 23.1%에서 2020년 20.6%로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지원기관의 인건비, 운영비 등 간접지원 사업비는 사업 규모를 축소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 소관의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등 지출사업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이관에 따른 기금의 여유재원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구조금 계획액을 2019년 100억원, 2020년 107억 800만원,

2021년 116억 5,000만원으로 확대하였고,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사업 계획액도 2019년 10억 8,600만원, 2020년 11억 1,200만원, 2021년 14억 1,7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직접지원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기금의 직접지원 사업비 비중을 살펴보면, 2018년 23.1%에서 2020년 20.6%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으며 범죄피해구조금이나 생계비·치료비 등과 같은 직접지원 사업비는 범죄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해 집행되지만, 지원기관의 인건비, 운영비 등 간접지원 사업비의 경우 사업 규모를 축소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간접지원 사업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이관하지 않을 경우 더욱 간접지원 사업비의 비중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직접지원 및 간접지원 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사업비 합계	90,441	85,388	89,326	96,282	97,276
간접지원 사업비	71,563	66,390	68,707	73,939	77,222
직접지원 사업비	18,878	18,997	20,619	22,344	20,054
직접지원 사업비 비중(%)	20.9	22.3	23.1	23.2	20.6

자료: 법무부

이와 관련하여 2020년 기금의 소관부처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순으로 간접지원 사업비의 규모가 크며, 특히 보건복지부 소관의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집행액의 대부분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건비·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소관부처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법무부	검찰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집행액	22,781	17,973	31,270	23,932	1,320
직접지원 사업비(%)	976 (4.3)	13,590 (75.6)	4,168 (13.3)	-	1,320 (100)
간접지원 사업비(%)	21,805 (95.7)	4,383 (24.4)	27,102 (86.7)	23,932 (100)	-

자료: 법무부

그런데 최근에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비영리법인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함에 따라 효과적인 조사업무를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중 일부를 이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시행(2020.10.1.)됨에 따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이 축소되었음은 물론 학대행위자에게도 교육 및 상담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동 기관의 인건비·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기금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법무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하여 보건복지부 소관의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하는 등 지출사업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이관에 따른 기금의 여유재원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주요업무 변동현황]

	「아동복지법」 개정 이전	「아동복지법」 시행 ~ 2021년	2022년 이후
조 사	아동학대 조사업무 직접 수행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지역 → 전담공무원 조사 지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미배치 지역 → 조사업무 직접 수행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조사 지원 ※ 「아동복지법」 부칙에 따라 '23.9월까지 조사 지원
사 례 관 리	자체적 사례관리 계획 수립 및 수행	지자체의 피해아동보호계획 하에 사례관리 계획 수립 및 사례관리 기능 강화	심층사례관리기관 전환('23.10) - '23.10월부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조사 지원 역할 종료에 따라 심층사례관리 기관으로 전환 - 유형별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자료: 보건복지부

(2) 교정시설 공공요금 부족에 따른 연례적 이·전용 등의 집행 관행 개선 필요(법무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교정시설의 ‘공공요금 및 제세’ 관련 예산이 부족하여 연례적으로 이·전용 및 예비비 집행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예산편성 당시 공공요금 단가와 연평균 사용량 등 예산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확하게 고려하여 예산을 추계하지 못한 것으로, 국회는 2019회계연도 결산 시 법무부에 대해 예산편성 시 수용인원에 대한 정확한 예측뿐만 아니라 공공요금 단가 및 사용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예산을 추계·편성함으로써, 과도한 이·전용 및 예비비 집행 문제를 완화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수용인원 변동 추세와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단가 인상을 등을 고려하여 8,881백만원을 증액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법무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2021년 교정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액으로 2020년 대비 9.4% 증액한 1,029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2019년 집행액(1,058억 4,6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2021년에도 부족액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법무부는 교정시설 공공요금 예산편성 시 직전년도 집행액을 기준으로 적정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과도한 이·전용 등의 집행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 교정시설의 ‘공공요금 및 제세’ 비목에서 예비비를 포함하여 최소 110억원에서 최대 245억원 규모의 이·전용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교정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16	68,270	68,270	-	10,989	-	79,259	79,258	-	1
2017	75,376	75,376	-	4,819	10,996	91,191	91,190	-	1
2018	77,063	77,063	-	24,479	-	101,542	101,541	-	1
2019	82,981	82,981	-	22,867	-	105,848	105,846	-	1
2020	94,032	92,432	-	19,594	-	112,026	112,019	-	6

자료: 법무부

이와 같이 연례적으로 공공요금의 부족은 예산편성 기준인원과 실제 수용인원의 차이에서 기인한 점도 있다고 보여지나, 2018년과 2019년의 경우 예산 편성 기준인원이 실제 일평균 수용인원보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229억과 196억원의 이·전용이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반드시 인원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

[최근 5년간 예산편성 기준인원 대비 실제 일평균 수용인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예산편성 기준인원(A)	49,500	53,892	56,495	55,200	53,200
실제 일평균 수용인원(B)	56,495	57,298	54,744	54,624	53,890
수용인원 격차(A-B)	△6,995	△3,406	1,751	576	△690

자료: 법무부

이와 관련하여 2020년 공공요금 각 항목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상·하수도 요금, 물이용부담금, 오물수거료, 수용자 건강보험료 등에서 많은 부족액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물론 상·하수도 요금, 물이용부담금, 오물수거료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요금이 상이한 관계로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상·하수도 요금 등을 지방자치단체별 요금 단가 인상률을 고려하여 편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0년도 공공요금 각 항목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19년 집행액 (C)	2019년 대비 집행액 증감액(B-C)
	편성액 (A)	집행액 (B)	차액 (A-B)		
□ 공공요금 종류					
수용자 건강보험료	16,659	19,847	△3,188	19,382	465
상수도요금	27,263	31,914	△4,651	31,254	660
하수도요금	19,575	28,219	△8,644	24,652	3,567
전기요금	13,653	13,656	△3	3,393	263
도시가스요금	6,115	5,892	223	6,069	△177
물이용부담금	2,683	3,283	△600	3,009	274
오물수거료	2,496	3,986	△1,490	3,557	429
각종 회선료 및 통신료 등	4,992	5,038	△46	4,531	507
신설기관 공공요금(숙초)	596	185	411	0	0
추경 감액분	△1,600	-	-	-	-

자료: 법무부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공요금의 경우 지속적으로 단가가 인상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최소한 직전년도 집행액을 기준으로 수용인원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연례적으로 예산안 편성 시 직전년도 집행액보다도 적은 금액을 편성함에 따라 과도한 부족액 발생이 반복되고 있다. 2020년을 예로 들어보면, 예산안 편성시점인 2019년의 직전년도인 2018년 집행액은 1,015억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2020년 예산액으로 그보다 적은 924억원을 편성함에 따라 196억원의 부족액이 발생하였다.

[최근 5년간 교정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액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금액	683	793	754	912	771	1,015	830	1,059	924	1,120
부족액	△110		△158		△244		△229		△196	

자료: 법무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법무부는 2021년 동 비목 예산액으로 2020년 대비 9.4%(8,881백만원) 증액한 1,029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다고 조치 완료로 보고하였으나, 이는 2019년 집행액인 1,058억 4,6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2021년에도 부족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법무부는 교정시설 공공요금 편성 시 직전년도 집행액을 기준으로 하고 수용인원 변동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연례적인 이·전용 등을 통한 집행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대법원)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있어 국민참여재판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그동안 국민참여재판법정을 설치하고 교육·홍보 등에 꾸준히 예산을 투입(2019년 27억 9,400만원)하여 국민참여재판 실시의 기반을 조성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재판 실시 건수가 감소하고 있고(2016년 305건, 2017년 295건, 2018년 180건, 2019년 175건), 법원의 배제결정 비율도 2019년 29.9%로 예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건수가 감소하고, 접수되더라도 배제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국회는 대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의 홍보를 강화하고, 배제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20년에는 구치소 내 라디오채널 활용, 관계기관과의 협업, 온라인 키워드 광고, 유튜브 광고, 지하철 광고, 홍보 콘텐츠 공모전, 배심원 기념품 제작 등의 다각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였고, 배제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성과분석 및 ‘국민참여재판 배제제도 개선방안’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였으며,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의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대법원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2020년 국민참여재판 실시건수는 96건으로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고 배제결정 비율은 37.8%로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는바,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완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 신청주의에 따라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사건 중 법원이 배심원의 안전 우려 등의 사유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건을 제외한 사건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2016년 이후 최근 5년 간 국민참여재판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수는 매년 18,000~20,000건 수준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매년 650~850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접수되었으나, 국민참여재판 실시건수는 2016년 305건에서 2020년 96건으로 감소했다. 법원이 처리한 국민참여재판 건수 중 법원의 배제결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19.3%에서 2020년 37.8%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 국민참여재판 접수 및 실시 등 현황]

(단위: 건, %)

연도	대상 사건수	접수 건수	처 리							기타 (미제 등)
			국민참여재판 실시		배제결정		신청 후 철회		합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2016	20,924	860	305	38.9	151	19.3	328	41.8	784	164
2017	19,615	712	295	37.2	195	24.6	304	38.3	794	82
2018	19,717	665	180	28.8	183	29.3	261	41.8	624	123
2019	17,948	630	175	28.0	187	29.9	263	42.1	625	128
2020	19,314	865	96	12.4	293	37.8	387	49.9	776	217
계	200,786	7,861	2,718	35.6	1,738	22.7	3,188	41.7	7,644	1,367

주: 1) 대상사건수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당해 연도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 사건 등의 건수를, 접수건수는 대상사건 중 국민참여재판으로 접수된 건수를 나타냄

2) 비율은 총 처리건수 대비 각 사유별 처리건수임

3) 계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의 합임

자료: 대법원

최근 5년간 국민참여재판 신청 건에 대한 법원의 배제결정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배심원 등의 안전에 대한 우려 등)의 사유로 인한 배제결정은 최근 5년간 총 배제결정 건수 1,009건 중 2건이었고, 같은 항 제2호(공범 관계의 피고인 중 일부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배제결정은 20건이었으며, 같은 항 제3호(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배제결정은 192건이었다. 같은 항 제4호(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른 배제결정은 795건으로, 최근 5년간 전체 배제결정의 78.8% 수준이다.

[최근 5년간 배제결정 사유별 현황]

(단위: 건, %)

연 도	배제결정					계
	법 §9①1 사유	법 §9①2 사유	법 §9①3 사유	법 §9①4 사유	비율	
2016	0	4	31	116	76.8	151
2017	0	6	45	144	73.8	195
2018	1	1	28	153	83.6	183
2019	0	5	45	137	73.3	187
2020	1	4	43	245	83.6	293
계	2	20	192	795	78.8	1,009

자료: 대법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대법원은 피고인 신청주의에 대한 보완, 국민참여재판 신청 사건에 대한 배제 사유 구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제도적인 보완 사항에 대해 국회의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제도 소개 활성화¹⁾, 국민참여재판 진행기법 개선 등 그동안 국민참여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자체적인 제도 보완을 통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 향상을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4) 등기특별회계 일반회계로의 전출 사업 개선 필요(대법원)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있어 등기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의 전출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을 제외하면 2014년 이후 매년 집행액이 예산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전출 예산액이 등기특별회계 예산상 수입과 지출 간 수지차에 해당하는 결산상 잉여금 예정액으로 계상되고, 2015년과 같이 수입에서 상당 규모 초과수납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면 실제 집행가능 규모를 초과하여 편성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대법원에 법률 규정과 실제 운용을 반영하지 못한 예산편성에 따라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정비하고, 등기특별회계 수입예산 과다 계상 문제를 개선하여 연례적인 집행 부진을 해소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매년 월별 세입·세출 현황, 차년도 수입·지출 예산 규모를 토대로 다수의 안으로 전출금을 검토하여 정확한 전출금 집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전출금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세입예산 추계에 만전을 기하여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대법원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1) 대법원에 따르면 2017년 한국형사법학회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비율이 62.4%에 이르고, 변호인의 접견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권유받았다는 피고인이 7.7%에 불과하다고 한다.

등기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 사업은 2020년 예산현액 815억 2,100만원 전액을 불용하였는데, 이는 과거 집행 추이 및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편성되기보다 등기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차액만큼을 동 세부사업 예산액으로 편성하고 있는 데에 기인하므로, 향후 집행 예상액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2016년 이후 최근 5년간 등기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의 전출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800억 ~ 1,200억원의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2016년, 2017년 및 2019년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40.0% 내외였고, 2018년 및 2020년은 전액 미집행되었다.

[등기특별회계 일반회계로의 전출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2016	102,518	40,000	39.0
2017	94,303	39,671	42.1
2018	123,640	0	0.0
2019	74,634	24,586	32.9
2020	81,521	0	0.0

자료: 대법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대법원은 2020년 동 사업 예산현액 전액을 불용한 이유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으로 등기특별회계의 주 수입원인 등기수수료는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미래등기시스템 사업 및 통합등기소 설치, 법 개정에 따른 동산채권담보등기시스템 개편 사업 신규 반영 등 사업이 확대될 전망에 따라 등기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고려하여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설명하는 등기특별회계 세입 감소 및 세출 증대 예상은 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유가 아니고 2020년 예산 편성 당시부터 존재했던 사유임을 고려하면, 편성 시점부터 동 사업이 과다 계상되었기 때문에 편성액 전액이 불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동 일반회계 전출 사업이 실제 전출 예상액을 기준으로 편성되지 않고, 등기특별회계 세입예산액과 세출예산액의 총액 규모를 같게 하기 위해 그 차액 만큼 편성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전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 편성 시 각 연도 세입예산액(A)과 세출예산액(B)의 차이만큼 일반회계 전출 사업 예산액으로 편성되지만, 결산상 세입과 세출의 실제 차이인 결

산상잉여금 전액이 일반회계로 전출되지 않고, 결산상잉여금 중 사업비이월액과 다음연도 세입 이입액을 제외한 금액이 일반회계로 전출되고 있다.

[등기특별회계 운영(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세입		세출					일반회계 전출		다음연도 세입 이입액
	예산액 (A)	수납액	예산액 (B)	집행액	결산상 잉여금	사업비 이월액	세계 잉여금	예산액 (A-B)	집행액	
2016	322,871	282,057	220,353	213,945	68,112	3,784	64,328	102,518	40,000	24,328
2017	321,972	283,199	227,669	217,651	65,548	10,877	54,671	94,303	39,671	15,000
2018	364,274	284,349	240,634	242,065	42,284	1,753	40,531	123,640	0	40,531
2019	314,674	287,343	240,040	222,090	65,253	8,645	56,608	74,634	24,586	32,022
2020	332,466	318,867	250,945	240,970	77,897	9,479	68,418	81,521	0	68,418

주: 세출란의 예산액 및 집행액은 전체 예산액·집행액 중 일반회계 전출 예산액·집행액을 제외한 금액임

자료: 대법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등기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 사업이 실제 전출 예상액이 아닌 등기특별회계의 수지차를 맞추기 위해 편성되고 있다는 사실은 대법원이 2020년 2차례 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감액하면서 그 차액만큼을 일반회계 전출 사업에서 증액하여 세출예산 총액과 세입예산 총액을 일치시킨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은 2020년 제2회 추경 편성 시 코로나19로 인해 등기특별회계에서 인건비(연가보상비)를 감액하고, 제3회 추경 편성 시 등기소 신증축 사업 예산을 감액하면서, 감액한 금액 각각 24억 300만원 및 26억원 등 50억 300만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증액하여 추경 세출예산 총액과 세입예산 총액을 일치시켰으나, 일반회계 전출금은 추경 증액분을 포함한 전액이 불용되었다.

등기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 사업은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등기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업으로,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이 과다 편성되고 집행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일반회계 세입에 차질을 빚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대법원 및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은 향후 등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예산의 차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동 세부사업의 예산액을 편성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당해 연도 등기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 예상액, 향후 부동산 등기 수입 변동 예상액 및 정보화 사업 소요 등을 고려하여 실제 일반회계 전출 예상액에 근거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

4. 정무위원회

가. 현 황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정무위원회 소관은 총 127건으로 시정 20건, 주의 69건, 제도개선 63건이며, 이 중 25건은 하나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1년 4월 말까지 조치완료가 112건이며, 조치중 15건으로 보고하였다.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정무위원회 소관은 없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조세심판 청구사건 처리 신속성 필요’ 등 4건이다.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1.4.30.)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0	0	3	14	13	(2)	28	24	4
국가보훈처	0	0	7	18	18	(7)	36	29	7
공정거래위원회	0	0	2	13	10	(6)	19	18	1
금융위원회	0	0	5	13	18	(5)	31	28	3
국민권익위원회	0	0	3	10	4	(5)	12	12	-
가습기살균제 등 특별조사위원회	0	0	0	1	0	0	1	1	-
합계	0	0	20	69	63	(25)	127	112	15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1.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조세심판 청구사건 처리 신속성 필요(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조세심판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관세·지방세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을 심리·구제하는 조세 전문 권리구제기관으로, 「국세기본법」은 조세심

판 청구가 있는 경우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조세심판청구 처리 결과를 보면 조세심판원은 8,653건의 사건을 처리하였고, 사건처리에는 평균 160일이 소요되었다. 이는 「국세기본법」상 사건 처리기한 90일을 초과하는 것으로, 전체 사건(8,663건) 중 법정기한인 90일 이내에 처리된 건수는 2,680건(31.0%)에 불과하였다.

국회는 이에 대해 만성적인 사건이월이 우려되므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며, 조세심판청구 사건 처리 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할 것을 시정요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최근 직제를 개정(심판부 2개 증설)하여 확대된 심판부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업무처리절차를 효율화하는 등 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조치 완료로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와 문제점

조세심판원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2020년 조세심판 청구사건의 평균 처리일수가 178일로 전년대비 18일 증가(최근 5년간 최장)하였고, 법정기한(90일) 내 처리건수는 8.3%에 불과하므로,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신속한 권익구제를 위해 다각적인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조세심판원은 2019년 8월,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급박한 어려움이 있는 영세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 선제적으로 처리하는 우선처리제도 대상을 확대¹⁾하고 쟁점이 동일·유사한 사건을 같은 심판부에서 병합 심리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등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²⁾ 또한, 2020년 9월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하여 상임심판관(고위공무원단)이 6명에서 8명으로 2명 증원되었고, 심판조사관도 2명(4급) 증원되었다. 그러나 2020년 심판청구 처리 실적은 이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과세처분에 따라 압류, 출국금지 등 급박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영세납세자 신청시 해당 사건을 우선 처리하여 왔는데 적용 요건을 당초 청구세액 1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완화하여 보다 많은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2) 조세심판원 보도자료, “조세심판원,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개혁 추진”, 2019.7.23.

조세심판원은 2020년 11,801건을 처리하면서 평균 처리일수는 178일로 법정 기한을 크게 초과하였으며, 2019년 160일에 비해 18일 증가하였고 최근 5년 중에 가장 길다. 또한, 2020년 심판청구 결정기한 내 처리된 안건은 전체 처리건수의 8.3%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조세심판 청구사건 기간별 처리현황]

(단위: 건, %, 일)

연도	처리건수 ¹⁾ (C)	90일 이내		90일 초과		평균 처리일수
		건수(A)	비율(A/C)	건수(B)	비율(B/C)	
2016	6,465	2,666	41.2	3,799	58.8	171
2017	6,624	2,486	37.5	4,138	62.5	157
2018	7,517	2,277	30.3	5,240	69.7	173
2019	8,524	2,619	30.7	5,905	69.3	160
2020	11,801	977	8.3	10,824	91.7	178

주: 1) 전체 처리건수 중 '취하' 건수는 제외한 수치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이처럼 연례적으로 조세심판원 사건처리 기간이 지연되어 심판청구 접수부터 결정서 수령까지 평균 6개월 가까이 소요되는 것은 부당한 과세 처분을 받은 납세자의 권익을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향후 조세심판원은 처리대상 심판청구 건수의 증가추세를 고려하여 조세심판 처리율 제고,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다각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심판청구 처리기간 90일 도과시 청구인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조세심판 과정 전반의 내실화와 함께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2) 보훈병원재활센터 확충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 철저(국가보훈처)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보훈병원재활센터 확충 사업³⁾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에게 진료와 연계한 양질의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광주, 부산, 대전, 대구 등 4개 지방보훈병원에 재활센터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76억원, 사업기간은 2018년부

3) 코드: 일반회계 2156-382

터 2022년까지이다. 국가보훈처는 사업시행주체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민간자
본보조금(320-07)을 지급하고 있다.

[보훈병원재활센터 확충 사업 개요]

(단위: 백만원)

구분	광주	부산	대전	대구
사업개요	연면적 8,380㎡ 지하1층, 지상7층 114병상	연면적 7,466㎡ 지하1층, 지상6층 80병상	연면적 4,510㎡ 지하1층, 지상4층 40병상	연면적 5,027㎡ 지하1층, 지상4층 40병상
사업기간	'18~'21	'18~'21	'20~'22	'21~'22
사 업 비	22,541	23,476	14,314	17,141

자료: 국가보훈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2019년에는 광주와 부산 재활센터 확충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실집행률은 광주 44.3%, 부산 59.5%로 매우 저조하여 국회는 시정요구를 통해 보훈병원재활센터 확
충 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향후 의료장비구매, 의료인력 확충 등 재활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추가사업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가보훈처는 광주·부산보훈병원 재활센터는 2021년도에 완공예
정(광주 3월, 부산 8월)으로 연도 내에 차질없이 집행을 완료할 예정이고,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향후 재활센터 건립 공사 진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확인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의 노력을 하겠
다면서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와 문제점

국가보훈처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
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보훈병원재활센터 확충 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하여 결산심사 및 국고
보조사업 평가에서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2020년에도 40.3%에 그치는 등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향후 대전과 대구 보훈병원재활센터 확충사업 추진시 사
업추진 상황 점검 및 예산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 실집행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
력할 필요가 있다.

보훈병원재활센터 확충사업은 2020년에도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이 광주 31.1%, 부산 63.8%에 그쳤다. 또한, 2020년 시작된 대전 보훈병원재활센터 확충 사업은 설계비로 3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당초 본관동에 2개층 증축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호스피스 병동 환자의 불편 문제가 발생하여 병원 별도부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증액 관련 기획재정부 협의 등으로 2020년 12월에야 설계계약이 이루어지며 실집행률이 1.9%에 불과하였고, 사업기간이 당초 2021년까지에서 2022년까지로 연장되었다.

[2020년 보훈병원재활센터 확충 사업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지자체	연도	교부액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이월액	실집행률 (B/A)	집행부진사유
광주	2020	13,643	18,316	5,690	12,626	31.1	지하층 공사시 암반제거, 지하수 유입 등 공사기간 연장 사유 발생
부산	2020	4,879	7,672	4,892	2,780	63.8	기존 건물 철거 및 경사면 평탄화 등 장기간 터파기 공사로 공사업체 기성금 지급 미비
대전	2020	310	310	6	304	1.9	'20.12. 설계계약으로 미집행

자료: 국가보훈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2020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도 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사업에 대하여 국가보훈처는 별도의 자체적인 사업관리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예산 실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예산집행계획을 보완하여 선제적인 예산집행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국가보훈처는 향후 대전과 대구 보훈병원재활센터 확충사업 추진시 사업추진 상황 점검 및 예산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 실집행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3)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공정거래위원회)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소비자중심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제도는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

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국회는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신규평가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재평가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 2019년에는 4년 전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기업(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이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고,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16.2개 기업이 재인증을 포기하는 등 재인증 포기 기업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특히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만한 인센티브의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 인증부담 완화를 위해 심사지표 조정 및 지표 수 감축 등 CCM 인증심사기준을 개정⁴⁾(‘21.1.시행)하였고, 협력업체 등에 대한 CCM 인증 취득 지원 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유통분야) 가점 신설⁵⁾(‘20.12), 중소기업 대상 CCM 인증 심화 워크숍 신설⁵⁾, 기업 맞춤형 교육(코칭) 확대 등 중소기업의 CCM 인증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신규 인센티브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기업 수는 증가추세이나 중소기업은 최근 10년간 정체상태이고, 인증기업의 43%가 재인증을 포기하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의 인증부담을 완화하고, 인증 유지를 위한 인센티브 모색 및 CCM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CCM 제도 도입 이후 인증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인증기업 수는 2008년

4) 공정거래위원회는 「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 개정(2021.1.20.)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예산 등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여 일부 심사기준을 간소화한 바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평가 지표수를 줄이고, 기업의 윤리경영, 소비자불만 사전예방을 위한 협력업체 연계 프로그램 운영 실적, 소비자불만처리 관련 소비자만족도 조사 관련 지표 등 중소기업의 여건상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지표는 삭제하였다.

5) 중소기업 CCM 인증 심화 워크숍 개요

- 유사 업종별 소규모로 조 편성 후 각 조별 심사 전문인력을 멘토로 매칭하여 진행
- 4개 업종, 11개사 참여하여 최종 7개사 신규평가 신청 및 인증

16개사에서 2021년 185개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중소기업은 2011년 이후 10년간 50개사 내외로 사실상 정체 상태이다.

[연도별 CCM 인증기업 수 현황]

(단위: 개)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대기업	15	26	36	48	54	69	75	79	85	90	94	97	104	98
공공기관	0	0	1	1	1	2	5	10	14	18	24	27	32	34
중소기업	1	3	5	57	62	40	50	53	62	59	51	46	46	53
계	16	29	42	106	117	111	130	142	161	167	169	170	182	185

주: 2021년은 2021.5.3.기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제도 도입 이후 신규인증기업 349개사 중 재인증 미신청 기업은 149개사로 인증기업의 약 42.7%가 재인증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5년간 대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별 재인증 포기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83개사 중 중소기업이 43개사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2019년, 2020년에는 대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5년간 기업별 재인증 포기 기업 현황]

(단위: 개)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대기업	4	5	3	6	9	27
공공기관	1	3	3	4	2	13
중소기업	14	11	8	5	5	43
계	19	19	14	15	16	83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재인증 포기 사유는 주로 기업 내부 사정(124개사, 83.9%)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중소기업은 CCM 체계 구축 및 인증심사를 위한 인력 부족, 기업의 경영여건 악화 등이 주요 사유이고, 대기업은 CCM 인증 유지를 위한 유인이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CCM 인증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앞서 통계에서 살펴보았듯이 ①먼저 중소기업의 인증부담을 완화하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 개정(2021.1.20.)을 통해 중소기업의 일부 심사기준을 간소화하였고,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인증 심화 워크숍을 진행한 바 있으나, CCM 인증 준비 기업에 대한 교육 지원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② 다음으로 재인증 포기 기업이 꾸준히 발생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인센티브가 제도가 실질적인 유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타부처 기업 인증제도 사례를 참고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만한 인센티브 발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 고용노동부가 인증하는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의 경우 재정지원, 각종 지원사업 가점 부여, 금리우대, 조세감면, 인력채용·교육훈련 지원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다.

[타부처 인증 제도 주요 인센티브 현황]

구분	가족친화인증 (여성가족부)	사회적기업 인증 (고용노동부)
제도 개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제도(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2008년 도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일정 요건(조직형태,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 목적 실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등)을 충족하는 경우 사회적 기업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2007년 도입)
인증 현황	총 4,340개사 (2020.12.기준) -대기업 456개사 -중소기업 2,839개사 -공공기관 1,045개사	총 2,908개소 (2021.5.기준) -비영리 626개소(민법상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영리 2,282개소(상법상 회사, 농(어)업회사법인, 영농(어)조합법인, 협동조합 등)

구분	가족친화인증 (여성가족부)	사회적기업 인증 (고용노동부)
인센티브	중앙부처, 지자체, 은행 등이 지원하는 220개 혜택 제공 <예시> -인증마크 부여, 정부표창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가점 부여(중기부), 산업기능요원 인력지원시 가점 부여(병무청), 출입국 우대(법무부), 물품구매 적격심사 가점 부여(조달청) 등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우선지원(충북), 신용보증수수료 감면(광주),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인천) 등 -중소기업 보증심사시 보증한도 우대(신용보증기금), 금리우대(시중은행)	-경영지원, 경영컨설팅 제공 -교육훈련지원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시설비 등 지원 -공공기관 우선 구매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자료: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및 각 부처 홈페이지 검색을 바탕으로 작성

③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6,3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지하철 광고, 온라인 이벤트 등을 통해 CCM제도를 홍보하여 왔다. 그러나 예산부족으로 지하철, 버스, 유튜브 광고가 특정시기에 한정되어 있어 충분한 홍보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에게 CCM 제도가 널리 알려져 있지 못한 것도 CCM 인증제도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므로,⁶⁾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및 인증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CCM의 인지도와 이해도를 제고시키는 등 CCM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활동을 체계적이고 활발히 진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⁷⁾

6)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0월 ‘CCM 인증제도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CCM 인증마크 인지도, 의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CCM 인증마크를 조사 대상자에게 보여주고 마크를 본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마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비율은 48.4%, 인증마크 확인 후 구매경험이 없다는 비율은 72%였다.

7) 예를 들어 홈쇼핑, 철도 등 다수 소비자가 이용하는 인증기업의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효과를 제고하거나,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소비자단체와 협업하여 인증제도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교육을 시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최근 4년간 CCM 제도 홍보 내용]

(단위: 백만원)

연도	홍보내용	비용	홍보기간
2017	-지하철 광고(서울·부산 지하철 차내 광고) -온라인 이벤트(CCM마크 인증샷·10주년 축하댓글 이벤트)	63	(서울지하철) 17.6.26.~7.25. (부산지하철) 17.6.26.~8.29.
2018	-지하철 광고(서울·부산 지하철 차내 광고) -온라인 이벤트(CCM마크 인증샷 이벤트, SNS 연계)	63	(서울지하철) 18.9.17.~10.16. (부산지하철) 18.9.16.~10.31.
2019	-지하철 광고(서울·부산 지하철 차내 광고) -온라인 이벤트(CCM마크 인증샷 이벤트, SNS 연계)	63	(서울, 부산지하철) 19.10.1.~11.30.
2020	-G-BUS TV 광고(수도권 버스 내 영상광고) 및 유튜브 중간광고 -온라인 이벤트(CCM 영상공유 이벤트, SNS 연계)	63	(G-BUS) 20.11.2.~12.1. (유튜브) 20.11.9.~12.8.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4)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금융위원회)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간의 이견을 조정하여 제도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위규 가입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보다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각 저축기관(농업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에 위규가입 방지대책을 수립(저축기관은 위규 가입자 유형 파악 및 전산 시스템 개선, 창구 직원 사전 교육을 통한 사전적 방지 대책 마련)하도록 하고, 상기 저축기관의 정기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금융위원회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간 기금 이관에 대한 협의(2018)를 하였으나, 관계부처는 기금을 이관할 경우 현재 인력을 고려할 때 추가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우며 금융상품 운영·관리에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자기 소관으로의 이관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개편 협의결과(2018)]

부처	관계부처 의견
농림축산식품부	농어가기금의 농림부 이관에 반대하며 금융위 주도의 미시적 제도 개선을 통해 기금운영 지속 필요 - 기금을 이관할 경우 기금예산 증가분만큼 여타 농업분야 예산이 감액될 가능성이 있고 농림부는 금융상품 운영·관리에 전문성 부족
해양수산부	현재 연간 1,200억원의 정부지원금을 통해 수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인력상 추가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워 이관에 부정적
산림청	전체 농어가저축 가입대상에서 임업인의 비중이 적고 저축가입 실적도 약 0.2% 미만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하여 산림청에서 농어가기금을 이관받기엔 부적절

자료: 금융위원회

다만,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원부 제도개선을 위해 농지원부 작성 기준을 농업인(세대)에서 필지별로 바꾸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데, 저축 장려금 사업에서는 해당 농민의 농지 소유 규모를 기준으로 저축 가입대상에 해당하는지 심사하므로, 농지원부 작성 기준이 변경될 경우 농협에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희망자가 가입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해당 부처에서 제도개편이 이루어지면 대상자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금융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부처와 협의 후 각 소관부처 재정사업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5. 기획재정위원회

가. 현 황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총 106건으로 시정 5건, 주의 39건, 제도개선 69건이며, 이 중 7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1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가 86건이며, 조치중 20건으로 보고하였다.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총 3건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21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 2건, 조치중 1건으로 보고하였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정부출자기업 배당금 축소 최소화 필요 등’ 등 2건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1.4.30.)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기획재정부	0	0	0	13	37	(1)	49	39	10
국세청	0	0	0	7	15	(3)	19	12	7
관세청	0	0	2	5	7	0	14	14	0
조달청	0	0	2	7	4	(2)	11	11	0
통계청	0	0	1	7	6	(1)	13	10	3
합계	0	0	5	39	69	(7)	106	86	20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1.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부대의견	조치현황	
		조치완료	조치중
기획재정부	3	2	1
합계	3	2	1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1.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정부출자기업 배당금 축소 최소화 필요 등(기획재정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정부출자기관 연도별 배당성향목표에 따르면 2020년 목표 배당성향은 40%이나 실적은 32.58%에 불과하고, 2019년 배당성향 실적 역시 목표(37%) 대비 미달한 32.48%에 불과했다.

경기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출자기관의 투자확대는 필요하나, 배당금 축소를 통한 우회적 지원은 재정총량에 대한 정보를 교란시킬 수 있고, 집행실적 관리가 어려우며, 국회의 통제절차를 벗어난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의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국회는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시 기획재정부가 정부출자기관의 배당 결정시 국회의 예산심사 권한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배당금 조정원칙을 명확히 하고, 배당조정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법상 고려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배당을 결정하고, 배당금 조정 없이 정부 예산에 반영된 배당수입 확보하며, 배당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 및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정보공개(21.5월 조치완료)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기획재정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출자기관 배당금 결정의 기초가 되는 배당조정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정보공개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

정부는 2020년 5월에 39개 정부출자기관에 대하여 2021년 배당절차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국유재산법」 제65조의6에 따라 공표하였다.

배당의 대상이 되는 39개 정부출자기관 중 정부배당을 실시한 기관은 22개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11개 기관과, 이월 결손 보전이 발생한 6개 기관 등 총 17개

기관은 정부배당이 실시되지 않았다. 2021년도 정부배당금은 총 1조 4,396억원으로 전년대비 356억원 증가, 평균 배당성향은 36.92%로 전년대비 4.34%p 상승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2021년 정부배당 내역에 관한 사항을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국회가 시정요구한 사항을 조치완료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도 정부배당을 공개한 보도자료에는 특정기관에 어느 정도 규모의 배당금을 결정했는지만 공개되어 있고, 어떤 기준과 방법에 근거하여 각 출자기관별로 배당액을 조정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는 2019년 국회가 결산심사시 시정요구한 배당금 조정원칙 명확화 및 배당조정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정부출자기관의 배당결과를 공개함에 있어 각 출자기관별 배당내역과 함께 배당금 산출기준 및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정부배당금 현황]

(단위: 억원)

기관명	'20년 배당			'21년 배당		
	일반회계	특별·기금	소계	일반회계	특별·기금	소계
1 한국토지주택공사	1,671	2,248	3,920	2,275	3,570	5,845
2 중소기업은행	1,662	-	1,662	2,208	-	2,208
3 한국산업은행	1,030	90	1,120	1,925	172	2,096
4 한국전력공사	-	-	-	1,421	-	1,421
5 한국주택금융공사	0	0	0	392	33	425
6 한국수출입은행	713	11	724	273	4	277
7 부산항만공사	201	-	201	238	-	238
8 인천항만공사	15	5	21	157	56	213
9 한국자산관리공사	139	-	139	142	-	142
10 한국도로공사	1	332	334	1	118	120
11 울산항만공사	107	0.1	107	77	0.1	77
12 한국방송공사	1	-	1	33	-	33
1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1	-	11	25	-	25
14 한국부동산원	13	-	13	10	-	10
15 한국농어촌공사	165	-	165	9	-	9
16 한국교육방송공사	-	-	-	3	4	8
1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3	-	13	2	-	2
18 한국공항공사	209	195	404	-	-	-
19 한국가스공사	79	13	92	-	-	-

기관명		'20년 배당			'21년 배당		
		일반회계	특별·기금	소계	일반회계	특별·기금	소계
20	한국조폐공사	39	-	39	-	-	-
21	한국관광공사	-	-	-	-	-	-
2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	-	-	-	-
23	한국수자원공사	-	-	-	-	-	-
24	한국석유공사	-	-	-	-	-	-
25	한국광물자원공사	-	-	-	-	-	-
26	한국철도공사	-	-	-	-	-	-
27	서울신문사	-	-	-	-	-	-
28	여수광양항만공사	-	-	-	-	-	-
29	한국해양진흥공사	-	-	-	-	-	-
30	새만금개발공사	-	-	-	-	-	-
31	한국해양수산개발공사	-	-	-	-	-	-
32	주택도시보증공사	-	707	707	-	616	616
33	한국투자공사	-	367	367	-	580	580
34	한국지역난방공사	-	-	-	-	39	39
35	대한송유관공사	-	8	8	-	10	10
36	88관광개발주식회사	-	-	-	-	0.2	0.2
37	인천국제공항공사	-	3,994	3,994	-	-	-
38	공항철도주식회사	-	-	-	-	-	-
39	대한석탄공사	-	-	-	-	-	-
합 계		6,069	7,971	14,040	9,194	5,203	14,396
		(18개)	(13개)	(22개)	(17개)	(13개)	(22개)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 정부출자기관 배당 결과 공표」, 2021. 5.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의무상환 비율 제고 방안 마련 필요(국세청)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최근 5년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의무상환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이후 매년 미상환 인원 및 금액이 증가하고 있고, 장기 미상환자에 대한 의무상환 고지시 징수율도 2017년 27%에서 2018년 20%로 하락하고 있음을 보였다.

최근 5년간 미상환 인원 및 금액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연도	미상환 인원	미상환 금액	장기미상환자 ¹⁾ 인원
2015년	7,912	6,559	9,290
2016년	8,999	9,095	11,906
2017년	12,935	14,531	41,721
2018년	17,145	20,641	26,045
2019년	27,290	32,189	집계 중

주: 1) 대학 졸업 후 3년간 상환내역이 없거나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5% 미만인 대출자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국회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의무상환 비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세청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의무상환 체납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실직·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유예를 적극 실시하였음 아울러, 소득발생 및 재산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납부 가능성이 큰 체납자 위주로 정리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환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와 문제점

국세청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미상환(체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세청은 상환률 제고를 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2020년 현재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은 누적인원 155만명에게 13조원 규모의 대출을 시행하였고, 이 중 6.6조원이 상환되었고 101만명 6.4조원의 대출잔액이 남아있다. 소득에 관계없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수시로 상환하는 자발적상환액은 5.5조원 규모가 상환되었고, 국세청이 담당하는 의무상환액은 1조 1,053억원이 상환되었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의 체납(미상환)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2020년 3만6천명

427억원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경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의무상환액을 부과하는데 실직하거나 폐업하는 등 납부가 곤란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연도별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의 상환대상·상환실적·미상환(체납) 현황]

(단위: 천명, 억원)

연도	상환대상 ¹⁾		상환실적		미상환(체납) ²⁾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17	164	1,794	151	1,649	13	145
2018	185	2,129	168	1,923	17	206
2019	225	2,611	198	2,289	27	322
2020	259	3,095	223	2,668	36	427
누계 (11~20)	-	11,480	-	11,053	-	427

주: 1) 의무상환액 통지자(근로소득) 및 고지자(종합소득 등)

2) 전년 미상환(체납)은 다음 해 상환대상으로 이월

자료: 국세청

따라서 국세청은 동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체납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6. 교육위원회

가. 현 황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교육위원회 소관은 총 69건으로 시정 2건, 주의 22건, 제도개선 52건이며, 이 중 7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1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가 59건이며, 조치중 10건으로 보고하였다.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교육위원회 소관은 없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사업 이자율 인하 필요’ 1건이다.

[교육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1.4.30.)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교육부	0	0	2	22	52	(7)	69	59	10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1.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사업의 융자수요 부족에 따른 집행 부진(교육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사립대학의 방학 중 강사 임금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 지원사업을 마련했으나 이용하는 대학이 없어 2019년 불용률이 100%로 나타났는데, 국회는 최근 저금리 기조로 민간 금융과 차별화 부족, 융자 신청에 따른 행정적 부담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바 사업설계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국회는 교육부로 하여금 향후 대학에 퇴직금 지급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학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하고, 강사 고용 유지율을 대

학역량진단 평가지표로 하여 해당 정책 이용을 촉진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강사 처우개선 사업의 이자율을 인하¹⁾(2020. 7.)하였고, 강사제도 안착 및 강사 고용안정 유도를 위해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강사 고용안정 지표를 반영²⁾(2019. 12.)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와 문제점

교육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융자) 사업은 이자율 인하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융자수요 부족으로 2020년에도 실집행률은 1.4%에 그쳤다.

사학진흥기금으로 지원하는 융자사업의 실집행률은 2019년 0%, 2020년 1.4%로 연례적으로 부진하다. 다만, 2019년에는 신청대학이 없었으나 2020년에는 3개 대학이 융자 신청으로 2억 5,600만원을 지원 받아 일부 융자 지원이 발생하였다.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융자)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실집행액 (B)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19	6,500	6,500	0	6,500	0
2020	18,127	18,127	256	17,871	1.4

자료: 교육부

융자 사업의 집행이 부진한 것은 국고 직접 지원(무상보조)과 비교하여 융자방식은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어 대학의 상환 부담이 존재하고 융자 신청을 위한 법인 이사회 의결 및 관할청의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는 행정적 부담에 따라 융자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융자이자율 2019년 1.5%에서 2020년 0.9%로 인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융자유인이 미흡하였다.

1) (2019년) 1.5% → (2020년) 0.9%

2) 2021년 진단 내 강사 관련 지표: 비전임교원 담당학점 대비 강사담당 비율, 강사 보수수준, 총 강좌 수, 강의규모의 적절성

강사 재직 인원이 법 시행(2019.8.1.) 전후로 2020년 1학기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어 2학기에도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자 사업의 집행이 부진하다는 것은 대학이 용자를 통해 강사의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수요가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강사 재직 인원 추이]

(단위: 명)

구분	2018		2019		2020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합 계	58,546	57,978	46,925	38,808	46,270	47,479
전업	30,204	28,772	23,523	19,964	22,682	23,505
비전업	28,342	29,206	23,402	18,844	23,588	23,974

자료: 교육부

「2021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2021. 5,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에서도 2019년부터 시행된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용자 사업은 예산에 비해 극히 낮은 집행률을 보더라도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대학의 용자 필요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 사업 유지의 필요성이 의문시된다고 평가였다. 또한 시설에 대한 투자를 통해 사립학교 및 학생들이 처한 여건을 개선하는 사학진흥기금의 다른 사업과는 달리 경상비에 대한 지원이고 원칙적으로 강사에 대한 처우개선은 기금 지원이 아닌 사립대학의 자체 노력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사업폐지가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동 사업의 집행이 연례적으로 부진하지만 2020년에는 일부 대학의 용자 수요(2억 5,600만원)가 발생하였으므로 교육부는 동 사업의 수요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 사업 수요와 함께 「2021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에서 평가한 사학진흥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 대학이 자체 노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가. 현 황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은 총 105건으로 시정 15건, 주의 25건, 제도개선 70건이며, 이 중 5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1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가 81건이며, 조치중 24건으로 보고하였다.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은 총 2건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21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 2건으로 보고하였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우편물류 인프라기술 연구개발 사업’ 등 2건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1.4.30.)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	0	6	23	53	(4)	78	66	12
방송통신위원회	0	0	7	2	9	(1)	17	7	10
원자력안전위원회	0	0	2	0	8	(0)	10	8	2
합계	0	0	15	25	70	(5)	105	81	24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부대의견	조치현황	
		조치완료	조치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1	0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1	0
합계	2	2	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1.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우편물류 인프라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축소 및 예산 전용 사유 소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우편물류 인프라기술 연구개발 사업은 우편사업 경쟁력 제고 및 고품질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편물 접수 지능화, 구분 고도화, 배송 최적화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R&D사업이다. 2019회계연도 사업추진 결과 동 사업에 편성된 예산 48억 6,000만원의 50%인 24억 3,000만원을 감액 전용하여 전자우편수수료, 물류센터 위탁수수료, 소포배달 위탁수수료 부족분에 충당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재정상황을 이유로 R&D사업을 축소 변경하여 시행하는 것은 변경사유의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동 사업의 연구 과제를 변경한 사유 및 동 사업 예산을 전용한 사유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편물류 인프라기술 연구개발 과제 변경 사유 및 예산 전용 사유에 대해 국회에 소명을 완료(20.9.7.)하였다고 하였고, 2021년에는 사업예산을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여 연구개발 사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회계연도 우편물류 인프라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감액 전용 사유를 소명하였지만, 2020회계연도에도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재정상황 악화라는 동일한 사유로 축소·변경 집행하여 시정요구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편물류 인프라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2020년 예산에 각 분야별 1개 과제씩 총 4개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46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연구관리전문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예산을 교부하기 전에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규모를 감액 조정하여 25억 2,000만원을 교부하였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은 기획평가관리비 5,000만원을 제외한 24억 7,000만원으로 과제협약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①우편물 접수 지능화 응용기술 개발은 과제를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②우편물 구분 고도화 기술 개발은 17억 6,000만원을 절반 이하로 감축하여 6억 5,000만원을 교부하였으며, ③빅데이터 기반 배송 최적화 기술 개발은 13억 3,300만원 중 3,300만원을 축소하여 13억원을 교부하였다. 다만 ④국산 물류처리 기술의 글로벌 진출 지원은 당초 계획대로 5억 7,000만원을 전액 교부하였고, 사업 전체 예산현액 중 미교부액 21억 3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다.

[2020년도 우편물류 인프라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예산현액 대비 교부액]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A)	교부액 (B)	차액 (B-A)	비고
우편물 접수 지능화 응용기술 개발	960	0	△960	미교부액 불용처리
우편물 구분 고도화 기술 개발	1,760	650	△1,110	
빅데이터 기반 배송 최적화 기술 개발	1,333	1,300	△33	
국산 물류처리 기술의 글로벌 진출 지원	570	570	0	
합계	4,623	2,520	△2,103	

우정사업본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당초 예산의 45.4% 수준인 21억 300만원을 감액하여 집행한데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사업의 재정상황 악화 등을 고려하여 즉시 시행이 필요하고, 효과성이 높은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등 예산집행을 최소화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동 사업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우편물의 접수·구분·배송 등 전 과정에 걸쳐 정보화·지능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이 사업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해당 분야 과제 지원이 필요성이 저하되었기 때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 편성된 예산과 사업내용을 특별회계 재정상황에 따라 축소·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은 사업 목표 달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도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재정상황을 이유로 R&D사업을 축소·변경하여 시행하는 것은 변경사유의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으나, 2020년에도 이와 같은 집행방식이 반복된 상황이다.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편물류 인프라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

서 ‘미래형 우편물류 인프라 구현’이라는 중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해 편성한 R&D 예산을 특별회계 재정상황 등을 이유로 축소변경하여, 수수료 등 단기적 용도에 활용하거나 불용처리하는 집행방식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집행 방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사업의 취업률 성과저조 문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사업은 대학 졸업예정자나 취업준비자를 대상으로 프로젝트 중심의 실무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4차 산업혁명 8대 선도사업¹⁾ 분야의 청년인재로 양성하고, 관련분야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취업연계 사업으로 1인당 2,000만원이라는 고액의 교육비가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주요성과인 취업률이 2018년 55.0%, 2019년 27.7%에 불과하여 예산대비 성과가 부진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연차평가 결과 33개 과제 중에서 4개 과제가 중단되고 7개 과제가 교육인원(사업비) 축소 조치를 받았으며, 2019년말 기준 총 197명의 중도이탈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이탈 교육생에 대한 교육비 환수를 실시하지 않았다.²⁾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첫째,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취업률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 경고와 같은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둘째, 향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취업률 등 사업성과를 제고할 것, 셋째, 동 사업의 중도이탈자 관련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비 반납계획 등을 수립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³⁾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첫째, 2020년 12월 연차평가 시 취업률, 수료율, 교육생 만족도 등을 반영하여 평가를 강화하였고, 둘째, 중간평가 시 취업률 등 성과반영을 강화하고, 채용박람회 홍보 강화 및 채용연계 기업 확보 강화 등 취업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하였으며, 셋째, 교육생 중도 이탈자가 다수 발생한 수행기관에 대해 평가 시 반영하여 다음해 지원중단 또는 교육정

1) 8대 선도분야에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블록체인, AR·VR,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공장이 포함된다.

2)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2020.11, p.463

3)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2020.11, p.463

원 축소, 중도 이탈자 잔여기간 예산액 반납 등을 위한 사업관리지침 개정을 완료하였다고 밝히면서,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와 문제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사업은 교육 중도이탈자 방지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사업을 통해 45개 교육과정을 통해 총 1,903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동 사업은 교육과정의 80% 이상 이수 시 수료가 가능한데, 2020년 중도이탈자는 전체의 9.2%인 176명으로, 2019년 10.6%보다는 감소했지만, 2018년 비중(7.8%) 보다는 소폭 증가하여, 지속적인 중도탈락자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 및 교육인원, 취업실적 현황]

(단위: 회, 명, %)

구분	교육 과정 수	교육인원현황				취업연계실적				
		교육 인원	수료 인원 (A)	중단 인원 (B)	비중 (B/A)	취업 대상 자 (C)	취업 인원 (D)	유관 분야	기타 분야	비중 (D/C)
2018	37	1,200	1,107	93	7.8	1,084	690	559	131	63.7
2019	42	1,943	1,737	206	10.6	1,695	1,199	888	311	70.7
2020	45	1,903	1,727	176	9.2	-	-	-	-	-
합계	124	5,046	4,571	475	9.4	2,779	1,889	1,447	442	68.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동 사업은 교육과정 수료 이후 9개월간 교육운영기관을 통해 취업지원이 이루어지는데, 2018년 취업률 57.5%에서 2019년 취업률은 61.7%로 다소 상향되었으나 일부 교육과정의 경우 취업률이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⁴⁾

4) 2019년 총 42개 교육과정 중 10개 과정은 취업률이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동 사업은 2020년 교육수행 결과 중도이탈자가 전체의 9.2% 수준이고, 2019년 교육과정의 취업률 집계 결과 일부 교육과정은 취업률이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성과 제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동 사업은 2021년까지 지원 후 사업이 종료될 예정⁵⁾이나, 2020년과 2021년에 선발된 교육생에 대해서는 취업연계 성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같은 취업연계 사업 추진 시 교육과정 관리 강화, 중도이탈자에 대한 지원금 환수 방안 마련, 취업률 등 사업성과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의 후속사업으로 ‘기업멤버십 소프트웨어 캠프’ 사업을 2022년 부처 예산요구안에 포함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8. 외교통일위원회

가. 현 황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은 총 93건으로 시정 18건, 주의 33건, 제도개선 42건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1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가 82건이며, 조치중 11건으로 보고하였다.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은 없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기금 인건비 집행 주의’ 등 3건이다.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1.4.30.)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외교부	0	0	3	21	22	0	46	41	5
통일부	0	0	13	11	17	0	41	35	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0	0	2	1	3	0	6	6	0
합계	0	0	18	33	42	0	93	82	11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1.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기금 인건비 집행 주의(외교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는 국제질병퇴치기금에서 집행하여야하는 인건비를 일반회계인 협력사업지원(ODA)사업 예산으로 집행하였다. 이는 2019년도에 국제질병퇴치기금에 계획된 인건비(2억 2,700만원)를 초과하여 집행한 것이며, 예산과 기금의 설치 목적을 구별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다.

국회는 향후 예산집행 시 법령 및 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은 기금재원의 독립적인 운영구조 구축,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 간 구분된 재원 관리 등 국제질병퇴치기금 재원 관리 개선계획 수립을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와 문제점

한국국제협력단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일부 달성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기금운영비 성격의 자산운용 관련 경비 등을 기금사업비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기금관리 직원 인건비의 일반회계 예산 집행문제에 관한 국회의 지적은 시정하였으나 기금운영비 성격의 경비를 기금사업비로 편성·집행하여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일부 달성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국제협력단은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주요사업인 민관협력 국제질병퇴치, 국제기구협력 국제질병퇴치, 글로벌 국제질병퇴치 사업에서 기금운영비 성격의 경비인 기금운영실적보고서 제작, 자산운용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KOICA 홍보기념품 제작비 등으로 2,416만원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명목의 경비는 기금전체 운영과 관련된 경비로 사업비가 아니라 기금 기본경비 성격의 기금운영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기금사업비의 기금운영비 성격 경비 집행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집행내역	집행액
민관협력 국제질병퇴치	기금운영실적보고서 제작, 기금운용심의회 민간위원 출석수당 등	7,113
국제기구협력 국제질병퇴치	2019년 기금운영실적보고서 전문가 사전검토 자문료, 자산운용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등	11,372
글로벌 국제질병퇴치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 위원회 참석수당, KOICA 홍보기념품 제작비 등	5,675
합계		24,160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지출부 발체

이에 대해 한국국제협력단은 국제질병퇴치기금 세부사업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가 자문료, 기금 관리지원 용역, 회계정산 수수료 등을 기금사업비의 사업개발관리비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업개발관리비에는 신규 기금사업 발굴, 계속 기금사업 평가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고, 기금운용, 자산운용, 기금 홍보비 등은 기금운영비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한국국제협력단은 기금운영비 성격의 경비를 기금사업비에 편성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북한이탈주민 미래행복통장 중도해지자에 대한 지원책 확대 필요(통일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있어 북한이탈주민 미래행복통장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예산액 70억 500만원 중 54억 9,7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78.5% 수준인데, 동 사업은 2017년 이후 매년 집행률이 하락하고 있다.

국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동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미래행복통장 가입자가 실직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중도해지를 희망하는 경우 긴급생계비 지원 및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연계,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 연계, 적립 일시중지 기간 확대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미래행복통장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통일부는 탈북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미래행복통장 ‘가입·유지 독려’를 지역적응센터의 평가지표에 포함하는 정책을 통해 탈북민들이 일시적 경제적 궁핍으로 애써 저축한 미래행복통장 적금을 해지하는 일이 없도록 ‘적립일 지중지’ 제도를 이용하여 중도해지를 예방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탈북민 취약 계층 전수조사(20.4~6월), 위기의심자 총 438명을 발굴하여 긴급지원금 351건, 긴급생계비 158건, 의료비 39건, 기초생활보장 53건, 긴급복지 20건 등 지원을 통해 미래행복통장 중도해지 없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와 문제점

통일부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를 적정한 방식으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실직·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자산형성 미래행복통장 중도 해지자에 대한 정부 매칭 지원금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산형성제도 미래행복통장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 기간 중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거주지 전입 후 6개월 후 3개월 이상 취업 중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거주지 보호기간(5년) 내에서 최대 4년간 근로소득의 30% 이내 저축 금액에 대해 1:1로 매칭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산형성제도 미래행복통장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대 상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자 중 거주지 전입 후 6개월 후 3개월 이상 취업 중인 자 -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전월의 임금소득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¹⁾ 소득 이상인 자는 제외 - 정부·지자체 시행중 유사 자산형성지원 사업 기 혜택자는 제외
지급시기	거주지 보호기간 내 최대 4년(최초약정 2년 + 최대 2년까지 연장)
지원내용	근로소득 30%(10~50만원 범위) 저축금액에 대해 1:1 매칭지원
신청방법	하나센터에 신청 → 하나재단 확인 및 적립 등 운영

주: 2020년 4분기 기준 7,587,418원(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 통일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8년 이후 동 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면, 신규 가입하는 인원은 매년 500명 규모이고, 만기해지 인원은 2018년 17명에서 2020년 169명으로 늘었다. 월 평균 미래행복통장 유지인원은 2018년 697명에서 2020년 1,38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 자산형성제도 미래행복통장 가입 및 해지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8	2019	2020
신규가입	458	510	559
만기해지	17	49	169
중도해지	87	109	72
월 평균 유지 인원	697	1,059	1,388

자료: 통일부

동 사업의 중도해지는 최근 3년간 연 70~110건 규모로 발생하고 있고, 통일부에 따르면 주요 중도해지 사유는 실직, 생활비 마련, 창업, 학업, 본인 및 가족 의료비 수요 등 때문이다.

통일부는 자발적 약정해지, 적립금 연속 3회 초과 미납입 등의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시 지원대상자 본인의 적립금과 그에 대한 이자만 지급하고, 정부 매칭 지원금은 일체 지원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신 실직이나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저축 일시중지가 불가피한 경우 적립을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 이후 만기를 채우는 경우 정부의 매칭 지원금도 지급한다.

이는 동 사업의 목적이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보호기간(5년) 중 조속히 자산을 형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이나, 실직이나 가족의 질병·사고 등의 경우는 불가피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로, 적립금 외의 재원으로 상황 해결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희망키움통장·내일키움통장 등 타 부처의 자산형성 사업의 경우 중도해지 시에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매칭 지원금을 지원하는 점을 참고하여¹⁾, 미래행복통장 중도해지자에 대한 정부 매칭 지원금 지원 기준과 조건 등을 완화하여 매칭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통일정책 관련 사회적 합의 형성 사업 체계적 추진 필요(통일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있어 통일정책 관련 사회적 합의 형성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동 사업은 통일국민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북한의 비핵화 기조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2019년 30차례에 걸쳐 인도적 지원의 조건이라는 의제를 ‘사회적 대화’에서 다룬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국민대표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회적 대화 참여자들에 의한 통일국민협약은 국민적 합의로 인정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국회는 통일부에 사업취지에 맞는 보편적 의제를 다루고, 통일정책 관련 사회적 합의 형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1) 희망키움통장Ⅱ의 경우 소득 수준이 개선되어 가입기준인 중위소득 50% 이하인 근로자가 중위소득 70%를 초과하게 되거나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 적립된 전액을 지급하고, 청년저축계좌의 경우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가 결정된 달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한다.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통일부는 2020년도 사회적 합의 형성 사업은 통일국민협약안 기초안 마련을 위해 종합 대화의 예비대화로서 권역대화를 실시하는 등 사회적 대화가 상호 연계성을 갖도록 구조화하였고, 종합대화시 논의할 의제를 권역 대화에 참가한 시민참여단이 직접 숙의 토론 후 결정함으로써, 의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확보하였으며, 국민의 대표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가 성, 연령, 세대, 이념성향 등을 고려하여 시민참여단을 선정하는 등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었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통일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동 사업의 목적인 통일국민협약의 기초안 마련 과정에 각 연도 사회적 대화 논의 내용이 유기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 향후 종합토론 및 시민사회 의견 수렴 시 기존에 논의되었던 내용이 다음 논의의 바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2020년 마련된 기초안의 향후 활용 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진행되었고 2020년에는 동 사업의 목적인 통일국민협약의 기초안이 마련되었다.

동 사업이 시작된 2018년 이후 각 연도별 사회적 대화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에는 통일정책 공론화 모델을 개발하고 “북한을 보는 시각”, “한반도 미래상”, “시민사회의 역할” 등을 주제로 시범적으로 총 20회의 사회적 대화를 실시하여 약 1,6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였다. 2019년에는 국민의 참여·소통 확대에 중점을 두고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를 실시하여 “평화체제와 비핵화”, “남남갈등 극복에 필요한 원칙”, “인도적 지원의 조건” 등을 주제로 총 30회의 사회적 대화를 실시하였고, 약 2,5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였다. 2020년에는 “통일국민협약 초안에 포함되어야 할 주제”에 대해 287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권역별 대화를 실시한 후, 권역별 대화에서 선정된 주제에 대해 시민 109명이 종합대화를 실시하여 통일국민협약 기초안을 마련하였다.

[2018~2020년 통일정책 관련 사회적 대화 사업 추진 현황]

연도	구분	참석 인원	참석자 선정방법	논의의제
2018	4대권역별 국민대화	343	여론조사기관 선정 ¹⁾	- 북한을 보는 시각 - 한반도 미래상
	17개 광역별 시민사회 대화	1,165	공모/유관기관 협조 하 선정 ²⁾	- 한반도 미래상 - 북한을 보는 시각 - 시민사회의 역할 - 평화와 통일에 기대되는 효과 - 통일교육의 강조점 - 남북 경제협력의 상대적 이득 - 평화통일의 시대, 지역사회 과제 - 한반도 통일 이후 우리의 기대
	미래세대· 진영별 대화	153		- 북한을 보는 시각 - 한반도 미래상
2019	4대권역별 국민대화	920	여론조사기관 선정 ¹⁾	- 한반도 미래상 - 평화체제와 비핵화 - 남남갈등 극복에 필요한 원칙 - 인도적 지원의 조건
	17개광역별 시민사회 대화	959	공모/유관기관 협조 하 선정 ²⁾	- 한반도 미래상 - 평화체제와 비핵화 - 남남갈등 극복에 필요한 원칙 - 인도적 지원의 조건 - 평화·통일을 위한 원칙
	해외 한인사회 대화	517		- 한반도 미래상 - 인도 지원의 조건
	시범 합의도출 종합대화	158	여론조사기관 선정 ¹⁾	- 인도 지원의 조건
2020	4대권역별 국민대화	287	여론조사기관 선정 ¹⁾	- 통일국민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의제 도출
	합의도출 종합대화	109	여론조사기관 선정 ¹⁾	- 한반도 미래상 - 미래상 실현의 과정과 방법

주: 1) 권역·종합 대화는 여론조사기관(한국리서치)에서 전화면접을 통해 선정(성향, 성별 등 고려)

2) 지역·해외 대화 등은 통일 공감대 확산 및 관심 제고 차원에서 실시한 것으로서, 랜덤 샘플링이 아닌 통일비전시민회의가 공모 또는 유관기관 협조 하 진행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사업 시작 이후 3년간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제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2020년 사회적 대화에서 통일국민협약 기초안에 들어갈 주제를 새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2018 ~ 2019년 약 50회의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 4,200여명의 시민의 논의 내용이 협약안 기초안 작성 시 존중되기 어려운 구조로 진행되었고, 연도별 참여자가 매년 신규로 선정되어 반복 참여를 통한 전년도 논의 결과 축적

이 이루어지지 않았다.²⁾

통일부는 향후 종합토론 및 시민사회 의견수렴 시 기존에 논의되었던 내용이 다음 논의의 바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2020년 마련된 통일국민협약 기초안을 향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2) 2020년도 권역별 대화 실시 전에 자료집을 제공하였으나, 전년도 논의 내용은 논의 전후 주제별 찬성률의 변화를 보여주는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9. 국방위원회

가. 현 황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국방위원회 소관은 총 83건으로 시정 15건, 주의 24건, 제도개선 46건이며, 이 중 2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1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가 61건이며, 조치중 22건으로 보고하였다.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국방위원회 소관은 없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 시정요구 후속조치 내용 미흡’ 등 4건이다.

[국방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1.4.30.)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국방부	0	0	7	13	18	(2)	36	30	6
병무청	0	0	1	2	8	(0)	11	10	1
방위사업청	0	0	7	9	20	(0)	36	21	15
합계	0	0	15	24	46	(2)	83	61	22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1.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 시정요구 후속조치 내용 미흡(국방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사업은 군 전투력 보장 및 장병 복지향상 등을 목적으로 장비, 물자, 부품 등 전력지원체계 분야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수정책지원의 내역사업이다.

이 사업은 연례적으로 예산집행실적이 저조한 상황이고 2019년에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 비율이 37.2%에 그쳤으며, 이에 국회는 국방부로 하여금 집행부진이 반복되는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사업의 집행을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연구개발 착수 전 사전 검증절차를 강화(기술수준조사 및 선행연구 수행 확대)하고 다년도 사업의 경우 초년도 예산편성을 최소화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불용 과다를 방지하며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집행점검회의’를 분기 별로 실시하여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으로 집행을 제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와 문제점

국방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연례적인 미착수문제가 발생하는 신규과제에 대해서는 기술수준과 적정 사업비 규모 등을 재검토하고 초년도 예산편성을 최소화하는 등 국회 시정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

결산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이 사업의 예산액 대비 집행액 비율이 33.2%로 2019년 38.9%보다 오히려 하락하였다.

[최근 4년 간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본예산 (A)	추경								
2017	3,922	3,922	586	△217	4,361	2,366	364	1,631	60.3	54.3
2018	3,276	3,276	364	0	3,640	1,910	227	1,503	58.3	52.5
2019	4,736	4,736	227	△17	4,945	1,841	267	2,837	38.9	37.2
2020	6,920	3,920	267	△1,533	2,654	2,365	274	15	34.2	89.1

자료: 국방부

이는 2020년에 신규과제 5건이 업체 무응찰 등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못해 예

산을 집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특히 2018년부터 신규과제로 추진한 ‘소화기 소음기 성능개량’, ‘105mm 전차 도비방지 연습예광탄 연구개발’, ‘155mm 포병연습탄 연구개발’과제와 2019년부터 신규과제로 추진한 ‘KCTC 교전훈련장비 통합개발’, ‘기갑 및 기계화부대 중대급 교전훈련장비 통합개발’과제는 2020년까지 매년 업체 무응찰 등으로 계약이 미체결되었다.

[최근 3년 간 전력지원체계연구개발 신규과제 중 미집행과제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과제명	예산	미집행사유
2020	소화기 소음기 성능개량	176	사업시기 조정
	105mm 전차도비방지 연습예광탄 연구개발	150	사업시기 조정
	155mm 포병연습탄 연구개발	150	업체 무응찰
	KCTC 교전훈련장비 통합개발	500	업체 무응찰
	기갑 및 기계화부대 중대급 교전훈련장비 통합개발	450	사업 미착수
	소 계	1,426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국방부는 연구개발 착수 전 사전 검증절차를 강화(기술수준조사 및 선행 연구 수행 확대)하고 다년도 사업의 경우 초년도 예산편성을 최소화하여 미계약으로 인한 불용 과다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였으나, 2021년 신규과제 추진현황을 보면 2020년에 업체 무응찰 등으로 계약이 미체결된 과제인 ‘155mm 포병연습탄 연구개발’, ‘KCTC 교전훈련장비 통합개발’, ‘기갑 및 기계화부대 중대급 교전훈련장비 통합개발’은 반복되는 업체 무응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술요구수준과 적정 연구비 규모 등에 대한 재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또다시 신규과제로 추진되었으며, ‘155mm 포병연습탄 연구개발’과제는 2021년에 예산액이 3억 5,000만원으로 2020년(1억 5,000만원)보다 오히려 증가하였고 ‘기갑 및 기계화부대 중대급 교전훈련장비 통합개발’과제도 2020년과 동일한 예산이 편성되어 초년도 예산편성을 최소화하겠다는 시정요구 조치계획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업체 무응찰 등으로 연례적인 미착수문제가 발생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수준과 적정 사업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고 초년도 예산편성을 최소화함으로써 국회 시정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

(2) 관서운영경비 부적정 집행 반복 문제(국방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관서운영경비는 관서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서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서는 그 성격상 일반적인 국고금 지출 절차¹⁾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에 대해서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이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육군은 관서운영경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예산과목인 민간경상보조와 일반용역비를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였고 국방부 및 각 군에서 관서운영경비의 건당 집행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회는 국방부로 하여금 예산집행 시 관서운영경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국고금관리법」 등 국고출납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도록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육군에서 문제점을 시정하여 일반용역비와 민간경상보조 예산을 관서운영경비가 아닌 지출원인행위를 통해 지출관이 직접 지출하도록 하고, 국방부와 각 군도 건당 500만원 이상 경비를 관서운영경비가 아니라 지출관을 통해 직접 지출하도록 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국방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국회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각 군에서 관서운영경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예산과목을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거나 건당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일반용역비와 민간경상보조 예산, 건당 500만원 이상 경비는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하지 않고 지출원인행위를 거쳐 지출관을 통해 직접 지출하겠다고 조치완료 보고를 하였으나, 이러한 조치완료보고에도 불구하고 각 군에서 2020년에

1) 「국고금 관리법」

제22조(지출의 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제21조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 그 소관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지출관)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관서운영경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용역비, 민간경상보조 예산과 건당 500만원 이상 경비를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한 사례가 발생하였다.

육군과 해군은 정책홍보지원 사업의 일반용역비 예산으로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하였고, 해병대도 일반용역비 예산으로 편성된 군어린이집운영비와 사이버인력 전문화 교육과정비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하였다.

[관서운영경비 지급제한 예산과목 집행내역(2020년)]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건명	총지급액
육군	정책홍보지원	일반용역비	정책홍보관리 2건	6
해군	정책홍보지원		2020년 대한민국 해군 호국음악회 협연료	4
해병대	군어린이집운영지원		어린이집운영비 지급	40
	정보보호(정보화)		사이버인력 전문화 교육과정비 지급	6
합 계				56

자료: 2020년도 국방부 관서운영경비 지급대장을 바탕으로 작성성

또한 육군은 연합지휘통신체계사용사업 예산으로 미통신선 한국측 운용비용 약 6억 3,800만원을, 하반기 연합지휘소훈련 특근매식비 예산 6,400만원을 관서운영경비로 각각 지급하는 등 건당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집행한 건은 다음과 같다.

[관서운영경비 건당 집행한도 초과 사례(2020년)]

(단위: 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건명	총지급액
육군	연합지휘통신체계사용	임차료	'20년 미통신선 한국측 운용비용	638,314
	작전상황연습	특근매식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 특근매식비 예산집행	63,755
해병대	전력발전지원	일반수용비	교리발전세미나 지원	12,186
	자기개발교육	일반수용비	'20년 8~9월 병 자기개발비용 지급	77,669

자료: 2020년도 국방부 관서운영경비 지급대장을 바탕으로 작성성

따라서 국방부는 국회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각 군에서 관서운영경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예산과목을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거나 건당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3) 사회복지요원 인력활용 개선 및 복무지도관 충원 필요(병무청)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19년 기준 사회복지요원 복무위반자가 2,500여명(4.1%)에 이르고 있고, 최근에는 사회복지요원의 ‘n번방’ 관련 사건도 발생하고 있는 등 사회복지요원의 복무관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국회는 복무지도관 1인당 적정 관리인원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무지도관을 충원하고 복무지도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다. 또한 행정지원 인력의 필요성을 해당 복무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행정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사회복지요원의 인력 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병무청은 복무지도관 충원과 관련하여 ①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공무원 복무지도관 인력 증원을 위한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② 병무청이 복무부실자를 직접 관리하기 위한 인력 증원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으며 ③ 2021년에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신규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사회복지요원 복무고충을 위한 멘토지도관 20명을 선발 운영 중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복무지도관 전문성 강화 및 사회서비스 분야 수요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① 복무지도관 전원을 대상으로 경력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고 ② 기존의 행정직 복무지도관(15명)을 자격과 경력을 갖춘 임기제 복무지도관으로 전환 채용하였으며 ③ 2021년 사회서비스 분야 수요를 전년 대비 1.3% 증가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병무청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2021년 4월말 기준 사회복지요원 복무지도관 1인당 관리인원은 적정 관리인원(300명)의 2배가 넘는 618명이며 사회복지요원의 복무만족도 및 복무기관 활용만족도 또한 점차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병무청은 복무지도관이 조속히 충원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는 「병역법」 제31조제4항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3조에 따라 복무기관의 장이 지휘·감독하고 있고,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수행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신상관리 등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실태 및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실태 점검을 위하여 복무지도관을 임명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6년간 복무지도관 1인이 관리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및 인원을 살펴보면, 2016년 108개 기관, 536명에서 2021년 4월말 기준 135개 기관, 618명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무지도관 1인당 관리기관 및 관리인원 현황]

(단위: 개, 명)

구 분		21. 4월말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복무인원		61,230	56,306	60,698	57,675	57,580	51,960
복무기관		13,385	12,326	12,497	11,877	11,569	10,471
복무 지도 관	인 원	99	99	99	97	97	97
	1인당 관리기관	135	125	126	122	119	108
	1인당 관리인원	618	569	613	595	594	536

자료: 병무청

복무지도관은 복무가 불성실하거나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성실복무를 유도하고 복무부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복무지도관 1인이 적정 관리인원(300명)²⁾의 약 2배가 넘는 인원을 관리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만족도 뿐만 아니라 복무기관의 활용만족도 또한 점차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만족도는 2017년 82.9%에서 2020년 78.9%로 하락하였고 복무기관 활용만족도 또한 2017년 84.6%에서 2020년 78.2%로 하락하였다.

2) 2018년 사회복무제도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한 복무지도관 1인당 적정 관리인원을 300명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최근 4년간 복무만족도 및 복무기관 활용만족도 현황]

(단위: 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평균	83.8	81.1	81.4	78.6
사회복무요원 복무만족도	82.9	79.4	80.6	78.9
복무기관 활용 만족도	84.6	82.8	82.2	78.2

자료: 병무청

국회는 복무지도관 충원 문제를 2017년, 2018년, 2019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3년 연속 지적하였고, 이에 대하여 병무청은 매년 공무원 복무지도관 인력 증원을 위한 예산증액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병무청은 2021년에는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신규 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멘토링 사업’이 선정되어 전국 14개 지방병무청에 총 20명의 복무고충 멘토지도관을 위촉하여 운영 중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활동기간이 최대 6개월이고 멘토지도관 1명당 관리인원이 월 5명 내외에 불과하며 동 사업이 2022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선정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는 등 복무지도관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멘토링 사업 >

- ▶ (복무고충 멘토지도관) 20명
- ▶ (주요임무)
 - 복무불성실·부적응 사회복무요원 대상으로 고충 상담
 - 주기적 면담을 통해 복무부실 원인 파악, 해결방안 모색
 - 행태개선 유도, 근무여건 개선 및 권익보호 노력 등
- ▶ (활동계획)
 - 활동기간/형태: 6개월('21.5~7월, 9~11월)/출장 근무
 - 관리인원: 월 5명 내외(대상자별로 월 2회 이상 상담)
 - 활동량/시간 : 월 10건(주2~3회)/건당 4시간 소요

따라서, 병무청은 복무지도관이 조속히 충원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실효적 정책 추진 필요(병무청)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예산 50% 이상(일반수용비, 임차료·일반용역비 등)이 ‘찾아가는 행사와 같은 제도 안내 및 상담에 치중되어 있고, 병역이행자 중심의 맞춤형홍보를 위하여 별도의 세부사업인 ‘병역행정안내’에서 홍보콘텐츠 제작 등 온라인·미디어 홍보를 위한 예산과 국민참여 현장소통을 위한 예산이 편성·집행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병무청은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병역의무자와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한 병역진로상담 등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진로·적성과 군 특기를 연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병무청은 2020년 7월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개원하여 개인의 적성과 군 특기를 매칭하여 병역진로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1월부터 적성-군 특기 연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병무청은 2021년 7월 대구·광주대전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지역·대상 간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병무청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찾아가는 서비스 수혜대상자 수, 온라인 서비스 접속자 수,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방문자 수만으로는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병무청은 군 특기 추천 및 상담을 받은 입영대상자가 해당 분야 군 특기로 입영하였는지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함으로써 동 사업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사업은 병역과 진로를 연계하여 입영 전-복무 중-전역 후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군복무가 사회진출 디딤돌이 되도록 병역의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병무청은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하여 입영 전에 맞춤형 기술훈

련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군 복무와 전역 후 취업에 이르기까지 군·사회 연계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2014년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취업맞춤특기병의 경우 그 대상이 고졸학력 이하로 한정되는 문제가 있어 2019년부터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사업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에는 진로·적성·군 특기 연결 및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학교 등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2020년 7월에는 서울에 상시 상담센터인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개원하고 11월말부터는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또한, 2021년 7월에는 서울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이외에 대구·광주·대전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3곳이 추가로 설치되었다.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개원 현황]

구분	서울 센터	대전센터	대구센터	광주센터
개원일	2020. 7. 1	2021. 7. 15	2021. 7. 20	2021. 7. 22

자료: 병무청

한편, 동 사업의 실적을 살펴보면,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는 사업 시작년도인 2019년부터 2021년 6월말까지 4,066명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온라인 서비스는 2020년 11월 25일 서비스 개시 후 2021년 6월말까지 59,761명이 접속하였으며, 서울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의 경우 2020년 7월 1일 개원 후 2021년 6월말까지 6,406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사업 실적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9	2020	2021. 6월말
찾아가는 서비스	1,615	1,691	760
온라인 서비스	-	4,995	54,766
서울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	3,002	3,404
합 계	1,615	9,688	58,930

자료: 병무청

그런데 예를 들어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접속자 수는 59,761명에 달하고 있으나 접속자 대부분이 각종 군 지원 정보 및 군 생활 정보 조회에 그치고 있고 직업 선호도 검사를 실시하는 비율은 접속자 수 대비 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선호도 검사 후 상담센터 방문신청도 60.7%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서 단순히 접속자 수만으로는 동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측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온라인 서비스 현황]

의무자	'군 지원' 정보 & '군 생활' 정보 조회	직업선호도검사 + 전공자격면허 등	군 특기 추천	상담 센터 방문 신청
병무청 누리집				
2020년	4,995명	457명(9.1%)		274명(59.9%)
2021년 6월말	54,766명	4,678명(8.5%)		2,841명(60.7%)
합 계	59,761명	5,135명(8.6%)		3,115명(60.7%)

자료: 병무청

또한, 찾아가는 서비스나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의 경우에도 단순히 동 서비스 수혜대상자가 늘어난다고 하여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사업의 목표인 진로·적성과 군 특기 연결이 향상되고 있는지 그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내역사업으로 하고 있는 현역병 모집 사업의 성과지표는 '현역병 적성, 특기별 입영률'로, 동 지표는 해당연도 전체 징집·모집 계획인원 대비 징집·모집 적성, 특기별 입영인원을 그 측정산식으로 하고 있어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역병 모집 사업의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18	'19	'20	'21	'20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현역병 적성, 특기별 입영률(%)	목표	96.9	96.9	94.2	94.3	군소요 대비 입영인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현역병 충원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도전적 업무추진을 위해 전년 실적치보다 0.2%p 상향 설정	(징집·모집 적성(특기)별 입영인원/징집·모집 계획인원) × 100
	실적	97.1	94.0	91.7	-		
	달성도	100.2	97.0	97.3	-		

자료: 병무청

따라서 병무청은 찾아가는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방문 등을 통한 직업선택도 검사 후 군 특기 추천 및 상담을 받은 입영대상자의 확대와 더불어 입영대상자가 추천 및 상담 받은 군 특기로 입영하였는지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개발함으로써 동 사업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10. 행정안전위원회

가. 현 황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은 총 88건으로 시정 9건, 주의 17건, 제도개선 65건이며, 이 중 3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1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가 71건이며, 조치중 17건으로 보고하였다.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은 총 2건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21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 2건으로 보고하였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의 미집행 이월과다’ 등 3건이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1.4.30.)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행정안전부	0	0	2	7	25	(1)	33	30	3
경찰청	0	0	0	6	15	(0)	21	14	7
소방청	0	0	0	0	7	(0)	7	6	1
인사혁신처	0	0	0	2	6	(0)	8	7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0	0	7	2	12	(2)	19	14	5
합계	0	0	9	17	65	(3)	88	71	17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1.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부대의견	조치현황	
		조치완료	조치중
행정안전부	2	2	0
합계	2	2	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1.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의 미집행 이월과다(행정안전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19회계연도 결산에 있어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당해연도 예산액 331억 2,3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13억 5,3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444억 7,600만원을 전액 교부하였으나 실집행률이 76.7%에 그쳤다.

국회는 행정안전부가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와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을 교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추진상황 및 집행률, 이월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비를 적정규모로 편성하고, 교부 시 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기별 실집행 가능 범위 내에서 교부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는 이유로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행정안전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개소별 공사지연 등에 의한 미집행 이월이 연례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2020회계연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472억 8,700만원을 전액 교부하였으나 실집행액은 367억 6,500만원으로 실집행률이 77.7%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월액이 총 98억 2,600만원으로 당해연도 예산현액의 20.8%가 미집행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6억 9,600만원이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도에도 상반기 중에 국비교부액을 전액 교부(총 104개 개소)하였으며, 42개소는 이전년도와 같이 관계기관과의 협의·승인 지연, 보상단계에서 소유자와의 협의 지연으로 착공이 연기되거나 민원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실집행률이 70% 미만이다. 더불어 29개소는 실집행률이 50%미만이고, 교부액 전액이 미집행된 사업(대청호수길 선형개량사업)도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신규 보조사업 대상 개소 선정 시 지역주민과의 사전협의 등 지방자치단체별 준비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선정하고, 사업 추진상황과 연내 집행가능성에 근거하여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정기 실적조사와 공정률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사업지연에 의한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사이버안전수사활동사업 시정요구 후속조치 내용 미흡(경찰청)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사이버안전수사활동사업은 해킹, 사이버사기, 사이버명예훼손 등 각종 사이버범죄 예방 및 수사에 필요한 교육, 장비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이버범죄 발생은 2017년 13만 1,734건, 2018년 14만 9,604건, 2019년 18만 499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나, 검거율은 2016년 83.5%에서 2019년 73.4%로 실적이 악화됨에 따라 국회는 경찰청으로 하여금 사이버범죄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증거분석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민간전문가 및 고급인력을 적극 충원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며 조직역량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등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찰청은 지방청 사이버수사과 신설·전담수사 체제 구축 등 조직을 정비하고, 전문인력 채용 및 전문교육을 통해 사이버경찰관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선제적 예방을 위한 첨단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경찰청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경찰청의 국회 시정요구 후속조치는 사이버범죄검거율 제고방안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민간 고급인력 확보, 정보보호분야 민간업체 등과의 협업, 해외 수사기관과의 수사공조, 사이버범죄 수사기법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등을 적극 추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2020년 사이버범죄 유형별 검거율은 사이버도박(95.5%), 사이버성폭력(84.1%), 사이버사기(73.0%)가 평균 검거율 67.5%보다 높았던 반면, 정보통신망침해형범죄¹⁾(21.0%), 사이버금융범죄(22.8%)의 검거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정보통신망침해형범죄는 2017년 검거율(44.3%) 대비 23.3%p, 사이버금융범죄는 2017년 검거율(43.4%)보다 20.6%p 하락하여 다른 사이버범죄 유형보다 하락폭이 컸다.

[2017년 대비 2020년 사이버범죄 유형별 검거율 증감]

(단위: %, %p)

구 분		2017년 검거율(A)	2020년 검거율(B)	증감(B-A)
합 계		81.6	67.5	△14.1
정보통신망침해형범죄		44.3	21.0	△23.3
정보통신망 이용형 범죄	소계	82.8	67.5	△15.3
	사이버사기	87.2	73.0	△14.2
	사이버금융범죄	43.4	22.8	△20.6
	기타	63.1	56.6	△6.5
불법 콘텐츠 범죄	소계	81.3	73.9	△7.4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73.1	65.2	△7.9
	사이버성폭력	88.0	84.1	△3.9
	사이버도박	99.0	95.5	△3.5
	기타	80.3	66.3	△14.0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경찰청은 지방청 사이버수사과 신설·전담수사 체제 구축 등 조직을 정비하고, 전문인력 채용 및 전문교육을 통해 사이버경찰관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사이버범죄 증가에 대응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거율이 가장 낮은 정보통신망침해형범죄와 사이버금융범죄를 신속·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분야와 사이버금융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 고급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으나, 현재 경찰청이 민간경력자와 석박사급 인력을 대상으로 채용하고 있는 사이버수사 전문인력은 경장 계급으로 임용되어 급여수준이 낮기 때문에 민간의 고급인력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 및 사이버금융분야 고급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1) 해킹, 디도스 등 정보통신망 공격에 의한 범죄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정보보안분야 민간업체 및 금융감독기관과의 협업, 해외 수사기관과의 수사공조, 사이버범죄 수사기법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이버범죄 검거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3) 한국선거방송사업 시정요구 후속조치 내용 부적절(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한국선거방송사업은 공명선거기반조성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한국선거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구입, 방송송출·방송회선 사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선거방송사업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청률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방송 콘텐츠가 부족하며 2019년 감사원 감사에서 중앙선거위의 채널 운영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한국선거방송의 방송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시청률 등 객관적 지표를 설정하고 한국선거방송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한국선거방송 지속 운영 여부에 대해 재검토하도록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성과 측정을 위한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하였으며, 매년 정기적인 평가 실시 및 환류(반영) 예정이고 2021년도 예산안심사 시 한국선거방송 개선방안을 행정안전위원회(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기 보고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고한 ‘객관적인 평가지표 마련 및 정기적인 평가 실시 및 환류, 한국선거방송 개선방안 보고’ 등의 내용은 한국선거방송 지속 운영 여부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국회 시정요구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선거방송 평가지표에는 선거방송의 효과성과 파급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시청률이나 인지도조사 등이 제외되어 있고, 중앙선거관

리위원회가 행정안전위원회(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보고한 ‘한국선거방송 개선 방안’은 한국선거방송 운영의 지속여부를 재검토하라는 국회 및 감사원의 시정 요구 취지와 달리 한국선거방송의 주요 성과 및 활성화 방안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고, TV채널 운영 필요성 및 성과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한국선거방송 개선 방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TV채널 운영 필요성	① 정보 습득의 보편성·신뢰성 제고 ② 정보확산 플랫폼 역할 ③ 전통적 미디어로서의 가치 존재 ④ 기존방송의 한계 및 중립적 방송매체 부족
한국선거방송 주요 성과	① 코로나19 「K-선거 주관」 방송으로서의 역할 수행 ② 「선거+민주시민교육」 전문방송으로서 역할 ③ 새로운 선거제도와 이슈에 신속 대응 ④ 투표참여 및 좋은 정치문화 확산
한국선거방송 활성화 방안	① 「선거+민주시민교육 전문방송」으로 확고한 위상 및 역할 강화 ② 채널 확대와 홍보 강화로 접근성·인지도 제고 ③ 대표 프로그램 집중 개발 ④ 외부협업 시스템 구축으로 자원의 한계 극복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선거방송 활성화(개선) 방안”(2020.12.)

동 개선방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보 습득의 보편성·신뢰성을 제고하고 기존 방송의 한계 및 중립적 방송매체가 부족한 현실 등을 고려하여 한국선거방송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동안 한국선거방송이 「선거+민주시민교육」 전문방송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투표참여 및 좋은 정치문화 확산 등에 기여하였다고 자체 평가하였다.

그러나 한국선거방송 운영의 지속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국선거방송 채널을 통해 송출하는 프로그램이 기존 방송이나 매체에서 접하기 어려워 한국선거방송을 운영하지 않으면 국민의 알권리 향상에 기여할 수 없는지, 그리고 한국선거방송을 통해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한국선거방송 개선방안에 구체화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보고한 ‘객관적인 평가지표 마련 및 정기적인 평가 실시 및 환류, 한국선거방송 개선방안 보고’ 등의 내용은 한국선거방송 지속 운영 여부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국회 시정요구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선거방송의 운영 필요성에 대해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청률 또는 인지도 조사 등을 통해 한국선거방송 운영의 효과성 및 파급력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가. 현 황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은 총 73건으로 시정 27건, 주의 20건, 제도개선 28건이며, 이 중 2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1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가 65건이며, 조치중 8건으로 보고하였다.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은 없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추경을 통해 편성한 사업들의 집행률 저조 문제’ 등 3건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1.4.30.)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문화체육관광부	0	0	16	16	24	(1)	55	47	8
문화재청	0	0	11	4	4	(1)	18	18	0
합계	0	0	27	20	28	(2)	73	65	8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1.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추경으로 지자체 보조사업 추진 시 과도한 이·불용액 최소화 필요(문화체육관광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19년도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사업들의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국회는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시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편성 및 집행, 유사사례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연내 집행을 위해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와 문제점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0년도 제3회 추경을 통해 추진한 지자체 보조사업 중 집행행률이 저조한 사례가 있었는데, 향후 추경으로 지자체 보조사업 추진 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과도한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발생하는 일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 일자리, 할인소비쿠폰, 한국판 뉴딜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이 중 다음과 같이 집행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있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운영 사업은 지역의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장소 등에 벽화, 조각 등 예술작품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0년 제3회 추경에 지자체보조사업으로 758억 6,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다. 동 사업의 2020년도 12월 말 기준 지자체의 실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교부액 757억 6,000만원 중 207억 3,100만원을 집행하고, 550억 2,900만원을 이월하여 실집행률은 27.4%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미술프로젝트는 제3회 추경으로 추진되어 사업주관처에서 작가팀 공모선정, 자문, 작가팀 구성 및 실행계획서 완성, 협약 체결 등 사전 절차를 거친 후 2020년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집행되었으며,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절차상 문제로 사업추진이 지연된 측면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공공도서관 대체서비스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도서관에 비대면 도서대출서비스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0년 제3회 추경에 지자체보조사업으로 25억 6,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의 실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5억 6,500만원의 예산 중 13.6%인 3억 5,000만원을 교부하여 3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의 88.1%인 22억 5,900만원을 불용하여 실집행률은 11.9%를 기록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실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코로나19 관련 지출 증대로 지자체의 재정상황이 열악해졌고, 타부처의 유사한 인력지원 사업(행정안전부의 희망근로 지원사업의 국고보조율 90%)보다 국고보조율이 낮아 지자체의 사업신청

이 저조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민체육센터 친환경 재구조화 사업은 2020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시설로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 제3회 추경에 393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의 실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교부액 365억원 중 집행액은 없고,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다. 이는 2020년도 신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지자체 자본보조사업의 특성상 사업 1차년도에는 사전행정절차 및 설계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실제 건물 착공까지 진행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친환경 재구조화 예산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앞의 세 사업들은 추경으로 증액 또는 신규편성한 지자체 보조사업인데, 지자체의 수요가 예상보다 적거나 사전행정절차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연내 집행률이 저조하고, 과도한 이월액이 발생한 사례이다.

추경사업은 원칙적으로 연내에 집행하는 것을 전제로 편성하는 것이고, 다음연도 본예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시급히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편성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처럼 집행률이 저조하고, 과도한 이월액이 발생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추경으로 지자체 보조사업 추진 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과도한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발생하는 일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2)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사업의 지속적인 사업 개선노력 추진 필요(문화체육관광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은 예술인들에게 융자라는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여 자생적 생활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 지속적인 예술창작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9회계연도 결산에서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경우 월 단위로 신청을 받아 긴급자금이 필요한 때에는 이용이 어려우며, 주택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시기 예측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정된 기간에 입주할 것이 요건으로 되어 있어 이용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회는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의 생활안정자금융자 이용에 어

려움이 없도록 대출시기 상시화·대면창구 확대 등 사업 체계를 개선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융자사업 상시 신청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개선 및 온라인 신청 영상매뉴얼 신규제작을 완료('20.12월)하였으며, 주택자금 운영시기를 연초에 공지('21.1월)하여 예술인들이 예측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기간 중 상시접수로 시행('21.4월~), 생활안정자금은 심사 확대를 위한 체계 개선 후 운영 예정('21.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융자 상담·신청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광역 거점별 대면 창구 확대를 금융기관과 협의를 완료하여 2021년 하반기에는 시범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조치중이라고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와 문제점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2019회계연도 결산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술인들이 동 융자사업을 이용하는 데 불편한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광역 거점별 대면 상담·접수창구를 마련하는 한편, 전세자금 대출의 연간 실시횟수를 늘리고 대출가능 입주기간도 가급적 넓게 설정하는 등 동 사업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20년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융자계약자의 지역별 통계를 살펴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이용자의 비율이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73.7%, 코로나19 특별융자의 경우 73.9%, 전세자금의 경우 87.7%를 차지하고 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의 계약자 중 수도권의 비율이 7~80%로 높은 것은 수도권에 예술인 거주비중이 높은 이유도 있겠지만, 오프라인 상담·접수창구가 서울에만 있는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세자금 대출은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다른 대출상품과 달리 신청서류를 KEB하나은행 해화지점에 직접 방문 접수해야하므로 지방에 거주하는 예술인이 이용하기에는 큰 불편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¹⁾ 실제로 2020년 전세자금 대출 계약자의 수도권 비중은 87.7%로 다른 대출상품에 비해

1)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부터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접수와 상담 기능을 확대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수도권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에서 온라인을 통한 접수·상담 기능을 확대하였고, 광역 거점별 대면 창구 확대를 위해 금융기관과 협의를 완료하여 6곳의 상담·접수창구를 마련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거의 매달 신청·접수를 받아 사업을 실시하는 (소액)생활안정자금 대출과 달리 전세자금 대출은 사업 실시 횟수가 연 1~2회에 불과하고, 2020년 하반기 사업의 경우 입주기간이 9월 21일부터 10월 16일까지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수요가 있는 예술인들이 이 상품을 이용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20년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인원은 194명이었으나, 이 중 실제 계약은 33.5%인 65명에 그쳤고, 계약을 하지 않은 129명 중 122명이 서류를 미제출하여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에는 전세자금 대출 신청 이후 전세계약할 주택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대출가능 입주기간의 제한으로 대출신청을 포기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2019회계연도 결산에서 예술인의 생활안정자금융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업 체계를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대한 일부 조치사항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예술인들이 동 융자사업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의 광역 거점별 대면 상담·접수창구를 확대·마련하는 한편, 전세자금 대출의 연간 실시횟수를 늘리고 대출가능 입주기간도 가급적 넓게 설정하는 등 동 사업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세입 징수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 필요(문화재청)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19회계연도 결산에 있어 세입 및 수입과 관련한 지적사항이 두 건이 있었다. 먼저 문화재청 세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다음으로 문화재보호기금의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액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정산반환금으로 2019년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64.5%가 증가한 21억 1,100만원이며, 수납률은 2016년(82.7%)부터 2019년(76.4%)까지 지속적으로 감소추

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회는 이에 대하여 문화재청은 세입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고, 문화재보호기금의 국고보조금 정산반환금의 수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문화재청은 첫 번째 지적과 관련하여 기타경상이전수입(국고보조금 정산반환금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지자체 납부 독려를 추진하고, 변상금에 대해서는 납부독촉 및 재산추적조사(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한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진행하여 징수율을 제고 노력하겠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두 번째 지적과 관련해서는 정산반환금 3억원 이상 미납 기관을 방문(20.10월)하여 납부계획 및 추경예산확보사항을 확인하였고, 기타 지자체 유선협의 및 공문발송으로 미수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 추진하겠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와 문제점

문화재청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문화재청의 2020회계연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재산수입, 변상금의 징수실적이 전년대비 하락하였는바, 징수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변상금과 관련하여 징수가능성이 거의 없어보이는 미수납채권들은 일제정리하는 등 효율적인 채권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청의 일반회계 2020회계연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재산수입, 변상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먼저, 2020년 기타경상이전수입의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77.7% 증가한 89억 9,900만원으로 나타났고, 수납률은 2019년보다 11%p 하락한 71.5%를 기록하였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의 수납률이 감소한 것은 지자체에 교부하는 국고보조금 증가로 징수결정액이 증가한데 영향이 있고, 지자체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각각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광역지자체가 관할 기초지자체의 정산반환금을 취합하여 문화재청에 납부하게 되는데, 지자체의 추경 편성 시기가 상이하고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지연됨에 따라 수납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타재산수입은 대부분이 국고보조금 예치 이자수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타재산수입의 미수납액은 2019년 7억 5,500만원에서 2020년 13억 6,500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수납률은 2019년 73.4%에서 2020년 61.2%로 12.2%p 하락하였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2020년의 기타재산수입의 미수납액 증가는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액 증가 이유와 같이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문화재청은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고 있는바, 2020년 변상금의 징수결정액은 33억 2,500만원으로 2019년(41억 3,800만원)보다 감소하였으나 수납액이 2019년의 9억 400만원보다 훨씬 감소한 8,100만원에 그치면서 수납률이 2019년 21.8%에서 2020년 2.4%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또한, 변상금 미수납액 중에는 1980~90년대 발생 건들도 있고, 심지어는 1979년 발생한 건도 미수납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는바, 1979~1999년까지 발생한 변상금 미수납액은 총 214건 2억 4,355만원 정도 규모이다. 이러한 미수납채권들은 대부분 거소파악이 어렵거나 재력부족 사유로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변상금 미납이 장기화되어 미수납액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문화재청은 과거 미수납채권들의 징수가능성을 검토하여 불납결손하는 등 채권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2019회계연도 결산에서 세입 징수실적 제고 및 국고보조금 정산반환금 수납률을 제고하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2020년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재산수입, 변상금의 수납률이 2019년보다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문화재청은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재산수입, 변상금 등 세입의 징수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변상금 미수납채권 중에는 1979~1980년대 발생한 건들도 있는바, 징수가능성이 거의 없어보이는 미수납채권들은 일제정리하는 등 효율적인 채권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 현 황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은 총 102건으로 징계 1건, 시정 9건, 주의 37건, 제도개선 64건이며, 이 중 9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1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가 91건이며, 조치중 11건으로 보고하였다.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은 없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관리 강화 필요’ 등 5건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1.4.30.)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농림축산식품부	0	0	1	13	27	(7)	34	34	0
농촌진흥청	0	0	2	2	5	(0)	9	9	0
산림청	0	1	2	2	4	(1)	8	7	1
해양수산부	0	0	4	16	19	(0)	39	29	10
해양경찰청	0	0	0	4	9	(1)	12	12	0
합계	0	1	9	37	64	(9)	102	91	11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1.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관리 강화 필요(해양수산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19회계연도 결산에 있어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의 집행이 연례적으로 부진하게 나타났고, 사업주체의 실집행액이 아닌 보조금 교부액과 자부담을 합한

예산액을 성과달성도의 근거로 사용함으로써 성과달성도를 과다하게 측정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의 추가적인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지연 요인을 파악하여 해소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부산시와 5개 수협간의 합의가 지연됨에 따라 집행이 부진하였으나, 지난 2020년 4월 공영화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청산계약 체결 진행 중이라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해양수산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는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이 사업추진 사전절차 지연 등으로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9년 6월 부산시가 조공법인 5개에 청산금을 지불하고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공동어시장 공영화 및 현대화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2020년 4월 조공법인 총회에서 의결되었다. 그러나 이후 현대화 사업 추진에 앞서 부산시의 조공법인 청산비 지급방식 및 기간을 두고, 부산시와 5개 조공법인 간의 이견¹⁾이 있어 협의를 진행하다가 5개 조공법인 측에서 기존의 업무협약 내용과 달리 공영화 방식이 아닌 조공법인 주도로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2021년 4월 부산시에 공문을 제출하였다.

1) 부산시는 청산후 1년내 청산금의 50% 지급을, 5개 조공법인측은 청산금의 50% 즉시 지급을 주장하였다.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 주요 추진 경과]

연도	추진경과
2014	예비타당성조사 완료(2014.11)
2015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수립(2015.12)
2016	총사업비 조정 완료(2016.10. 결정)
2017	기본·실시설계 용역 공모(‘17.4~8.), 설계용역 착수(‘17.9.)
2018	중간설계 결과 약 1,170억원 초과 설계로 기본·실시설계 용역 중단
2019	부산시 부산공동어시장 공영화 추진계획 발표(‘18.12.)로 사업 전면 재검토 부산시와 조공법인간 “공동어시장 공영화 및 현대화 사업 업무협약”(‘19.6)
2020	공영화 및 현대화사업 부산시 주도 추진 합의(‘20.4, 조공법인 총회 의결) 후 조공법인 청산절차 논의
2021	공영화 방식이 아닌 조공법인 주도로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조공법인 의견 제출 (21.4)

자료: 해양수산부

이와 같이 사업 추진에 앞선 협의 및 관련 절차가 장기화됨에 따라 2020년에는 사업추진이 불투명하여 국고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되지 않았다. 또한, 사업기간은 당초 신규 예산 편성 당시 2018년 완공 예정에서 2020년, 2022년까지로 지속적으로 연장·변경되었으며, 사실상 2022년 내에도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부산시와 부산공동어시장 측 조공법인 간 사업추진에 대한 협의가 다시 진행되어 2021년 8월 중 사업 추진방식 확정 및 2021년 하반기 중 사업추진이 재계될 예정인데, 해양수산부는 더 이상의 지연 없이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

(2) 친환경어구 보급사업 관리 강화 필요(해양수산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친환경어구 보급 사업은 폐어구·폐어망 등으로 인한 어장환경 오염방지 및 수산피해 저감을 위하여 생분해성어구 및 친환경부표 등 친환경 어구를 보급하고 연안지역 방치 폐각물 등을 자원화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2019년 내역사업인 생분해성 어구 보급 사업은 생분해성 어구를 보급하기 위하여 정부는 52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였으나 실집행액은 29억 5,800

만원으로 교부현액 59억 7,300만원(전년도 이월액 7억 7,300만원 포함)의 49.5%밖에 되지 않았고 매년 연례적으로 부진한 실집행률을 보였다.

그리고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굴껍데기 자원화시설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2019년 실시설계비 5억원이 편성되어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었으나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 전액이 이월되었고, 내역사업인 김중자용 폐각 국산화 사업은 사업자가 당초 입주를 계획했던 장흥바이오식품산업 단지 내에 입주가 불가능한 업종에 해당하여 사업자가 포기함에 따라 교부된 예산 5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다.

이에 대하여 국회는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의 사업비가 적기에 집행되어 대규모 이월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생분해성 어구 보급 예산 감액 및 어구 구입비용 자부담 경감 등을 추진하고, 굴껍데기 자원화시설 구축 사업 및 김중자용 폐각 국산화 사업은 사업비가 적기에 집행되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국회에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와 문제점

해양수산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생분해성어구 보급 사업은 2020년 보조금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지속적으로 부진하게 나타났고, 굴껍데기 자원화시설 구축 사업 및 김중자용 폐각 국산화 사업은 사업계획 미비 등으로 2020년 편성·교부된 보조금 예산 전액이 실집행되지 않는 등 집행부진이 발생하였다.

2020년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은 예산현액 77억 1,500만원 중 44억 4,900만원이 교부되었고, 이 중 31억 1,000만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집행되어 실집행률은 40.3%로 나타났다. 동사업의 최근 5년간 동 사업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이 연도별로 71.5%, 61.4%, 60.4%, 49.5%, 36.9%로 연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연도별 생분해성어구 보급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부처	지방자치단체						
	예산현액 (A)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실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16	4,605	4,605	-	4,605	3,293	549	763	71.5
2017	4,605	4,605	549	5,154	3,167	585	1,402	61.4
2018	5,200	5,200	585	5,785	3,497	773	1,515	60.4
2019	5,200	5,200	773	5,973	2,958	546	1,863	49.5
2020	7,715	4,449	546	4,995	2,849	309	1,822	36.9

자료: 해양수산부

특히 2020년에는 보조금이 기존 (생분해성어구 조달가격-나일론어구 기준단가)+나일론 어구 가격의 10~20%에서 (생분해성어구 조달가격-나일론어구 기준단가)+나일론 어구 가격의 4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집행률이 개선되지 못하였다.

굴껍데기 자원화 시설 구축 사업과 김종자용 폐각 국산화 사업도 2020년 실집행실적이 없었다. 이 중 김종자용 폐각국산화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교부하지 않고 전액 불용 처리하였고, 굴껍데기 자원화시설 구축 사업은 예산이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었으나 전혀 실집행되지 않고 전액 이월되었다.

내역사업별로 살펴보면 굴껍데기 자원화시설 구축 사업의 경우 당초 2019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2020년에 착공을 진행하여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려 하였으나, 사업의 타당성 및 경제성분석 조사용역 결과 매년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른 지방비 미확보 문제로, 2021년 4월에 부지취득 협의계약이 완료되었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 현재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지 못한 상황으로, 2019년과 2020년 교부된 예산 전액은 2021년으로 이월되었고 사업 추진은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되었다.

다음으로 김종자용 폐각국산화 사업은 폐각이 분류상 폐기물에 해당하는데, 당초 김종자용 폐각국산화 시설 입주를 계획하였던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내에 입주가 불가

2) 용역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탈황원료를 생산하는 경우 연간 35억 9,000만원 운영비 적자 발생이 예상되었다. 그 밖에 여러 사안 중에서 토목·건축자재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경제성은 높으나 수요처 불확실성이 제기되었으며, 혼합형 방식으로 생산(탈황, 소석회, 건축자재)하는 경우에는 연간 운영비 21억 9,000만원 적자 발생이 예상되었다.

능한 업종에 해당하여 대체 부지를 물색했으나, 대체 부지 지역 시·군 환경 부서 등의 반대³⁾로 부지 선정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여 2020년 예산을 전액 불용하고 사업 추진을 포기하였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생분해성 어구사업의 실집행 부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생분해성어구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사업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적정 예산규모를 반영함으로써 보조금의 과다한 이월 또는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굴껍데기 자원화 시설 구축 사업과 김종자용 폐각 국산화 사업의 경우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그 적정성에 대한 엄밀한 검토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했으나, 이와 같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해양수산부는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한 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손실보상금 사업의 적정예산 편성 미흡(농촌진흥청)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의 내역사업인 손실보상금 사업은 과수화상병 등 농작물병해충에 대한 국가의 공적방제로 인한 손실을 받은 농가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국회는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있어서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 2019년 18개 사업에서 21.7억원 등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28.7억원을 농진청 자체사업으로 이·전용으로 충당하고 있어 예산 과소 편성 및 농가지급 지연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병해충 발생 예측 고도화방안을 마련하고, 적정수준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손실보상금 농가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은 2020년 손실보상금의 경우 기정예산 등 178억 7,900만원과 예비비 620억 9,1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농가에 지급 완료하였고, 사전방제를 통해 발생농가 및 손실보상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2021년 예산에서 사전 약제방제비를 18억원 추가 증액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3) 폐기물 처리업 허가는 지방자치단체 권한 사항이다.

(나) 조치결과와 문제점

농촌진흥청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2020년의 경우에도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마련을 위하여 이·전용 및 예비비를 통하여 대부분의 재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개선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비파·모과 등 장미과(科) 39속(屬) 180여 종(種) 식물의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되어 조직이 검게 말라 피해를 주는 병으로, 「식물방역법」 상 금지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식물방역법」 따라 국가는 과수화상병 등 위험병해충에 대해 방제를 해야 하고, 방제로 손실을 받은 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2016년부터 피해 피해농가와 면적이 넓게 발생하고 있으며, 2020년의 경우 2019년에 비하여 방제면적이 131.5ha에서 395.1ha로 약 3배 가량 증가하였다.

[과수화상병 발생 및 방제현황(2015~2020년)]

(단위: 호, ha)

구분	방 제(A+B)		발 생(A)		인 근(B)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합계	1,225	718.1	1,092	654.8	133	63.3
2015	68	59.9	43	42.9	25	17.0
2016	32	19.7	17	15.1	15	4.6
2017	55	31.73	33	22.7	22	9.03
2018	135	80.2	67	48.2	68	32.0
2019	188	131.5	188	131.5	-	-
2020	747	395.1	744	394.4	3	0.7

자료: 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의 발생·방제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재정소요 추이는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손실보상금 지출액은 797억 400만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9년에 342억 3,700만원에 비하여 132.8% 증가하였다.

[2012년 이후 손실보상금 재정소요 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예산액	600	1,320	4,200	2,500	2,502	9,588	9,588	9,588
집행액	1,459	9,234	3,674	5,968	22,174	34,237	79,704	-

자료: 농촌진흥청

반면, 손실보상금 예산편성액은 2018년 25억 200만원에서 2019년 95억 8,800만원으로 증액된 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손실보상금 집행액에 비하여 크게 낮은 수치다. 이에 따라 2019년에는 18개 사업에서 이·전용을 통해 21억 7,200만원, 예비비를 통해 224억 7,700만원을 충당하였고, 2020년에는 16개 사업에서 이·전용을 통해 82억 9,100만원, 예비비를 통해 620억 9,100만원을 충당하였다.

농촌진흥청은 손실보상금 예산확보를 위해 정부안 증액편성을 요구하였으나 기획재정부와 협의 결과 과수화상병 발생의 정확한 예측이 어려우므로 부족한 재원을 예비비를 활용하여 집행하기로 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부족한 손실보상금을 이·전용을 통해 충당하는 사례가 반복될 경우 농가지급 지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촌진흥청은 조치결과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국립휴양림관리소의 사업비 이월방지 및 경영개선책 제고노력 필요(산림청)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립자연휴양림 운영 및 조성 사업은 국민의 정서함양과 산림교육 및 산림가치 확대를 위한 산림복지공간 확충의 필요성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을 운영·조성하는 사업이다.

국회는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있어서 휴양림 조성사업의 경우 최근 3년간 이월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 연도별 사업추진계획에 맞는 당해 연도 예산편성이 필요하며, 국립자연휴양림 운영에 따라 최근 5년간 38억~56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사업 수익이 매우 저조하므로 현실적인 경영개선대책 추진으로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어 산림청은 향후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에 이월이 예견되는 경우 국가재정법이 규정한 취지와 절차에 맞게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산림청은 2021년 예산 반영된 신규 휴양림 조성에 대해 설계 및 협의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2년차 사업내역 및 예산 규모 등을 줄이고, 3년차 사업 예산 확대 등 현실성 있는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국립자연휴양림 효율적인 운영 모델 개발」 등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수지 개선 성과를 제고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와 문제점

산림청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 달성을 위하여 추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2020년의 경우에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서 이월이 발생하였고, 사업수익 또한 적자규모가 커졌다는 점에서, 시정요구사항의 취지 달성을 위해 지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국립휴양림관리소와 관련한 시정요구 사항은 두 가지로 ① 휴양림조성사업과 관련한 연례적인 이월발생과 관련된 문제와 ② 사업수익과 관련된 성과제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이 중 ①과 관련하여, 2020년의 경우 이월액은 8억 5,000만원으로 과거년도에 비하여 축소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이나, 이는 2020년 제3회 추경을 통해 이월이 예상되는 공사비 46억원을 감액함에 따라 축소된 것으로 보이며, 2021년, 2022년의 집행실적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국립자연휴양림조성 사업 최근 3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17	30,740	30,740	-	-	30,740	27,752	2,387	602
2018	25,795	25,795	2,387	583	28,765	27,344	1,009	412
2019	41,985	41,985	1,009	62	43,056	32,265	10,354	437
2020	44,244	39,644	10,354	-	49,998	48,217	850	930

자료: 산림청

다음 ②와 관련하여, 국립자연휴양림 가동률 및 경영수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0년의 경우 수입금이 대폭 감소하여 2019년 대비 적자규모가 약 87억원(△

183.5%) 증가한 △135억원 규모의 경영수지 적자가 발생하였다. 산림청에 따르면 경영수지 악화는 COVID-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운영 등으로 이용객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수지 개선성과가 가시화되기에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정요구 사항 취지 달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립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경영수지 현황]

(단위: 개소, %, 천원)

연도별	운영 개소	가동률	수입금 (A)	지출금(B)			수익 (A-B)
				소계	인건비	운영비	
2013	37	73	11,755,852	16,408,075	8,564,396	7,843,679	-4,652,223
2014	37	69	12,573,709	17,884,471	9,286,600	8,597,871	-5,310,762
2015	39	69	13,481,816	19,088,662	9,876,887	9,211,775	-5,606,846
2016	39	71	15,142,097	19,334,587	10,518,530	8,816,057	-4,192,490
2017	40	68	16,832,581	20,897,408	11,230,700	9,666,708	-4,064,828
2018	42	68	17,423,058	21,304,154	11,557,774	9,746,380	-3,881,096
2019	42	64	17,422,253	22,194,396	12,016,295	10,178,101	-4,772,143
2020	42	67	9,129,074	22,657,528	12,658,589	9,998,939	-13,528,453

주: 가동률 = (실 운영 객실수/운영가능 객실수)×100

자료: 산림청

(5)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 사업 사업관리 철저 필요(해양경찰청)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 사업은 전라남도 목포시 신항 일대에 1,000톤급 이상의 대형함정을 수용할 수 있는 정비창을 신설하려는 사업으로, 2019년에 신규 편성되었다. 2019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액 28억 1,800만원 중 8억 9,900만원이 집행되고 13억 2,300만원이 이월, 5억 9,6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실적이 저조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는 해양경찰청 서부정비창 신설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함으로써 정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은 2020년도로 이월된 기본설계비는 2020년 9월 기본설계 용역 준공으로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 등 관계 기관 인·허가를 위한 법정 조사용역을 선(先) 발주하였고, 국토교통부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통과하여 설계·시공 일괄발주를 추진하고 있

는 등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와 문제점

해양경찰청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 사업은 2020년에도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2020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본예산 81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3억 2,300만원과 추경을 통한 감액 40억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54억 9,200만원이며, 이 중 36억 900만원(65.7%)이 집행되고 9억 5,800만원이 이월, 9억 2,5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나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집행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2020년 해양경찰서부정비창 신설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19	2,818	2,818	0	0	2,818	899	1,323	596
2020	8,169	4,169	1,323	0	5,492	3,609	958	925

주: 2020년 추경은 제4회 추경 기준

자료: 해양경찰청

동 사업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2019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후 연말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20년 9월 완료하였고, 2020년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 등 건설 인·허가 등 관련 용역을 하반기 또는 2021년 초에 계약체결함에 따라 매년 용역기한의 미도래로 기본조사설계비의 이월이 발생하였다.

또한, 2020년 9월 기본설계 완료 이후 KDI의 설계적정성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증액 협의를 추진함에 따라 2020년에 편성된 실시설계비는 전액 불용되었으며, 2021년 6월에야 총사업비 조정이 완료되었다.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 사업 추진경과]

구 분	주요내용
‘19.8.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19.12.~‘20.9.	·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 사업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20.4.~‘21.1.	· 서부정비창 신설사업 해상교통안전진단 용역
‘20.4.~‘20.7.	· 서부정비창 신설사업 문화재지표조사 용역
‘20.5.~‘20.12.	· 서부정비창 신설사업 기본설계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경제성
‘20.10.~	· 서부정비창 신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
‘20.11.~‘21.5.	· 서부정비창 신설사업 재해영향평가 용역
‘20.11.~‘21.5.	· 서부정비창 신설사업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 용역
‘21.1.~	· 서부정비창 스마트기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념설계 용역
‘20.10.~‘21.6.	· 설계적정성 검토(~‘21.3.),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증액협의(~‘21.6.)

자료: 해양경찰청

당초 해양경찰청은 2021년 6월 실시설계·시공 통합발주(TURN-KEY)를 공고한 후 10월 착공을 계획하였는데, 7월 21일에 이르러 입찰공고가 이루어진 상황이고 발주 이후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실시, 기술제안서 심의·평가, 실시설계 적격자의 결정 등의 절차를 아울러 고려하면 공사의 착공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2021년에도 132억 4,900만원⁴⁾의 본예산의 원활한 집행이 어려울 소지가 있으며, 이는 전체 사업추진의 지연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를 고려하여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 사업의 집행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단계별 사업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추가적인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4) 실시설계비 40억원, 공사비 88억 500만원, 감리비 4억 400만원, 시설부대비 4,000만원

13.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가. 현 황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은 총 119건으로 시정 14건, 주의 20건, 제도개선 97건이며, 이 중 12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1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가 114건이며, 조치중 5건으로 보고하였다.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은 총 2건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21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 2건으로 보고하였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보험기금출연 사업’ 등 4건이다.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1.4.30.)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산업통상자원부	0	0	2	15	38	(9)	46	45	1
특허청	0	0	2	0	7	(1)	8	8	0
중소벤처기업부	0	0	10	5	52	(2)	65	61	4
합계	0	0	14	20	97	(12)	119	114	5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1.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부대의견	조치현황	
		조치완료	조치중
산업통상자원부	2	2	0
합계	2	2	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1.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무역보험기금출연 사업의 공급실적 개선 및 적정 운용배수 설정 필요 등(산업통상자원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무역보험기금출연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지원 확대를 위하여 출연하는 사업이다. 2019회계연도 결산에서는 예산현액 1,350억원이 전액 집행되었다.

무역보험기금은 2019년에 추경예산으로 반영한 6개 지원사업의 인수 실적에서 해외수입자보증의 경우 목표 대비 58%를 달성하는데 그쳤고, 매출채권현금화 보증 및 중소조선전용 선수금환급보증은 인수실적이 없었다. 국회는 무역보험기금출연 사업을 통한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출연금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험공급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 사업 수요 및 유사 사고율 등의 추계를 보다 면밀히 하도록 하고, 지원 목표를 한도로 동 사업을 운용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무역금융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대상 수요 조사를 2020년 3월에 실시하였고, 최근 5년간 유사사고율 및 위험도·시장상황 분석 등을 통해 적정 운용배수를 설정하는 등 사업계획 정확도를 제고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무역보험기금출연’ 사업은 중소기업 수출신용보증지원 사업 등 일부 무역보험지원 사업에서 공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당초 예상보다 낮은 사고율로 무역보험 지원에 필요한 적정 기금총액을 초과하는 출연금이 지원되었으므로 무역보험 공급목표 달성에 필요한 적정 출연금이 지원되도록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무역보험기금출연 사업의 2020년 본예산은 2,960억원이나, 제1회 추경예산에서 수출 중소기업의 유동성 공급을 위하여 500억원이 증액되었고, 제3회 추경예산에서 해외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지원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2,271억원을 증액하였다.

무역보험은 2020년 추경예산의 무역보험기금출연금을 재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수출신용보증지원 사업에서는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으로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 중목을 신설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6,000억원의 유동성 추가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제3회 추경예산으로 수출신용보증(선적전)의 공급목표를 당초 1조 7,500억원에서 2조 3,800억원으로 상향하였다. 이를 통해 무역보험기금의 중소기업수출신용보증지원 사업은 2020년 공급목표액을 당초 3조 4,100억원에서 4조 6,400억원으로 증가시켰으나, 실적은 3조 3,532억원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중소기업수출신용보증지원 사업의 연도별 지원 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보험종목	2018	2019	2020		
				당초목표	수정목표	실적
중소기업 수출신용 보증지원	수출신용보증(선적전)	1,766,057	1,680,840	1,750,000	2,380,000	1,872,131
	수출신용보증(선적후)	929,439	697,568	1,660,000	1,660,000	643,413
	수출채권조기현금화보증	0	546,900	0	600,000	837,700
	소계	2,695,496	2,925,308	3,410,000	4,640,000	3,353,244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무역보험기금은 2020년 본예산에서는 무역보험의 사고율을 1.7%로 가정하였고, 추경예산에는 2.1%로 가정하여 일반회계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무역보험기금의 평균 사고율은 0.69%로 당초 예상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무역보험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무역보험기금 총액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하며 기금총액 대비 유효계약액으로 측정되는 기금운용배수가 2019년 37.7배에서 2020년 29.9배로 낮아졌다.

무역보험기금은 보험 사업의 특성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 이후 보험사고에 의한 보험금 지급이 후행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무역보험지원에 필요한 적정 규모 이상의 출연금이 지원되는 것은 국가 전체적인 재정운용 측면에서 비효율을 초래한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무역보험 종목별 사고율과 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여 무역보험기금에 적정 출연금이 지원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무역보험 공급 사업별 보험공급 현황]

(단위: %)

사업명	보험종목	2018 사고율		2019 사고율		2020 사고율	
		예상	실제	예상	실제	예상	실제
단기무역 거래지원	단기수출보험	0.16	0.20	0.15	0.10	0.17	0.1
	부품소재신뢰성보험	0.02	0.0	2.15	0.0	2.06	-
	수입보험	0.95	0.1	0.89	0.20	0.95	1.5
중장기 산업설비 수출 거래 지원	중장기수출보험	0.72	0.1	1.54	0.30	1.55	0.1
	해외공사보험	0.72	0.0	-	-	0.15	-
	해외투자보험	0.13	0.6	0.11	0.0	0.11	0.0
	수출보증보험	11.72	382.5	10.70	428.1	6.25	4.9
	해외사업금융보험	0.13	0.0	0.12	0.0	0.15	0.0
	서비스종합보험		0.0	1.73	0.0	1.73	0.0
	수출기반보험		2.0		0.0	3.21	-
중소기업 수출신용 보증지원	수출신용보증(선적전)	9.88	5.90	6.81	4.5	7.94	3.3
	수출신용보증(선적후)	1.09	1.1	3.19	0.0	1.27	0.1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 수소생산기지구축 사업의 실집행 실적 개선 필요(산업통상자원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수소생산기지구축 사업은 수소버스 기반 대중교통망 조성을 위해 버스차고지 내에 도시가스 배관망을 이용한 수소 생산·공급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9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150억원이 전액 집행되었다.

2019년에는 지역별 3개 생산기지를 구축할 계획이었는데, 생산기지별 생산기지 구축비 실집행액이 2020년 5월말 기준으로 1.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국회는 실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생산기지별 설비구축 진행률에 따라 대금을 지불하는 계약 구조로 인하여 구축 완료 시 대금이 완불되며, 사업 특성상 상당 기간에 걸쳐 구축이 진행되어 예산 조기 집행에 애로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수시 추진점검 회의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진행을 노력하였으며, 현재 사업 수행기관의 예산 집행이 53%로 2021년 중 완공시 지불할 잔금을 제외한 대부분을 집행 완료하

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그리고 조치사항에는 사업 수행기관 선정절차를 개선하여 주민수용성 제고노력 및 부지확보 등을 반영한 평가지표 개선과 지원대상 선정과정에서 기초지자체 협조확인서 제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나) 조치결과와 문제점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수소생산기지구축’ 사업은 소규모 수소생산기지의 구축이 수소생산기지별 다양한 사유로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소생산기지구축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수소생산기지구축 사업은 2020년에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 확대 및 중대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을 위하여 299억 4,000만원의 예산현액 중 298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다.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의 2020년 예산현액은 250억원이며, 이 중 2020년 12월까지 실집행액은 31억 500만원(12.4%)으로 파악된다.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의 경우 대전·부산·춘천·인천·완주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이 중 대전, 춘천, 완주 지역의 경우 실집행률이 거의 전무하다.

[2020년 소규모 수소생산기지구축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

사업명	지역	사업지 실집행률	실집행 저조 사유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	대전	0	사업부지에 예상하지 못한 규제 확인, 2021년 5월 중 추출기 발주 및 2021년 6월 중 업체 선정 예정
	춘천	0	사업부지 변경 검토로 인한 사업 지연, 현재 사업부지 확정하였으며 추출기 발주 진행 중
	완주	1	추출기 발주 및 선급 지급 완료, 설비구축 진행률에 따라 대금지급 계약구조로 추후 구축 완료시 대금 완불예정
	부산	0.05	추출기 발주 및 선급 지급 완료, 설비구축 진행률에 따라 대금지급 계약구조로 추후 구축 완료시 대금 완불예정
	인천	0	추출기 발주 및 선급 지급 완료, 설비구축 진행률에 따라 대금지급 계약구조로 추후 구축 완료시 대금 완불예정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년 8월말 기준)

수소생산기지구축 사업은 2019회계연도 시정요구에 대응하여 지원대상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을 개선하였다. 그러나 2020년에는 사업부지 확보 이후에 예상하지 못한 규제 등으로 인한 개질기¹⁾ 발주 지연이나 사업부지 변경 등으로 소규모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의 실집행이 지연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2019회계연도 시정요구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치사항인 사업 수행기관 선정 과정에서의 주민수용성 제고, 지자체와의 협조확인서 제출, 부지 확보 등을 통해 수소생산기지구축 사업의 실집행 지연이 충분히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생산기지구축 사업의 2020년 실집행 과정에 나타난 개질기 발주 지연 사유, 사업부지 확보 후 부지변경 사유 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3)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 필요(중소벤처기업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은 유통·소비의 디지털화라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개척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성장지원의 내역사업이다. 2019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계획현액 89억 8,0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다.

그런데 중소기업부에서 구축·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전용 온라인 쇼핑몰인 ‘가치샵시드’ 플랫폼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국회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판로지원 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민간 온라인마켓 입점지원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소기업부는 소상공인 상품에 따라 교육·컨설팅 등 역량강화 및 상품성 개선 사업, 민간채널별 입점지원 사업 등 기존 사업간 연계를 통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1) 개질기는 도시가스, 천연가스 등으로부터 수소를 추출하는 장치이다.

(나) 조치결과와 문제점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소상공인 전용 온라인 판매 플랫폼(가치샵시다)’ 사업은 소상공인 입점업체수 및 매출액 성과가 저조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의 실효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0회계연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의 계획현액은 529억 3,600만원이며, 전액 집행되었다. 중소기업부는 동 사업의 일환으로 세부적으로 2019년 12월부터 소상공인 전용 온라인 쇼핑몰인 ‘가치샵시다’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가치샵시다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수가 적어 소상공인의 참여가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입점업체의 매출액 증대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의 실효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우선, 2021년 3월 말 기준 가치샵시다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수는 1,593개로 나타나고 있다. 2020년에 온라인 채널별 입점지원 사업을 통해 민간시장인 TV홈쇼핑·T커머스, V커머스, 온라인쇼핑몰, 해외쇼핑몰 입점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 업체가 11,429개²⁾인 것에 비하여 참여가 저조한 측면이 있다.

다음으로, 가치샵시다 플랫폼의 월별 매출액 현황을 살펴보면, 매출액 증감이 반복되면서 월별로 매출액과 전월대비 증감률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2020년 6~7월, 11~12월 매출액이 일시적으로 반등하였고 2020년 12월에는 4억 340만원의 최고 매출액을 달성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1억 560만원, 6,430만원, 3,230만원으로 감소하여 플랫폼 운영기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증가추이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월평균 입점업체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살펴보면, 월매출액이 가장 많았던 2020년 12월의 경우에도 업체 월평균 매출액은 28만원으로 나타나 가치샵시다 플랫폼 입점에 따른 수익창출 효과가 낮은 상황이다.

2) 2020년 온라인 채널별 입점지원 사업 신청 현황(중소벤처기업부)

- TV홈쇼핑·T커머스 1,126개, V커머스 3,309개, 온라인쇼핑몰 6,207개, 해외몰 787개

[월별 가치샵시다 플랫폼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19.12	'20.1	'20.2	'20.3	'20.4	'20.5	'20.6	'20.7
매출액	9.3	2.2	1.8	58.4	97.5	46.4	131.6	174.6
매출액 증감률 ¹⁾	-	△76.3	△18.2	3,144.4	67.0	△52.4	183.6	32.7
업체 평균 ²⁾	0.07	0.02	0.01	0.20	0.27	0.11	0.18	0.20
구 분	'20.8	'20.9	'20.10	'20.11	'20.12	'21.1	'21.2	'21.3
매출액	23	64.4	60.9	161.9	403.4	105.6	64.3	32.3
증감률	△86.8	180.0	△5.4	165.8	149.2	△73.8	△39.1	△49.8
업체 평균	0.02	0.06	0.05	0.12	0.28	0.07	0.04	0.02

주: 1) 매출액의 전월대비 증감률

2) 매출액을 입점업체수로 나눈 금액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치샵시다 플랫폼은 소상공인 입점 업체수 및 매출액 성과가 저조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의 실효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집행관리 강화 필요(중소벤처기업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비수도권에 임대전용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중소기업에 사업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창업인프라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2019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실집행률이 54.5%에 불과하고, 2019년 최초 사업을 실시하는 제6차 지식산업센터의 건립대상지역 중 4 곳은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회는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의 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연례적 이월을 최소화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예산 배정 방법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며, 2021년도 예산안 심의 시에 국회에서 사전 부지 확보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와 문제점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은 2020년에도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실집행률이 52.7%로 나타나는 등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하고 보조금 집행관리가 미흡하여 예산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20년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교부현액 793억 1,700만원 중 417억 9,000만원이 집행되고 375억 2,700만원이 이월되어 실집행률이 52.7%에 불과하였으며,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실집행률이 각각 27.4%, 27.4%, 42.2%, 60.8%로 나타나 집행부진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도별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부처	지방자치단체						
	예산현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16	19,612	19,612	2,000	21,612	5,918	15,694	0	27.4
2017	27,335	27,335	15,694	43,029	11,789	31,240	0	27.4
2018	28,917	28,917	31,240	60,157	25,403	34,736	0	42.2
2019	40,056	33,397	34,736	68,133	41,428	26,705	0	60.8
2020	53,612	52,612	26,705	79,317	41,790	37,527	0	52.7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구체적으로 2020년에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조금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2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보조금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가 14곳에 달하며, 이 중 실집행률이 0%인 지방자치단체가 8곳에 이르고 있다.

이로 볼 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점검,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보조금 집행관리가 미흡하였다.

특히, 2017회계연도부터 2019회계연도까지 동 사업은 매년 국회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진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2020년에 오히려 실집행률이 감소하여 아직까지 보조금 사업관리체계가 제대로 개선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

이에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은 연례적으로 보조금의 실집행이 부진하고 보조금 집행관리가 미흡하여 장기간 사업비가 사장되는 등 예산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보조금 실집행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020년도 창업인프라 지원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차수	지자체 (센터명)	보조금 교부일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	대구(수성)	-	0	649	649	649	0	0	100.0
3	대구(달서)	20.3.6	406	7,543	7,949	6,543	1,406	0	82.3
4	전주(덕진)	-	0	3,147	3,147	3,147	0	0	100.0
4	경북(포항)	20.2.26 20.3.11	5,150	5,102	10,252	4,180	6,072	0	40.8
4	울산(남구)	20.1.29 20.2.26	5,250	0	5,250	5,250	0	0	100.0
4	전주(완산)	20.12.7	2,530	5,289	7,819	5,262	2,557	0	67.3
5	부산(남구)	20.7.2 20.12.7	7,500	427	7,927	2,210	5,717	0	27.9
5	충남(천안)	20.7.2 20.8.25 20.12.7	6,698	401	7,099	1,160	5,939	0	16.3
5	전남(고흥)	20.5.27 20.7.2	5,301	837	6,138	5,301	837	0	86.4
5	강원(원주)	20.1.29	4,340	0	4,340	4,340	0	0	100.0
6	전남(나주)	20.7.2	1,500	400	1,900	400	1,500	0	21.1
6	전남(영광)	20.7.2	1,500	1,000	2,500	527	1,973	0	21.1
6	울산(중구)	20.12.7	1,500	1,000	2,500	321	2,179	0	12.8
6	창원(진해)	20.12.7	1,937	563	2,500	0	2,500	0	0.0
6	전북(남원)	20.7.2	1,500	0	1,500	1,500	0	0	100.0
6	강원(춘천)	20.7.2	1,500	347	1,847	0	1,847	0	0.0
7	부산(강서구)	-	0	0	0	0	0	0	0.0
7	대구(북구)	20.12.7	1,000	0	1,000	0	1,000	0	0.0
7	광주(북구)	20.12.7	1,000	0	1,000	0	1,000	0	0.0
7	전남(광양)	20.12.7	1,000	0	1,000	0	1,000	0	0.0
7	전주(덕진구)	20.12.7	1,000	0	1,000	0	1,000	0	0.0
7	충남(홍성)	20.12.7	1,000	0	1,000	1,000	0	0	100.0
7	충북(제천)	20.12.7	1,000	0	1,000	0	1,000	0	0.0
합 계			52,612	26,705	79,317	41,790	37,527	0	52.7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14. 보건복지위원회

가. 현 황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은 총 114건으로 시정 4건, 주의 24건, 제도개선 88건이며, 이 중 2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1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가 98건이며, 조치중 16건으로 보고하였다.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은 없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어린이집확충사업의 유형별 목표치 대비 실제 실적 저조 문제’ 등 2건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1.4.30.)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보건복지부	0	0	3	20	76	(2)	97	81	16
식품의약품안전처	0	0	1	4	12	0	17	17	0
합계	0	0	4	24	88	(2)	114	98	16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1.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어린이집확충사업의 유형별 목표치 대비 실제 실적 저조 문제(보건복지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2019회계연도 결산에 있어 어린이집 확충사업의 실적을 살펴보면, 당초 목표치 450개소 보다 204개가 많은 654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였음에도 예산추계의 부정확성으로 예산액 688억 4,000만원 중 72억 9,000만원(10.6%)이 불용되었으며, 개별 지원단가가 낮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방식은 추계 대비 2배 이상인 504개소를 지원한 반면, 신축방식은 추계한 102개소의 75%인 77개소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설치 유형별 실적 차이가 발생하였다.

[2019년도 어린이집 확충 사업 지원형태별 추계 및 실제 지원 개소 수]

(단위: 개소)

	국공립 신축 (A)	공동주택 리모델링 (B)	국공립 장기임차 (C)	소계 (A+B+C)	장애아 전문 신축 (D)	기자재비 (E)	총계 (A~E합)
추계	102	225	123	450	2	452	904
실제 지원	77	504	73	654	2	640	1,296

자료: 보건복지부

2019년 시군구별로 집행된 어린이집 확충예산 611억 7,000만원 중 40%인 238억 2,900만원만 실집행되는 등 지방자치단체별 실집행액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회는 어린이집 확충사업의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수요를 명확히 파악하여 예산 집행의 정확성을 높이고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하여 실집행률을 제고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설치 유형 중 확충 기간이 짧고(3~6개월) 연내 집행이 가능한 민간매입, 공동주택 리모델링, 장기임차 등 확충 방식을 적극 지원하고, 연내집행이 용이한 공동주택리모델링 사업의 규모를 확대(2020년도 대비 2021년 사업방식 간 물량 조정 : (신축) 2020년 100개소 → 2021년 80개소, (리모델링) 2020년 350개소 → 2021년 420개소)하는 등의 사업추진 방식의 변경을 통하여 실집행률을 제고하는 등 조치완료를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보건복지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확충사업 관리에 있어 유형별 목표치 대비 실제 설치 개소 수의 실적 차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주기적인 사전 수요 조사 외에도 설치계획에 대한 컨설팅 도입 등을 통해 집행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0회계연도 어린이집 확충사업의 실적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한 총 1,104개소 대비 실제 1,157개소를 설치하여 53개소를 초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실적을 보면 2019년과 2020년은 동일하게 국공립 신축 및 국공립 장기 임차의 경우는 계획 대비 실제 설치 개소수가 부진하였고,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계획 대비 실제 설치 개소수가 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매년 유형별로 설치 실적 차이가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업방식 간 물량조절외에도 지방자치단체별 유형별 설치계획에 따른 컨설팅 도입 등을 통하여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하여 유형별로 계획 대비 실제 설치개소수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확충 사업 지원형태별 추계 및 실제 지원 개소 수: 2019~2020년]

(단위: 개소)

구분		국공립 신축 (A)	공동주택 리모델링 (B)	국공립 장기 임차 (C)	소계 (A+B +C)	장애아 전문 신축 (D)	기자 재비 (E)	총계 (A~E 합)
2019	추계	102	225	123	450	2	452	904
	실제 지원	77	504	73	654	2	640	1,296
	추계대비 실적차이	△25	279	△50	204	0	188	△392
2020	추계	100	350	100	550	2	552	1,104
	실제 지원	78	466	37	581	4	572	1,157
	추계대비 실적차이	△22	116	△63	31	2	20	53

자료: 보건복지부

또한, 국비 기준으로 2020년 시군구별로 집행된 어린이집 확충 예산현액 604억 100만원 중 44.5%인 268억 7,400만원만 실집행되는 등 지방자치단체별 실집행액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19회계연도 시도별 실집행률 40%보다 4.5% 상향된 것으로, 실집행률 70%를 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세종 99.9%, 제주 92.7%, 강원 71.8% 등 3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실집행률이 저조한 전북(9.9%), 경북(16.7%) 등 지역의 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추진방식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과다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2020회계연도 시도별 어린이집확충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교부액	예산현액 (C)	실집행액 (D)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D/C)
서울	13,880	13,880	5,001	8,391	488	36.0
부산	3,301	3,301	1,637	1,610	54	49.6
대구	2,660	2,660	1,790	760	110	67.3
인천	2,412	2,412	896	1,442	74	37.2
광주	2,408	2,408	878	1,516	14	36.5
대전	1,200	1,200	732	454	14	61.0
울산	740	740	266	450	24	35.9
세종	1,463	1,463	1,462	0	1	99.9
경기	16,501	16,501	8,002	7,544	955	48.5
강원	2,268	2,268	1,628	597	43	71.8
충북	1,710	1,710	815	865	30	47.7
충남	1,405	1,405	747	240	418	53.2
전북	819	819	81	615	123	9.9
전남	2,548	2,548	879	1,602	67	34.5
경북	3,243	3,243	541	2,702	0	16.7
경남	3,678	3,678	1,366	2,257	55	37.1
제주	165	165	153	0	12	92.7
합계 (국비)	60,401	60,401	26,874	31,045	2,483	44.5

자료: 보건복지부

(2)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사업의 실적 저조 문제(보건복지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사업은 졸업 후 2~5년간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동 사업은 2019년 당초 공중보건장학생 20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8명에게 지원되어 7,140만원을 실집행(실집행률 35.0%)하였다.

국회는 제도개선을 통해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사업의 집행부진을 해소하고, 동 사업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장학금의 용도를 학업과 관련한 곳에 사용토록 하는 등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장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 진행 시 장학금 사용 용도 등에 대해서 교육할 예정이라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보건복지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사업은 2019년, 2020년 모두 선발인원이 당초 계획 대비 미달하였다.

2019년 2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8명을 지원하는데 그쳤으며, 2020년의 사업 수행 실적이 전년대비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목표 인원 20명의 60% 수준인 12명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당초 목표 인원 대비 실제 지원 인원이 부족함에 따라 동 사업의 2019년, 2020년 집행 실적도 모두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사업의 장학금 명목 예산 2억 400만원 중 2019년에는 7,140만원, 2020년에는 1억 2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각각 35.0%, 50.0%로 나타났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 사업의 집행 현황(2019~2020년)]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액 (실집행액)	집행률 (실집행률)
2019	204	0	117.3	86.7 (71.4)	42.5 (35.0)
2020	204	0	96.9	107.1 (102)	52.5 (50.0)

주: 본 표의 2019년, 2020년 예산액은 사업추진비(1,200만원)와 연구용역비(3,000만원)를 제외하고 장학금 명목의 금액(2억 400만원)만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자료: 보건복지부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 공중보건장학제도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2020년 11월~2021년 3월 동안 수행된 연구용역의 결과 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충분한 유인책을 검토하는 등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운영상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5. 환경노동위원회

가. 현 황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은 총 138건으로 시정 38건, 주의 35건, 제도개선 79건이며, 이 중 14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1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가 117건이며, 조치중 21건으로 보고하였다.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은 총 3건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2021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 2건, 조치중 1건으로 보고하였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추진절차 개선 및 적극적인 시설 설치 유도 방안 마련 필요’ 등 4건이다.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1.4.30.)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환경부	0	0	10	17	37	(4)	60	59	1
기상청	0	0	6	3	6	(1)	14	9	5
고용노동부	0	0	22	15	36	(9)	64	49	15
합계	0	0	38	35	79	(14)	138	117	21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1.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부대의견	조치현황	
		조치완료	조치중
환경부	1	1	-
고용노동부	2	1	1
합계	3	2	1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1.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추진절차 개선 및 적극적인 시설 설치 유도 방안 마련 필요(환경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환경부의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등 공장밀집지역에서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유출, 폐수배출업소의 폐수유출 등으로 사고유출수가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완충저류시설¹⁾의 설치를 국고로 보조하는 사업(국고보조율 70%)이다.

동 사업의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추진한 16개 지자체 중 7개 지자체에서 실집행률이 40% 미만을 기록하는 등 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하였으며, 특히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에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95개 산업단지에서 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회는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완충저류시설의 설치를 촉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환경부는 2019년 12월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을 개정하여 실집행이 부진한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실집행 실적에 따라 재정패널티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하였고, 주기적인 집행점검 및 부진사업에 대한 중점관리 등을 통해 집행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사업방식의 다각화 등 제도개선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19~'20.12)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환경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첫째, 환경부는 예산 편성 전 단계에서 지자체가 수립한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타당성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절차를 조속히 개선하고, 지자체별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주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연

1) 완충저류시설은 수질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관로 및 차단시설과 유출된 폐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저류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례적인 실집행 부진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경우, 8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된 2017년에는 지자체의 실집행률이 90.0%로 양호하였으나, 전년 대비 예산이 3배 이상 증액된 2018년은 설계 또는 공사 착공 지연으로 인해 178억 8,6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는 등 실집행 실적이 50.7%로 낮아졌으며, 2019년의 경우에도 부지매입 지연,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 지연 및 설치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실집행률이 48.1%로 더욱 악화되었다.

[2017~2020년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환경부		보조사업자						
	본예산	추경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17	9,769	9,769	9,769	500	10,269	9,240	1,029	-	90.0
2018	35,247	35,247	35,247	1,029	36,276	18,390	17,886	-	50.7
2019	32,567	32,567	32,567	17,886	50,453	24,276	26,177	-	48.1
2020	53,686	46,378	46,378	26,177	72,555	47,855	24,238	462	66.0

자료: 환경부

또한, 2020년 동 사업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지자체의 예산현액 725억 5,500만원 중 478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고 242억 3,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4억 6,200만원은 불용하는 등 전년 대비 실집행 실적이 66.0%로 일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충저류시설 설치장소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토지매입 및 보상 지연 등으로 인해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동 사업의 사업추진 지연 및 집행 부진 문제는 완충저류시설 사업 절차상 지자체가 수립한 설치·운영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부족한 것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는바, 지자체의 설치·운영계획은 산업단지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개략적인 용량산정과 설치 예정부지를 바탕으로 수립됨에 따라 예산 편성 후 기본·실시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변경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비 변경협의 등의 행정절차 소요로 사업추진 지연 및 관련 예산의 집행 부진이 초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²⁾

따라서 환경부는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에 대한 협의 후 예산 편성 전 단계에서 시설용량이나 사업부지, 소요예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타당성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사업 추진 시 지자체별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주기적인 점검, 국고보조금 교부 시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 등을 통해 동 사업의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환경부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오염원 관리를 위한 동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완충저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산업단지 등에 대해서는 수질오염사고 발생가능성 및 위험성 정도, 부지 및 입지여건, 기술적인 조건, 경제성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한 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수계에 완충저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기 위해서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지방비를 확보해야 하는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실제로 유해화학물질이나 폐수 등 수질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완충저류시설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지자체가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산업단지로 인한 사고 경험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 설치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2021년 5월말 기준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대상 대비 현재까지 설치 완료 및 설치 중인 지자체와 미설치된 지자체별 편차가 큰 상황으로,³⁾ 이와 같은 지역별 편차는 지자체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개수 및 규모에 더해,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의 중요성에

2) 환경부에 따르면, 지자체가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유역환경청의 계획 검토 및 협의 절차를 거처도록 하고 있으나 대략적으로 수립된 계획에 근거하여 협의가 진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규모나 추진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3) 예를 들어, 대구광역시에는 6개 사업대상 모두 완충저류시설 설치가 완료되었고, 경상북도는 17개 사업대상 중 10개소에 설치가 완료되고 5개는 설치가 진행 중이며, 충청북도는 22개 사업대상 중 12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총 20개 사업대상 중 완충저류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는 전무한 실정이고, 충청남도는 총 16개 사업대상 중 2개소에서만 설치가 진행 중이며, 전라북도 또한 13개 사업대상 중 2개소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등 지자체별로 사업 추진실적에 편차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 완충저류시설 설치 의무화되어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지자체는 단지 조성 시 완충저류시설도 함께 설치하고 있으나, 이미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완충저류시설 부지 확보의 어려움, 재정적 부담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저류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한다.

따라서 환경부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오염물질 유출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미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자체의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의 적극적인 집행관리 및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 마련 필요(환경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환경부의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및 학원·체육시설 등에서 통학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유차의 LPG차 전환 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사업시행주체인 지자체의 실행행률이 67.5%로 저조하였으며, LPG차로의 전환 실적 또한 1,557대로 목표로 하였던 2,272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회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 조건이나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 등의 측면에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환경부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① LPG차 전환 지원금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300만원)의 중복 지원을 허용하였고, ②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폐차 전제조건을 폐지하고 LPG차량 신차구입 보조금 지원액을 기존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와 문제점

환경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사업의 집행부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보조금 인상 및 지원 대상 확대 등의 조치가 기존의 참여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제도를 설계하고, 법령의 시행시기에 맞춰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의 경우, 대폭 확대된 보급 계획물량 및 예산에 비해 사업 신청유인 부족 등으로 인해 연례적인 집행 부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동 사업의 최근 5년간(2017~2021년) 실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은 사업시행 초기단계에서 동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실집행률이 25.8%로 부진하였고, 2018년 실집행 실적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2019년에는 LPG차 핵심부품 공급업체의 단산(19.4~8월)에 따른 차량 출고지연으로 인해 실집행률이 67.1%로 재차 악화되었다. 이에 더해, 2020년의 경우 지자체의 예산현액 144억 5,200만원 중 45.1%인 65억 1,200만원이 집행된 상황으로, 보급계획 물량 및 예산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집행 실적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2020년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환경부		사업시행주체(피보조·민간·이전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실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17	2,000	2,000	2,000	0	2,000	515	75	1,410	25.8
2018	4,516	4,516	4,516	75	4,591	4,471	30	107	97.4
2019	5,700	5,700	5,700	30	5,730	3,847	374	1,510	67.1
2020	15,000	14,063	14,063	389	14,452	6,512	2,374	5,565	45.1
2021.3	21,000	1,406	1,406	2,374	3,780	2,099	-	-	55.5

주: 2017년은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환경부

특히,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사업의 계획 대비 보급 실적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2020년 본예산 계획물량(6,000대)과 전년도 이월물량(111대)을 합한 총 보급계획 물량 6,111대 중 2,245대(36.7%)가 보급되고 763대는 2021년으로 이월되는 등 사업의 성과가 다소 부진하였으며, 2021년의 경우에도 3월말 기준 전체 보급계획 물량 6,763대 중 608대만이 보급되어 LPG차 전환에 대한 수요 확보 등 사업관리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계획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세 차례에 걸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보조금 단가를 상향하고 지원 조건을 완화하는 등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집행부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LPG차 구매보조금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고, 타 사업(노후경유차 조기폐차)을 통한 보조금 중복 지원을 허용하며, 기존 차량의 폐차 여부와는 관계없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지원 대상 및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조치는 동 사업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어린이통학차량을 조기에 교체한 자와의 형평성을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제28조4)를 통해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와 주민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린이통학버스와 택배화물차의 경유자동차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3년 4월 3일까지 어린이통학버스 및 택배화물차의 경유자동차 등록제한을 유예하고 있어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LPG차 등 친환경차가 아닌 경유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보조금 인상 및 지원 대상 확대 등의 조치가 기존의 참여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경유자동차 등록제한 유예기간을 고려하여 법령의 시행시기(23.4.3.)에 맞춰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경유자동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시행일: 2023.4.3.)

있는 사업 추진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집행실적 개선 필요(고용노동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은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동료지원 활동을 통하여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상태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2019년 동 사업의 지자체 배정 목표인원은 9,600명이었으나 실제 배정인원 및 참가인원은 각각 6,563명 및 3,451명이고, 동료지원활동 후 취업연계에 성공한 건수는 237건(참가자의 6.9%)에 불과하며, 장애인 동료지원가 목표는 200명이었으나 지원인원이 120명에 머무는 등 사업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는 지자체별 동료지원가의 업무역량 및 수행기관의 지원 역량을 개선하거나 동료지원가·지원기관을 모집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는 등 집행 실적을 개선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동료지원가 업무역량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지침을 변경하여 실적 목표 완화(기본상담 10 → 5회, 1인당 48 → 20명) 및 참여자 수당을 신설(1회 3,000원)하였으며, 2020년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2020년에 한해 비대면 상담을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고용노동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의 제도개선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행실적이 저조한 측면이 있다.

동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신규 시행한 2019년 집행 실적이 저조했음에도 2020년 참여자 및 동료지원가 목표 인원을 확대하였는데, 집행 성과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참여자 목표 인원은 10,000명이었으나 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른 배정인원은 3,700명이었으며, 실제 참여자 수는 2,220명이다. 또한, 동료지원가 목표 인원은 500명이었으나 배정인원은 188명이었으며, 지원 실적은 142명이다.

[2019~2020년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참여자·동료지원가 지원 실적]

(단위: 명, %)

구분	연도	예산상	자치단체	B/A	실지원인원	C/B
		목표인원(A)	배정인원(B)		(C)	
참여자	2019	9,600	6,563	68.4	3,995	60.9
	2020	10,000	3,700	37.0	2,220	60.0
동료 지원가	2019	200	145	72.5	120	82.8
	2020	500	188	37.6	142	75.5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0년 동료지원활동 후 공단으로의 취업연계에 성공한 건수는 총 369건으로, 목표 인원(3,000명) 대비 12.3%이다. 2019년에 비해 취업연계 성과는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전체 취업연계건수의 66.9%가 경기도(120명), 경상남도(65명), 전라남도(62명)의 3개 자치단체에서 수행된 것으로, 그 외 지역의 취업연계건수는 30건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도 지원인원 대비 취업연계건수의 비율이 최소 0.0%에서 최대 39.1%로서 지역별 편차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지역별 취업연계 현황]

(단위: 명,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	계
참여자 (A)	260	248	143	95	447	46	160	151	262	351	57	2,220
취업 연계 (B)	9	23	16	0	120	18	39	4	62	65	13	369
B/A	3.5	9.3	11.2	0.0	26.8	39.1	24.4	2.6	23.7	18.5	22.8	16.6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0년 동 사업의 집행부진 사유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동년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장애인 시설의 휴관 및 참여자의 대면 상담 기피 등의 이유로 참여자 모집 등이 어려워지면서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이 사업추진을 포기하는 등 사유로 인해 집행이 부진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2019년의 사업

추진 실적이 부진하였음에도 고용노동부는 2020년 참여자 및 동료지원가 목표 지원인원을 확대 편성한바 예산상 지원인원에 비해 실제 지원 수요가 저조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2020년 동료지원활동 참여자 수당을 신설(1회당 3,000원)하였으나 참여자 수당 지급이 참여자의 참여 유인을 제고하였는지 검토함으로써 사업 운영을 내실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향후 적정 목표 지원인원을 편성하는 한편, 2020년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하는 등 사업 운영을 내실화함으로써 집행 개선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4)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계획액 추계의 정확성 제고 통한 연례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 지양 필요(고용노동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중소기업 등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사업주에게 최대 3년간 인건비(월 75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17년 추경을 통해 시범사업으로 48억원을 편성하였고, 매년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사업비를 증액하였다.

이에 국회는 사업 추진 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연례적인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2019년까지는 청년 실업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원수준·대상 등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편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고용노동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예산 조기 소진 우려로 제1회 추경을 통해 계획액을 증액하였고, 그럼에도 예산 소진 우려로 인해 9월 이후 신규신청 접수

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사업은 2019년 신규 신청 건의 일부⁵⁾에 대한 지원을 2020년 예산으로 수행하였는데, 이에 따라 2020년 2월 말 기준 본예산 9,909억원 중 47.8%(4,735억원)가 집행되는 등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었다. 이에 제1회 추경(3.5. 정부 제안, 3.17. 국회 의결)을 통해 예상부족액 4,351억원을 증액하였다. 그럼에도 예산 조기 소진 우려로 인하여 9.1. 신규신청 접수를 중단하고 이후 신규 신청자에 대한 지원금 및 기존 지원자에 대하여 주기별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2021년부터 지급하게 되었다.

2021년 본예산의 경우 2020년 제1회 추경 당시 예상부족액 산출에 활용한 계수를 고려하여 편성하였으나, 그럼에도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면서⁶⁾ '21.5.31. 이후 신규 지원 신청서 접수를 중단하였다.

[2019~2021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운영 관련 특이사항]

시점	운영 관련 특이사항
'19	5.11. · 신규 목표인원(9.8만명) 달성으로 신규 신청 접수 중단
	8.20. · 3차 제도개편 통해 지원 인원 및 지원 한도 축소 (30~99인: 2번째 채용자부터 지원 / 100인 이상: 3번째 채용자부터 지원) · 추경 통한 추가 예산 확보(+1.2만명), 신규 신청 접수 재개
	10.16. · 10.16. 이후 신규 신청 및 기지원자 지원금은 2020년 예산으로 지급
'20	2.28. · 2.28. 기준 본예산 9,909억원 중 47.8%(4,735억원) 집행
	3.18. · 2020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확정으로 4,351억원 증액
	9.1. · 9.1. 이후 신규 신청 및 기지원자 지원금은 2021년 예산으로 지급
'21	5.31. · 5.31. 이후 신규 지원 신청서 접수 마감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동 사업은 2020년에도 본예산 집행 시작 약 2개월 후인 3월에 추경을 통해 계획액을 증액하는 등 국회의 시정조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계획액 추계를 정교화함으로써 사업이 연중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5) 2019년 사업 신규신청자 중 10.16. 이후 신규 신청자에 대한 지원금 및 기존 지원자에 대하여 주기별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2020년 예산으로 지급하였다.

6) 2021년 5월 말 기준 집행액은 1조 471억원으로, 계획현액(1조 2,018억원) 대비 집행률은 87.1%이다.

16. 국토교통위원회

가. 현 황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은 총 185건으로 시정 33건, 주의 89건, 제도개선 70건이며, 이 중 7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1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가 152건이며, 조치중 33건으로 보고하였다.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은 없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융자형 집주인임대주택사업의 관리상 개선조치 미흡’ 등 4건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1.4.30.)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국토교통부	0	0	31	84	63	(6)	172	141	3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0	0	0	3	2	0	5	5	0
새만금개발청	0	0	2	2	5	(1)	8	6	2
합계	0	0	33	89	70	(7)	185	152	33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1.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융자형 집주인임대주택사업의 관리상 개선조치 미흡(국토교통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융자형 집주인임대주택사업은 소규모 주택소유자 등에게 기존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저리의 기금융자로 대체해주고, 해당 주택을 시세 대비 85% 수준으로 주거 취약계층에게 8년 이상 기간 동안 저렴하게 임대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한국 부동산원과 LH의 담당인력이 부족하고 임대현황 파악이 지연되고 있으며, 임차계약 실적이 저조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국회는 국토교통부에게 집주인 임대주택 현황관리 기구를 일원화하고 임대현황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담당인력을 증원하여 임대계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임차 계약률이 저조하고 입주자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므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용자형 집주인임대주택 관리기구를 ‘한국부동산원’으로 일원화하고, 담당인력을 증원하였으며, 임차인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집주인 임대주택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지원계층에게 공급되도록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국토교통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용자형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은 실제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적기에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등 관리상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2018~2021년 4월말 까지 용자형 집주인임대주택 제도를 통해 집주인에게 용자가 이루어진 가구는 13,957가구다. 이 중 실제 입주자와 임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 가구는 8,258가구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5,699가구의 경우 공실이거나 아직 임대차계약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로 여전히 임대차계약 현황 파악에 있어서 미흡한 상황이다.

[용자형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계약 현황]

(단위: 가구, %)

구분	집주인 용자(A)	입주자 계약(B)	공실 (C)	미파악 (D)	계약비율 (B/A)	공실·미파악 ((C+D)/A)
2018	6,891	5,100	260	1,531	74.0	26.0
2019	5,014	2,762	260	1,992	55.1	44.9
2020	1,804	307	52	1,445	17.0	83.0
2021.4	248	89	0	159	35.9	64.1
계	13,957	8,258	572	5,127	59.2	36.7

주: 임대사업자가 임대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기준으로 작성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무주택 여부나 소득 확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 서류를 제출할 경우 임대현황 및 공실, 사업조건에 부합하는 계약 여부 등이 파악 가능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별도로 특정기간(연 1회, 약 2~3개월) 동안 의무사항 미이행 신고 및 소명절차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이는 용자형 집주인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직접 임차인을 구해 임대차계약을 맺는 만큼, 임대사업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임대현황이 파악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재 공실 상태인지 또는 사업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1년 4월말 기준 전국적으로 13,957호의 용자형 집주인임대주택 재고가 존재하는 상황이나, 한국부동산원의 용자형 집주인임대주택 사업 담당 인력은 도시재생지원처에서 사업 접수 및 최초 임대료 시세조사, 자격검증 지원 등을 위해 배치된 3명의 인력(총괄 1명, 수행 2명) 뿐으로, 관리자원도 부족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의 의무 미이행 관련하여 조치한 사항에 대해 2019~2020년 별도 의무사항 미이행 신고 및 소명절차를 통해 위반 의심자 약 650명(6,868호)에게 의무사항 이행 안내를 한 바 있다는 의견인데, 실제 관리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현황 파악이나 의무이행 여부 확인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조치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자동차 교육훈련 실적 제고 필요(국토교통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자동차관리비 사업은 군에 위탁관리 중인 컨테이너화물차의 관리·유지 및 대체수송 투입 차량 운행을 위한 운전자 양성 교육 등을 수행하여 국가 물류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런데 동 사업은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자동차 지정운전자(군인) 양성 교육이 차량 노후심화로 인한 운전 교육 기피, 일선 군 부대에서 dBrain 접속 제한 등 예산 지출 업무 수행 곤란 등을 이유로 2019년 교육실시율 30.3%로 나타나는 등 거의 실시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국회는 국토교통부는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확대해 교

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국방부·차량관리부대와 협업하여 예산 지출업무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차량 지정운전자 교육실시율을 제고할 것이라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국토교통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2020회계연도에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자동차 운전자 소집교육은 전혀 실시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2020회계연도 예산안에 국토교통부는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자동차 운전자 교육훈련 예산으로 500명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예산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2020년 교육훈련 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운전자 소집교육 수료인원이 2017년 266명, 2018년 168명, 2019년 121명으로 줄어든데 이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이다.

[2017~2020년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자동차 운전자 소집교육 실적]

(단위: 명)

연도	합계	상반기	하반기
2017	266	136	130
2018	168	96	72
2019	121	72	49
2020	0	0	0
합계	555	304	251

자료: 국토교통부

2020년은 코로나19의 유행으로 교육훈련이 어려웠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와 같이 연례적으로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자동차 지정운전자에 대한 교육실적이 저조할 경우, 사업의 목적인 화물대란 등 국가 물류위기와 같은 유사시 상황에 국가의 대응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자동차 교육훈련이 정상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도로건설 사업 추진 시 노선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 필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조치원우회도로 사업 등 일부 광역교통시설 건설 사업을 도로예정구간 내 문화재와 인접한 노선으로 계획하여, 용역 중단, 총사업비 증가 및 사업기간 지연을 초래하였으며, 연도 중 사업재개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예산 배정을 보류하지 않고 강행하였다.

국회는 광역교통시설 건설에 있어 최초 타당성조사 단계에서부터 사업이 중단되거나 사업비 및 사업기간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노선 확정에 반영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광역교통시설 건설 계획수립 시 최초 타당성조사 단계에서부터 사업추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노선을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조치원 우회도로 사업의 대안노선을 마련하였으나, 사업비가 당초 대비 2배이상 증가하고 환경훼손 문제 발생 등의 사유로 타당성재조사에서 타당성 미확보 및 사업추진 부적정 결정되었다.

조치원 우회도로 사업은 외곽순환도로 기능 확보를 위해 세종 조치원읍 변암리부터 전동읍 심중리까지 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 1,321억원, 길이 7.99km로 2018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2018년 10월 문화재청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에서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제321호 봉선동 향나무) 노선통과(도로노선에서 50m 이격) 불가결정으로 추진이 보류되었다.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안노선을 마련하였으나, 대안노선은 문화재와의 이격거리 확보에 따라 사업비가 2배 이상 증가(1,321억원 → 2,805억원)하고 산악지역 관통으로 환경훼손이 발생 가능성이 있어, '21년 4월 타당성재조사에서 타

당성 미확보 및 사업추진 부적정이 결정되었다.

[조치원 우회도로 사업 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당초 노선(A)	대안노선(B)	증감(B-A)
사업 내용	길 이	7.99km	8.04km	-
	구조물	교량6개소	교량4개소	-
사업비	총사업비	132,158	280,478	148,320
	건설보상비	40,297	103,376	63,079
	설계비	3,281	8,383	5,102
	공사비	72,708	161,964	89,256
	감리비	3,643	6,398	2,755
	시설부대비	12,229	357	△11,872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사업이 전면 중단되고 재개 여부 및 시점이 모두 불투명한 상황에서, 2020년에 2억 5,600만원, 2021년에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 대안노선의 표본기준가격조사에 대한 집행액 3,300만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예산을 불용하였다. 이와 같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예상되는 사업에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2018년~2021년 조치원 우회도로 사업의 예·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18	1,268	1,268	0	0	1,268	1,013	255	0
2019	2,094	2,094	255	△2,081	268	0	0	268
2020	256	256	0	33	289	33	0	256
2021	1,500	-	-	-	-	-	-	-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향후 조치원 우회도로 사업의 대안노선, 사업 비용 등에 대한 검토 시, 문화재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 과도한 사업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4) 해외투자유치실적 향상 방안 마련 필요(새만금개발청)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투자유치지원 사업을 통해 매년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으나, 2013년 이후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 26개중 88%인 23개가 국내기업, 3개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해외투자유치활동 실적이 저조하고,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투자유치지원 사업과 새만금개발공사의 투자유치 홍보활동 예산 중 일부가 중복됨에 따라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다.

국회는 새만금개발청이 해외투자유치 실적 향상 및 사업 효율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새만금개발청은 해외투자유치 실적 향상을 위해 「2020년 새만금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시행하였으며, 새만금개발공사와 기관별 업무 성격에 맞는 차별화된 투자유치 및 홍보활동을 추진 중에 있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새만금개발청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

새만금개발청은 2019년 이후로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거나 투자협약이 추진된 경우가 없어, 해외투자유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해, 새만금투자유치 지원 사업에서 국내외 IR 활동, 투자유치행사 개최, 투자 관심기업 발굴 등의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도별로 산업별·국가별로 투자유치 세부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산업별 타겟기업 및 유관단체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2020년 새만금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여, ① 투자유망산업 선별 및 수요 맞춤형 투자유치 전개, ② 글로벌 협력 강화 및 용지별 주력산업과 연계 등을 추진 전략으로 세우고, 산업별·국가별로 투자유치 방향을 설정하여 2020년 3조 8,700억원의 투자유치를 목표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2020년 새만금개발청 투자유치 목표]

산업별			국가별				계
제조·연구	관광레저	재생에너지	국내	중국	일본	미주·유럽	
237천㎡ 이상착공 (2700억원)	2조원	1조 6천억원	1조 6천억원	1,000억원	700억원	2조 1,000억원	3조 8,700억원

주: 투자유치 목표 금액은 타겟기업 기준임

자료: 새만금개발청

[2020년 새만금개발청 투자유치 전략 및 추진 방향]

추진전략	추진방향
투자유망산업 선별 및 수요맞춤형 투자유치 전개	• (제조·연구) 전기차, 자율주행차,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시설 유치 • (관광레저)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마리나 연계 해양 관광 사업 중심 투자유치 • (재생에너지) 현재 진행중인 세계적 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을 활용하여 RE100관련 기업, 데이터센터 적극 유치, 투자유치 연계형 발전사업자 선정추진
글로벌 협력강화 및 용지별 주력 산업과 연계	• (중국) 한중산단과 연계한 네트워킹 강화 및 FTA를 활용한 첨단소재, 식품관련 타겟산업 적극발굴 • (일본) 대일 의존도가 높은 산업 중심으로 국산화에 대비한 반도체 소재, 특수 식품산업 유치 집중 • (미주·유럽) 산업연구·국제협력·관광레저용지 활성화와 연계하여 항공, 국제학교 등 용지별 앵커산업 유치

자료: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청은 '19년, '20년 중국, 일본, 미주·유럽 등 국가별로 타겟기업을 선정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포럼·온라인 박람회 등 행사 참석 및 온라인·SNS 홍보 등의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였으나, '19년 이후로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지거나 투자협약이 추진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은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기업의 투자 심리 위축, 미 중무력분쟁 등으로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유치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경영난, 코로나19 등의 기업 내부사정 또는 대외적인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기업의 투자철회 및 지연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새만금개발청은 향후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점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투자유치 전략을 강화하는 등 투자유치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7. 여성가족위원회

가. 현 황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중 여성가족위원회 소관은 총 40건으로 시정 2건, 주의 8건, 제도개선 35건이며, 이 중 5건은 하나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1년 4월말까지 조치완료 28건, 조치중 12건으로 보고하였다.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여성가족위원회 소관은 없다.

이 중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은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의 내역사업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과 ‘아이돌봄지원 사업’ 2건이다.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0.4.30.)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여성가족부	0	0	2	8	35	5	40	28	12
합계	0	0	2	8	35	5	40	28	12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2021.

나. 정부 조치완료 사항에 대한 분석

(1)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신청자의 실질적인 수검률 제고 방안 필요(여성가족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학교 밖 청소년¹⁾ 건강검진 사업은 인건비, 정책설명과 홍보, 전산장비 활용 등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사업운영비 집행비율은 91.7%이나, 건강검진비의 집행률은 71.4%이며, 최근 3년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비 집행률은 평균 62% 수준에 그치는 등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상황이다.

국회는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DB 활용을 통한 개개인별 홍보, 거리청소년 아웃리치 시 홍보 등 홍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사업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출장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이벤트를 추진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의 문제점

여성가족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의 달성을 위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여성가족부는 건강검진 신청자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검진 참여 독려·관리 등을 통해 실질적인 수검률을 높이고, 기본 건강검진 결과 재검사 등을 위한 확진검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학교 밖 청소년의 수검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0년도 동 사업을 통해 건강검진을 신청한 학교 밖 청소년은 5,606명인데, 이 중 3,023명이 수검을 받아 신청인원 대비 수검률은 53.9%에 불과하다.

[연도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획인원	11,000	9,100	8,800	8,600
신규신청(A)	10,268	10,094	9,872	5,606
수검인원(B)	5,019	5,134	6,063	3,023
수검률(B/A)	48.9	50.9	61.4	53.9

자료: 여성가족부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동 사업의 경우 연례적으로 신청인원 대비 수검률은 50% 안팎에 머물러 있으므로,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사업에 대한 인지도 제고뿐만 아니라 건강검진 신청자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검진 참여 독려·관리 등을 통해 실질적인 수검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2020년도 기본 건강검진 결과 재검사 등을 위한 확진검사 대상으로 통보 받은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확진검사 대상자 507명 중 수검자는 11명으로 수검률이 2.2%에 불과한 상황이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확진검사 미수검자에 대하여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확진검사 대상자가 적시 검사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도별 학교 밖 청소년 확진검사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기본검진 수검자	5,033	5,267	2,519
확진검사 대상	611	945	507
수검인원	23	60	11
수검률	3.8	6.3	2.2

자료: 여성가족부

(2) 신규 아이돌보미 양성, 활동을 중단하고 있는 아이돌보미의 재활동 유도 등 아이돌보미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인 대처 필요(여성가족부)

(가)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종일 돌봄을 제공하는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와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 시간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 돌봄서비스로 분류되는데, 시간제 돌봄의 경우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서비스 수요와 매칭 불균형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전 지역에서 일정 수준의 서비스 미연계가 발생하고 있다.

국회는 아이돌보미가 지역별로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아이돌보미양성계획을 수립하는 등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강화 방안을 마련

하라고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서비스 대기관리시스템 및 일시연계서비스를 확대하여 연계율을 제고하고 있고, 향후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양질의 아이돌보미 확보 노력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실집행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나) 조치결과와 문제점

여성가족부의 조치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의 달성을 위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 확보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른 돌봄서비스 매칭 불균형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말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가구 현황을 보면 돌봄서비스 종류²⁾에 따른 대기가구 현황은 영아종일제 돌봄 신청 가구가 24가구, 시간제 돌봄 신청 가구는 3,245가구로, 시간제 돌봄서비스의 수요 대비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고, 지역에 따른 돌봄서비스 매칭 불균형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2020년 말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가구 현황]

(단위: 가구)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간제	3,245	2,489	14	3	15	5	121	42	148	142	47	32	11	8	12	124	22	10
종일제	24	19	0	0	0	0	1	1	1	1	0	0	0	0	0	1	0	0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2018년부터 연도별로 아이돌보미 신규 양성 목표를 설정³⁾하고 교육비 예산을 편성하여, 신규 아이돌보미 양성을 통한 아이돌보미 증원에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2020년의 경우를 보면, 신규 양성 목표 4,500명 중 2,709명 양성에 그

2) · 영아종일제 돌봄: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종일 돌봄 제공
· 시간제 돌봄: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 시간단위 돌봄 제공

3) 아이돌보미는 정부 국정과제 일환인 사회서비스일자리에 해당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아이돌보미를 신규로 양성하여 일자리를 증원한다는 계획

칠 뿐 아니라, 활동 아이돌보미의 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등 비교적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18~2020년 아이돌보미 양성인원 및 활동 아이돌보미 현황]

(단위: 명, %)

구분	신규양성목표 (예산상 교육인원)	양성인원	목표대비 달성률	활동 아이돌보미(성과지표)			
				목표	실적	달성도	증감인원 (비율)
2018	6,888	3,496	50.8	신규	23,675	-	-
2019	10,000	5,859	58.6	27,000	24,677	91.4	1,002 (4.2)
2020	4,500	2,709	60.2	28,000	24,469	87.4	△208 (△6.4)

자료: 여성가족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여성가족부는 신규 아이돌보미 양성, 활동을 중단하고 있는 아이돌보미의 재활동 유도 등 아이돌보미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등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부 록

부록. 2019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중 최근 3년 간 2번 이상 지적된 사항

위원회	부처명	세부사업명 (또는 시정요구내용)	결산 시정요구 여부		
			2017	2018	2019
국회운영 위원회 (2건)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정책연구비 불용 과다		○	○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 개선		○	○
법제사법 위원회 (10건)	법무부	교정시설 공공요금 부족에 따른 연례적 이전용 등 의 집행 관행 개선 필요	○	○	○
		국가배상금 지급	○		○
		법률구조	○		○
		공증제도 운영 및 활성화	○		○
	법제처	기관운영기본경비	○		○
		세계법제정보서비스	○		○
		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		○
	헌법재판소	수석·선임 부장연구관 전용차량 운영 개선 필요		○	○
		실집행 가능성 고려한 국선 대리인보수 예산편성 필요	○		○
	대법원	소송구조 지원	○	○	○
정무 위원회 (17건)	국가보훈처	보훈병원 진료비 예산 편성 정확성 제고	○	○	○
		보상금 및 수당		○	○
		재해보상금		○	○
		광복회관 임차보증금 회 수방안 및 연례적 미수 납액의 징수 철저 등	○	○	○
		보훈심사위원회운영		○	○
		보훈단체운영 및 선양활동 등 관리·감독 강화필요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	○
	공정거래위원회	cp등급평가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민간출연금)	○	○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재고자산매각대)	○	○	○

위원회	부처명	세부사업명 (또는 시정요구내용)	결산 시정요구 여부		
			2017	2018	2019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		○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	○	○
		지자체 보상금 상환금의 법정 기한 내 수납 노력 필요 등		○	○
		청탁금지제도운영		○	○
		행정심판운영	○		○
		청렴권익정책알리기	○	○	○
		청렴교육및의식확산		○	○
기획재정 위원회 (11건)	기획재정부	국제수납물 추계의 정확성 제고	○	○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심층평가 생략 최소화	○	○	○
		국제수납물 제고방안 마련	○	○	○
		해외기관 파견 등 연례적인 과다 불용 개선 필요	○	○	○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 방안 마련	○		○
		국민참여예산제도 사업 관리 강화 필요		○	○
		대외경제협력기금 중소기업 지원 비중 확대 필요		○	○
		실효성 있는 성인지 예결산 제도 운영방안 마련 필요		○	○
	국세청	납세고지서 등 발송사업		○	○
	조달청	비축물자사업수입		○	○
		토지, 건물매각대		○	○
교육위원회 (30건)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생 교육훈련지원(수입대체)		○	○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		○	○
		국립국제교육원 연수 및 교육과정 운영	○	○	○
		대학구조개혁 지원	○		○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R&D)	○	○	○
		대학혁신지원(R&D)	○		○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	○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		○	○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		○

위원회	부처명	세부사업명 (또는 시정요구내용)	결산 시정요구 여부		
			2017	2018	2019
		보통교부금	○	○	○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	○
		장애학생 교육지원	○		○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
		기타경비(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	○	○
		행복기숙사 지원사업	○		○
		기타경비(사학진흥기금)		○	○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	○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	○	○
		고등교육의 국제화 지원		○	○
		고교교육 정상화 기대대학 지원	○		○
		국립대학 시설확충		○	○
		학생정신건강센터 지원	○		○
		BK21 플러스 사업	○		○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		○
		교육급여	○	○	○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 사업		○	○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	○
		서울회관재건축(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	○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사학진흥기금)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출연	○		○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11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국가간협력기반조성	○	○	○
		스마트미디어산업 육성 기반 구축	○	○	○
		연구개발성과 기업이전 촉진		○	○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	○
		바이오·의료기술개발(R&D)	○		○
		연구개발특구육성	○		○
		연구개발특구운영 및 인프라지원	○		○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	○		○
		4차산업혁명위원회 운영지원	○		○
		달 탐사	○		○

위원회	부처명	세부사업명 (또는 시정요구내용)	결산 시정요구 여부		
			2017	2018	2019
	방송통신위원회	감독기관과 예산 지원기관 불일치 해소 필요	○	○	○
외교통일위원회 (10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노력 추진 미흡	○	○	○
		국외업무여비의 연례적인 과다 전용 지양	○	○	○
		정책연구용역 관련 정보 비공개 및 수의계약 관행 등 개선 필요		○	○
	통일부	거래말큰사전 남북공동 편찬사업의 예산 효율화	○	○	○
		남북협력기금 편성 및 집행과정의 투명성 제고	○	○	○
		민생협력지원의 집행률 제고 노력 필요	○	○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경비 기금편성 타당성 검토		○	○
		저조한 과태료 수납률에 대한 대책 필요	○	○	○
		북한인권재단 출범 노력 제고	○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건의·법정회의 참석률 제고	○	○	○
국방위원회 (13건)	국방부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의 정확한 소요를 산정하여 연례적인 이·전용을 방지할 것	○		○
		민영콘도 이용과 관련한 계급별 이용기회 차별 해소방안 마련할 것	○		○
		군인연금기금 보전금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
		부서관 운용률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		○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	○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	○	○	○
	방위사업청	세입	○	○	○
		보라매사업(R&D)	○	○	○
		기초비행훈련용 헬기		○	○

위원회	부처명	세부사업명 (또는 시정요구내용)	결산 시정요구 여부		
			2017	2018	2019
행정안전 위원회 (11건)		K-2전차		○	○
		76MM철갑고폭탄		○	○
		K-11 복합형소총		○	○
		JTAC		○	○
	경찰청	과태료 수납률 제고	○		○
		장비관리유지 사업, 이월	○		○
		성폭력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정보 송달방식 변경 필요	○		○
		직제 미반영 조직·직위 운영 근절 필요	○	○	○
	인사혁신처	임대주택건립		○	○
		공무원연금대부		○	○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정책연구용역의 과도한 수익계약 지양 및 면밀한 집행관리 필요	○		○
		위탁선거 특별정려금 법 률적 근거 마련 필요	○		○
		반복되는 위탁선거경비 예산 외 운용 해결을 위한 조치 필요		○	○
		반복적인 예비금 부적정 집행 근절 필요	○		○
		A-WEB 보조사업 관리· 감독 철저 필요	○	○	○
문화체육 관광위원회 (10건)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홍보	○	○	○
		전통종교문화유산 보존	○	○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사업 실집행 제고 필요		○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 임 교원 법정정원 확보	○	○	○
		경복궁중합정비		○	○
		문화유산 조사연구사업 시험연구비 집행 부적정	○		○
		불교문화재 연구시설 건 립사업의 관리 철저 및 적극 추진 필요	○		○
		전통문화교육원운영지원		○	○
		고도 보존 및 육성	○		○

위원회	부처명	세부사업명 (또는 시정요구내용)	결산 시정요구 여부		
			2017	2018	2019
		세입 징수실적 제고	○		○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위원회 (8건)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상생기금협력사업	○	○	○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	○	○
		폐업지원사업		○	○
	농촌진흥청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사업	○	○	○
	해양수산부	독도의 지속가능이용 및 관리	○	○	○
	해양경찰청	VTS구축운영		○	○
		함정 정비 유지		○	○
		함정 계획 정비		○	○
산업통상자 원중소벤처 기업위원회 (7건)	산업통상 자원부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	○	○
		수소산업 전주기 제품 안전성 지원센터 구축		○	○
		무역보험 채권관리		○	○
	특허청	일반회계 전출	○	○	○
	중소벤처기업부	모태펀드 (투자실적 관련)	○	○	○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 (집행실적)	○	○	○
		마케팅지원사업 (중소기업전용매장)	○	○	○
보건복지 위원회 (16건)	보건복지부	의료기술시험훈련원 구축과 K-Medical 통합연수센터 건립 사업의 대규모 예산 불용	○	○	○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필요	○	○	○
		예방접종 수요예측 추계 의 정확도 제고	○	○	○
		긴급복지 사업 적정예산 편성 필요	○	○	○
		영유아보육료 예산 편성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	○	○
		장애인의료비 미지급금 발생 문제 해결 필요	○	○	○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사업 개선 필요	○	○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	○	○

위원회	부처명	세부사업명 (또는 시정요구내용)	결산 시정요구 여부		
			2017	2018	2019
		권역외상센터 전담 전문의 확보 방안 마련	○	○	○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사업 예산 확대 필요	○	○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지원 사업 적정 예산 편성 및 장기 요양보험재정 운영 안정성 제고 방안 모색 필요	○	○	○
		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 개선 필요	○	○	○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 방안 마련	○	○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 조속 추진	○		○
	식품의약품 안전처	과태료·과징금·가산금 수납률 제고방안 마련	○		○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의 다양한 참여방안 마련		○	○
환경노동위원회 (18건)	환경부	하수도 사업(하수처리장 확충 등)	○	○	○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	○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	○	○	○
		법정부담금 수납률 제고	○	○	○
		도시침수대응 사업		○	○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	○	○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	○
		전기차 충전소 구축사업		○	○
		수소차 충전소 확대 설치		○	○
	기상청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 및 운영	○	○	○
		항공기상정보사용료 현실화 추진	○	○	○
		자체연구비중 확대 및 비목의 취지에 부합하는 집행		○	○

위원회	부처명	세부사업명 (또는 시정요구내용)	결산 시정요구 여부		
			2017	2018	2019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관리	○	○	○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저소득층 및 중장년층 참여 율 및 고용유지율 제고 방안)	○	○	○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대책 마련	○		○
		고용창출장려금(집행실적 제고 방안 마련)		○	○
		내일배움카드(일반)(일반 고 특화과정)	○		○
		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캠퍼스 신설사업)	○	○	○
국토교통 위원회 (9건)	국토교통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	○	○
		산업단지진입도로지원	○	○	○
		흑산도 소형공항건설	○	○	○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		○	○
		도시재생사업		○	○
		교통사고예방지원	○		○
		군위탁컨테이너 화물차 동차 관리비	○		○
		항공박물관 건립	○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제도 활성화 방안 강구 필요	○	○	○
여성가족 위원회 (3건)	여성가족부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예산집행관리 강화	○		○
		아이돌봄 지원 사업 집행률 제고 및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강화 방안 마련	○	○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실적 연례적 불용 개선	○		○

주: 특정 세부사업에 국한되지 않으나 동일한 주제·내용의 지적이 있는 경우 1건으로 기재
(예: 기금 여유자금 운용 관련 등)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결산분석시리즈 IV
2019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분석

발간일 2021년 8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임익상
편 집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디자인여백플러스 (tel 02·2672·1535)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9-11-6799-004-4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1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371-001361-10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